

협동연구총서 24-44-01

연구보고24-일반02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김승경 · 김지연 · 백혜정 · 전현정 · 김성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협동연구총서 24-44-01

연구보고24-일반02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저 자 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김성아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4-44-01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4-44-02	2024년 시설퇴소청년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보고서를 펴내며

지난 '23년 3월,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포함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취약계층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들은 취약계층 유형별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실질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어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협동연구로 추진되었다.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생활실태와 자립과정을 3개년 간 분석하였고, 협동연구기관에서는 청소년부모, 북한배경청년, 경제선지능청년, 금융취약청년, 발달장애청년 등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소외계층 청년과 비취약청년 간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고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전히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소외계층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정책소외계층 청년들이 다른 비취약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인이 지닌 취약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받고 안정적인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그간 사회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정책소외계층인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지원은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더욱 가속화됨
-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지원체계가 분절되어 있어 대상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제한적이었던 과거의 정부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취약계층 청년들에게서 다양한 취약성이 중첩되어 취약청년과 비취약청년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 발생
- 1~2차년도 연구 결과 취약계층 청년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인 맞춤형 지원 방안 및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고안 필요성이 도출됨
-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과정에 대한 다년간의 조사결과에 근거, 취약청년의 다중적·다차원적 취약성 확인 및 취약청년 지원체계에 대한 현안 진단을 통해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의 기초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취약계층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 제시
-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 내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및 전달체계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취약청년의 다차원성과 다중성에 대응하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 제시
- 정보시스템의 연계·구축을 위한 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근거 제시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조사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 및 분석, 전문가 자문, 정책실무협의회, 콜로키움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청년 삶 실태조사 및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청년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사 결과 비취약청년 및 취약청년의 취약성이 다차원적 유형으로 발생하고 취약성이 다중적으로 중첩되어 가중되는 특성을 보임
 - 다중취약청년의 취약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변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체계적인 사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 취약청년 지원체계 현안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행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부처나 과에서 사업을 관리, 수행하는 방식은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통합적 지원의 관점에서는 취약청년의 인지적, 물리적 접근성이 제한되는 단점 대두
 - 생애주기 관점을 견지한 복지체계 구축 및 다부처 간 사업 통합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 필요
 - 취약청년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양성 필요
- 취약청년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현안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취약청년의 선제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가 필수적이거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
 - 다중취약청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새로운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의 개념과 기능 개발
 - 청년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계 구축 필요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취약청년의 발굴 및 통합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 「청년기본법」 내 청년복지증진 대책 추진 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시책도 수립·시행하도록 법률 개정 검토
 -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청년복지증진 시책의 내실화와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부처 사업의 통합지원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청년복지법」 제정 검토
- 청년복지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청년복지정책 추진의 근거법으로서 「(가칭)청년복지법」을 제정, 생애주기 관점에서 일련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청년복지정책 주무부처의 청년복지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검토
 - 제정법을 근거로 청년복지정책 주무부처가 청년 대상 복지사업을 국가수준의 사회보장제도,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총괄·조정·시행을 담당하고, 지역 단위에서 청년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행정부서 정비
- 다주체 지원사업 체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이 청년복지정책을 통해 연속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부처가 분절적으로 관리 중인 정보 및 데이터 간의 연계 기반 강화 필요
 - 다중취약청년의 사례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 플랫폼으로서 (가칭)청년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현재 개발 중단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작업 재개
- 취약청년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성 제고
 - 지역청년센터 중심의 공공-민간기관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청년의 다중적·가변적 취약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
 -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통한 취약계층 청년 지원 참여기관의 질 관리
- 정책 수립과정에 취약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

청년종합연구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협동연구총서 24-44-01

연구보고24-일반02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추진체계 8
- 3. 연구내용 9
- 4. 연구방법 11

II.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 1.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15
- 2. 취약계층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 30
- 3. 소결 : 취약청년의 다중적·가변적 취약성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마련 55

Ⅲ. 취약청년 지원체계 현안 진단

1. 취약청년 지원사업 현황: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61
2.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전달체계 현황:
 복지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82
3. 취약청년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 89
4.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구축 현안 94

Ⅳ. 취약청년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현안 진단1

1. 아동·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조와 현안 104
2.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연계 사례 110
3. 취약청년 발굴·지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현안 117

Ⅴ. 취약청년 지원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1. 제언 배경 127
2. 정책개발 및 세부추진과제 132

참고문헌 149

Abstract 159

표 목차

표 Ⅰ-1. 3개년 협동연구 연차별 연구주제 및 대상	6
표 Ⅱ-1. 청년 삶 실태조사의 취약청년 유형별 출현율	26
표 Ⅱ-2. 청년 삶 실태조사의 청년 취약유형 중복률	28
표 Ⅱ-3. 청년 삶 실태조사의 청년 취약유형 개수에 따른 취약유형 출현율	29
표 Ⅱ-4.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유형별 출현율(일반청년 비교)	31
표 Ⅱ-5.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중복 취약 개수에 따른 취약유형 출현율	34
표 Ⅱ-6.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중복 취약 개수에 따른 우울, 고립감, 행복도, 자립 수준 정도	36
표 Ⅱ-7.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유형	38
표 Ⅱ-8. 시설퇴소청년의 취약 유형빈도	39
표 Ⅱ-9. 고립·은둔 및 불안정고용 취약유형 변화 양상	40
표 Ⅱ-10.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취약 유형화	40
표 Ⅱ-11.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취약 유형 빈도	42
표 Ⅱ-12. 취약유형의 변화 양상	44
표 Ⅱ-13. 1차 년도('22년) 퇴소시설별 취약유형에 따른 특징	45
표 Ⅱ-14. 2차 년도('23년) 퇴소시설별 취약유형에 따른 특징	46
표 Ⅱ-15. 3차 년도('24년) 퇴소시설별 취약유형에 따른 특징	47
표 Ⅱ-16. 분석 변인	48
표 Ⅱ-17. 분석 모형 적합도	50
표 Ⅱ-18. 소득의 발달 궤적 추정치	51
표 Ⅱ-19.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발달 궤적 추정치	51
표 Ⅱ-20. 우울의 발달 궤적 추정치	52
표 Ⅱ-21. 분석 모형 적합도	53
표 Ⅱ-22. 소득의 초깃값, 변화율의 영향 요인	53
표 Ⅱ-23. 우울의 초깃값, 변화율의 영향 요인	54
표 Ⅲ-1. '23~'24년 청년정책 사업 수 및 예산: 청년정책 분야별	61

표 Ⅲ-2. '24년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 증감 내역; 중앙행정기관별	62
표 Ⅲ-3. '24년 취약계층 청년 대상 청년정책 시행계획	65
표 Ⅲ-4. '24년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 수 및 예산	72
표 Ⅲ-5.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	75
표 Ⅲ-6.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 수: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80
표 Ⅲ-7. 보건복지부의 청년 복지사업	83
표 Ⅲ-8. 국토교통부의 청년 복지사업	84
표 Ⅲ-9. 교육부의 청년 복지사업	85
표 Ⅲ-10. 금융위원회의 청년 복지사업	86
표 Ⅲ-11.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복지사업(2024.5. 기준)	87
표 Ⅲ-12. 취약청년의 복합적 욕구 대응 사례	89
표 Ⅳ-1. 통합사례관리 유형 구분	116
표 Ⅳ-2. 취약청년 관련 정보시스템 및 연계 필요 정보 예시	117
표 Ⅳ-3. 청년통계등록부와 공적연금 자료 연계 사례	122
표 Ⅴ-1. 「청년기본법」 개정(안)	134
표 Ⅴ-2. 생애주기 복지 지원을 위한 법률 체계	135
표 Ⅴ-3. 「(가칭)청년복지법」 제정안 주요 요소(안)	136
표 Ⅴ-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2026~2030년)	138
표 Ⅴ-5. '24년 청년센터 종사자를 위한 양성교육, 보수교육, 협업기관 연계특강	145
표 Ⅴ-6. 취약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시행령)」 개정(안)	147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도	7
그림 Ⅰ-2. '24년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8
그림 Ⅰ-3.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10
그림 Ⅱ-1. 개인 및 가구 단위 생애 관점 소득과 자산 분포	16
그림 Ⅱ-2. 청년 실업률(2000~2023년)	17
그림 Ⅱ-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비율(2001~2022년) ·	19
그림 Ⅱ-4. 청년 자살률(2000~2022년)	21
그림 Ⅱ-5. 연령집단별 사회적 고립 추이(2019~2023년)	23
그림 Ⅱ-6.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	25
그림 Ⅱ-7. 청년 삶 실태조사의 취약청년 유형별 출현율	27
그림 Ⅱ-8. 청년 삶 실태조사의 청년 취약유형 중복률	28
그림 Ⅱ-9.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유형별 출현율(일반청년 비교)	32
그림 Ⅱ-10.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유형 중복률(일반청년 비교)	33
그림 Ⅲ-1. '23~'24년 청년정책 예산 비율: 청년정책 분야별	62
그림 Ⅲ-2. '24년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 수 및 예산 비율	72
그림 Ⅲ-3.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 수: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80
그림 Ⅲ-4. 서울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모델(안)	91
그림 Ⅲ-5. 서울 관악구 청년 사회안전망	92
그림 Ⅲ-6. 생애주기별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97
그림 Ⅳ-1.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목표 개념도	105
그림 Ⅳ-2.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접근 권한 신청·승인 구조	107
그림 Ⅳ-3.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발굴 및 사례관리 기능과 메뉴	108
그림 Ⅳ-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기본체계	111
그림 Ⅳ-5. 출생통보제 정보흐름도	111
그림 Ⅳ-6. 보호출산제 정보흐름도	112

그림 IV-7. 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정보흐름도	113
그림 IV-8.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구성도	114
그림 IV-9. 통합사례관리 연계·협력 흐름도	115
그림 IV-10. 행복e음 위기정보 조회조건 항목	121
그림 IV-1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과정	124
그림 V-1. 다중취약청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	132
그림 V-2. 청년복지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안)	140
그림 V-3. 취약아동·청(소)년 정보흐름도	141
그림 V-4. (가칭)청년통합지원시스템 목표 개념도	142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에 청년정책을 반영하면서 희망·공정·참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취약계층 청년²⁾에 대한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명시하였다. 취약계층 청년이 청년정책의 핵심대상이라는 정부의 기조는 ’22년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추진계획에서도 유지되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청년을 포괄하여 이들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성인이행기를 안정적으로 통과한 후 자립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관계부처 합동, 2020.12.)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기존의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탈피하여 사각지대에 잔존해있던 취약계층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의 삶의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간 사회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정책소외계층인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지원은 ’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

1)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본 보고서의 제목에 사용된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연구가 추진될 ’22년 당시 「청년기본법」 상 ‘취약계층 청년’이라는 용어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기존정책에서 취약청년으로 식별되지 않는 청년, 동일 문제와 욕구가 있어도 해당 제도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에 포섭되지 않는 청년, 일반적인 이행기 발달 과업의 표준에서 이탈하여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문제를 정책소외로 규정’하고 이들의 유형별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취약계층 지원 시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할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김성아, 정소연, 이우태, 이상정, 박광욱, 2022:283)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임. 즉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①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 이행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② 공공정책(지원제도)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③ 당사자를 포함하여 미시환경 영역에서 자원, 정보, 기회가 제한(결핍)되어 있거나 거시환경 영역에서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④ 비자발적 사유로 배제되거나 제도의 지원 대상에 효과적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청년 또는 집단”(김지연 외, 2022:283)을 말함. ’23년 3월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법률 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가 명시됨에 따라 법정용어인 ‘취약계층 청년’이라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부 맥락에 따라 ‘정책소외계층 청년’, ‘취약청년’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 5항)을 말하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청년기본법」 제8조 3항)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간의 청년정책은 일반청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취약계층 청년을 정의함에 따라 그간 소외되어 온 취약청년의 대상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원이 필요한 취약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3년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정안(관계부처 합동, 2023.3.29.b)에서는 그간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사회안전망에서 포착되거나 발굴되지 않았으며, 발굴되더라도 단편적인 지원과 서비스로는 빈곤이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복지정책 전반에서 취약계층 청년으로 식별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잔존해있던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등 신(新) 취약계층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을 명시하였다. 또한 '23년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서는 저소득 근로청년, 구직포기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를 발굴·지원하는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강화하여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관계부처 합동, 2023.12.)하는 등 다양한 취약계층 청년들을 포괄하여 통합적 지원함으로써 사회에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생애주기 간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청년 전반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지원체계가 분절되어 있어 대상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제한적이었던 과거의 정부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경제적 빈곤계층으로 지칭되었던 기존의 취약계층이 소득은 물론 주거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취약계층으로 식별되지 않았던 새로운 취약유형들이 가지는 취약성이 중첩되어 비취약청년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3년에 실시한 본 연구의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N=2,498, 2차 년도) 결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교육, 일자리, 주거, 심리·정서 등 삶 경험 전반에서 다차원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일을

한 경우(8.6%)가 일반청년(4.5%)에 비해 높고,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비율(16.2%)은 일반청년(0.7%)의 23배 이상 높았다. 현재 비적정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도 2.4%(일반청년 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지하나 옥상 등 열악한 주거 상태에 놓인 청년은 4.0%(일반청년 1%)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고립감의 정도나 우울증상 여부 등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에게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함에도 상담을 받지 못한 경험이 13.1%(일반청년 2.7%)로 일반청년에 비해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시설퇴소청년은 빈곤, 낮은 교육수준, 빈약한 사회적 관계, 열악한 노동환경, 취약한 심리·정서상태 등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퇴소청년이라는 지위 외에도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은둔, 저소득 빈곤, 고부채 부담, NEET, 저임금 근로, 불안정고용,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설퇴소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들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시설퇴소청년’이라는 하나의 유형 내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다차원적 취약성을 중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약유형에 따른 일괄적인 지원보다 개인이 가진 다차원적이고 중복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의 연구는 3개년 협동연구(‘22~’24)의 3차 년도 연구이다. 1차 년도 연구에서는 정책소외계층 청년³⁾에 대한 정책 비전, 목표, 전략, 추진과제를 마련하였고, 2차 년도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및 새로운 취약계층 관련 법제화, 제도 개선 등 정책화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북한배경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금융취약계층 청년, 발달장애청년 등 정책소외 청년의 유형별 실태 및 일반청년 대비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적 현황 자료를 생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거 기반의 정책개발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지원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고립·은둔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다양화하고,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및 관계를 개선하는

3) 본 연구는 「청년기본법」 내에 ‘취약계층 청년’ 정의가 마련되기 전에 기획된 연구로, 과제 제목 및 1,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이 아닌 ‘정책소외계층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고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역시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분절된 지원체계를 완화하고자 하는 대책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청년센터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3.29.a)을 통해 청년정책 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청년센터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년정책 전달기관으로서의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기능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청년기본법」 상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1, 2차 년도 연구 결과로 취약계층 청년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관점의 부처별·산발적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인 맞춤형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유형별 분절적 지원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를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실태 및 자립과정을 다년간 조사하고, 취약계층 유형별 실태 및 지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취약청년 지원체계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표 1-1. 3개년 협동연구 연차별 연구주제 및 대상

수행기관	주제 및 대상	'22년	'23년	'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	◎	◎
	정책소외계층 청년 발굴	◎	◎	-
	다중취약청년(정책개발)	-	-	◎
	다중취약청년(정보망)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소년부모	◎	-	-
	금융취약청년	-	◎	-
	다중취약청년(전달체계)	-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제선지능청년	◎	-	-
	발달장애청년	-	◎	-
통일연구원	북한배경청년	◎	-	-

* 출처: 백해정, 김지연, 김승경, 김이배, 노혜진, 김성아, 박광욱 (2023). 청년종합연구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p.222. 저자 일부 수정

3차 년도 연구는 협동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체계 현안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등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협동총괄연구에서는 협동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1, 2차 년도에 협동연구를 통해 살펴본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다중취약성 확인을 통해 개인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보시스템 기반의 발굴체계 구축 방안 및 청년정책 추진기관과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한 유형인 자립준비청년의 다차원적·다중적 취약성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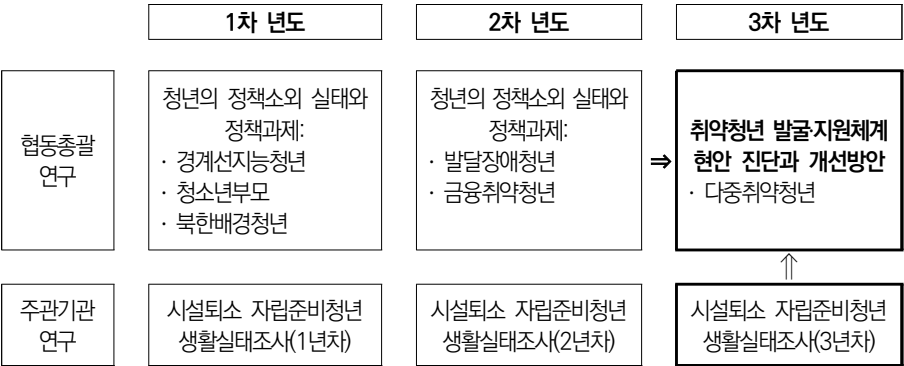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도

2. 연구추진체계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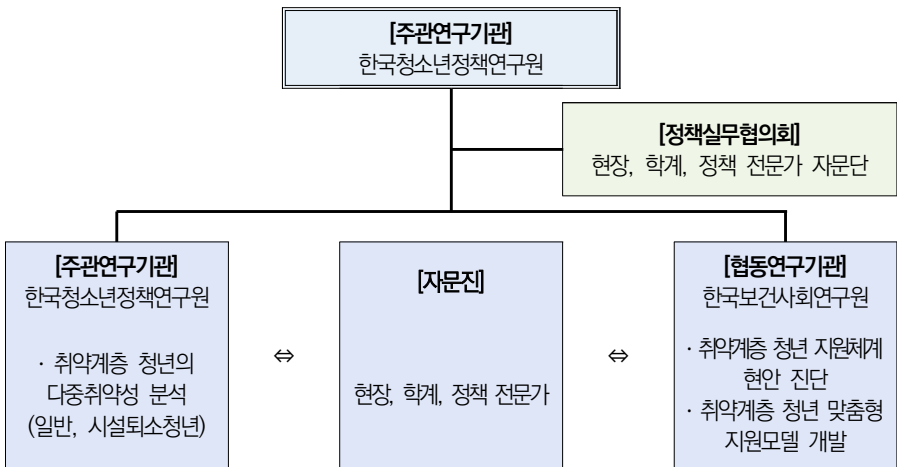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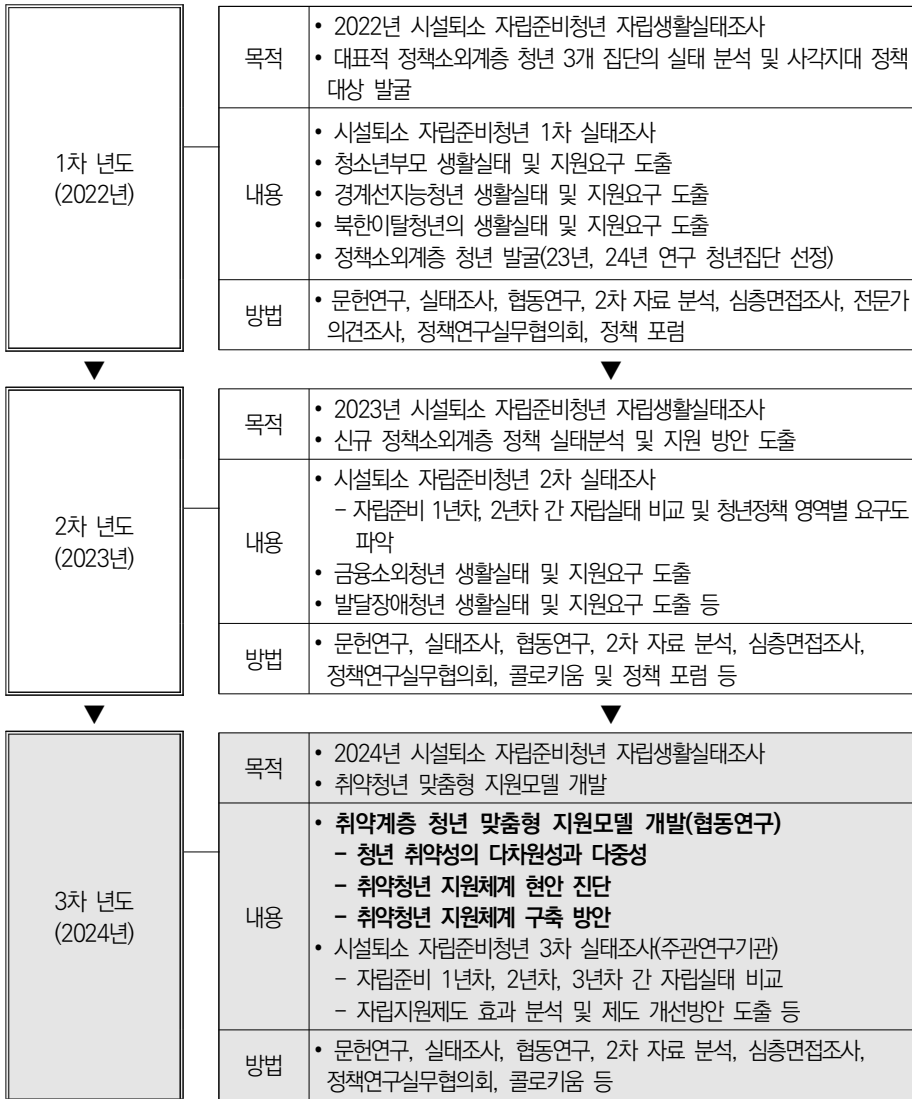


그림 1-2. '24년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3. 연구내용

3차 년도 연구주제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 현안 진단 및 개선방안의 연구를 위해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지난 1, 2차 년도에 추진되어 온 시설퇴소청년, 청소년부모, 경계선지능청년, 북한이탈청년, 발달장애청년, 금융취약청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점검하여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는 각 취약계층 유형별·지자체별로 각각 상이한 수준에서 상이한 양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굴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체계는 유형별로 더욱 분절되고 있는데, 취약유형을 세부화할수록 취약유형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지원체계가 더욱 분절되는 경향이 있어 유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기도 하고, 유사한 취약성을 가진 경우에도 상이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청년정책 지원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유형별 지원체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3차 년도 연구에서는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특성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고, 지원체계 내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취약계층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와 본원에서 시설퇴소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청년의 분포 특성 및 이들이 지닌 다중취약성을 비교·분석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1, 2차 년도에 수행한 다양한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쟁점 및 현안을 확인하고,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여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연차별 연구 목적, 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출처: 백해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 일부 수정.

그림 1-3.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취약청년 지원체계 관련 국내·외 제도 현황과 정책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자료,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승인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원자료와 본원의 ‘2024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일반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의 다중취약성을 비교하였다.

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 설계과정에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도출된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확정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협동연구기관, 유관 기관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개최시기
1회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업무협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5명	3월 12일
2회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 협의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3개 부처 8개 부서 담당자	4월 중 수시 (유선, 개별)
3회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5월 20일
4회	가명정보 추가가명처리를 위한 업무 협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5명	8월 23일
5회	자립준비청(소)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11월 12일

3) 전문가 자문 및 기타 연구방법

연구 내용과 방향 설계, 청년의 다차원적·다중적 취약성 및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 관련 현안 검토, 조사표 개발 및 자료 분석방법,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정책추진과 제 검토 등 연구 추진과정의 각 단계에서 상시적으로 현장, 학계, 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자문회의 및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 발표 · 발표: 백혜정 (본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부처, 가명정보 결합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3월 8일
2회	■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발제: 김윤중(유플이에스데이터 수석)	원내외 연구자	4월 24일
3회	■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 발제: 양대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 - 한은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 토론: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원내외 연구자	8월 20일
4회	■ 시설외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종단분석 세미나 · 발제: 김나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손윤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김진실(고려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박사과정), - 전현정(본원 부연구위원)	원내외 연구자	9월 9일



제2장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 1.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 2. 취약계층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
- 3. 소결 : 취약청년의 다중적·가변적 취약성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마련

1.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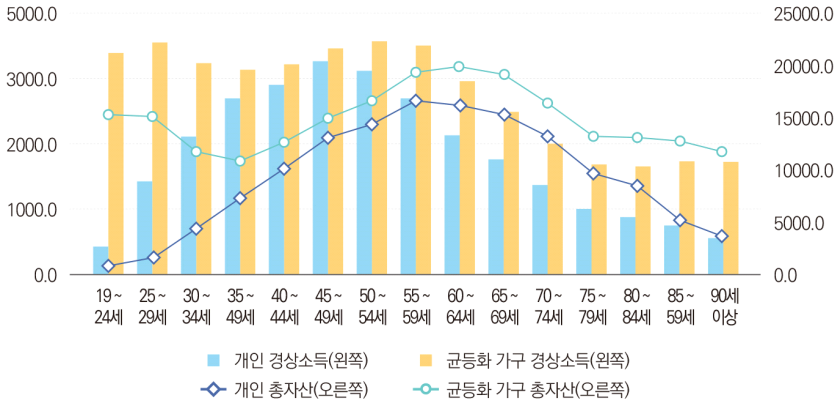
1) 청년도 취약한가?

생애주기에서 청년은 보호받는 미성년기를 지나 교육을 이수한 후 스스로 소득을 벌고 자산을 형성하며 경제적 독립을 시작한다. [그림 II-1]을 보면,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은 숙련도가 축적되면서 점차 증가해 중장년기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은퇴 이후 소득이 점차 감소한다. 항상소비가설에 따라 전 생애 동안 소비 수준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므로, 항상 초기 청년기 이후 소비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이용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축적한다. 이에 개인의 자산은 중장년 후기에 최고 수준을 보인 이후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생애 궤적이 실현되는데, 이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과 부합하는 것이다(김성아 외, 2023).

다만 생애주기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기와 후기 노인기에는 가구를 통해 부모 혹은 자녀의 소득 및 자산으로 소득과 자산의 부족분을 보완한다. [그림 II-1]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청년 집단과 75세 이상 후기 노인 집단에서 개인 경상소득 및 총자산의 감소 경향에 비해 이들이 속한 가구의 경상소득 및 총자산이 높은 것은 개인의 낮은 소득 수준을 완충하는 가구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생애 최고 소득 수준과 자산을 축적하는 중장년이 자녀 세대인 청년과 부모 세대인 후기 노인을 이중 부양하는 실태를 보이는 동시에, 청년의 숙련도가 축적되기 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자산 수준을 가구를 통해 원가족, 특히 부모 세대의 원조로 상쇄하는 실태를 보이는 것이다.

4) 본 절은 김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원고의 일부는 김성아, 김지연 외(2023)의 제2장과 제3장 일부를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단위: 만원/년, 만원)



* 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2년). 마이크로데이터(원격접근서비스)를 분석한 결과임. 조사시점 기준임.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유량(flow),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기준 저장(stock)임.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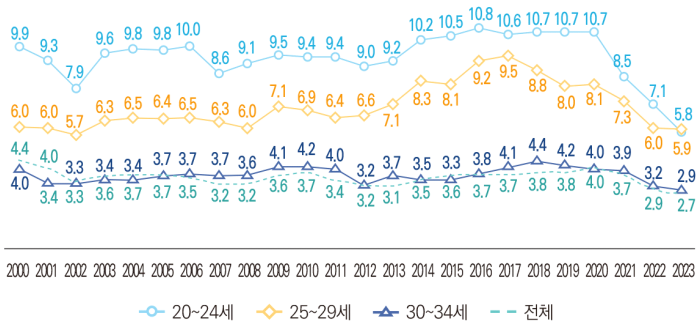
* 출처: 김성아 외 (2023). 생애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4.

그림 II-1. 개인 및 가구 단위 생애 관점 소득과 자산 분포

평균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경제력은 일부 원가족, 특히 부모 세대의 원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현세대 청년이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목도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그림 II-2]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청년 실업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실업률이 2000년 4.4%에서 점차 감소해 2002년 3.3%에 이른 약간 씩 증가하여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4.1% 내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 다시 3.2%로 감소한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18년에 다시 4.4%로 증가하고 점차 감소해 2023년 최근 2.9%로 자연 실업률과 유사한 수준에 이른다. 30~34세 후기 청년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되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초기 청년(20~24세)과 중기 청년(25~29세)의 실업률은 최근 20여 년 동안 전체 실업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세 초기 청년의 실업률은 2000년 9.9%에서 2002년 7.9%까지 감소하였다가 증감을 반복해 2010년대 중후반에는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25~29세 중기 청년의 실업률 수준은 2000년대 6% 내외, 2010년대 6~10% 수준을 유지하여 초기 청년의 실업률보다는 낮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보다

는 높다. 2021년 이후 초기 청년과 중기 청년의 실업률 또한 전체 실업률 추세와 유사하게 점차 감소해 2023년에는 각각 5.8%와 5.9%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을 웃돈다. 교육 이수 이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청년들이 입직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에 안착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단위: %)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onn_path=I3에서 2024년 5월 7일 검색)

그림 II-2. 청년 실업률(200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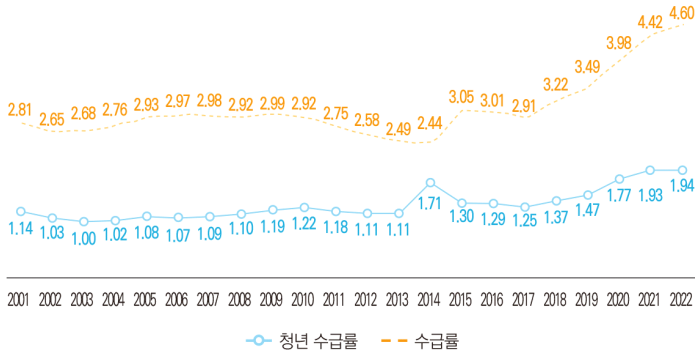
청년 실업률이 높은 등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취약하다면 빈곤한 청년,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는 어떠할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는 20대 청년의 높은 실업률이 청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2022년까지 전체 수급자 중 19~34세 청년 수급자의 추세를 보면 [그림 II-3]과 같다. 전체 인구 대비 수급률이 2001년 2.81%에서 3% 미만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2.44%로 감소한 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2015년에 3.05%로 증가하였다.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 잡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대상자 포괄성이 확대되면서 수급률은 2017년 이후 점차 증가해 2022년 4.6%에 이른다. 그런데 19~34세 청년의 수급률은 2001년 1.14%로 시작해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에 1.71%로 다소 증가했지만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2015년 이후에도 1.3%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제도 자체의 대상자 포괄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1.94%까지 증가했지만, 전체 수급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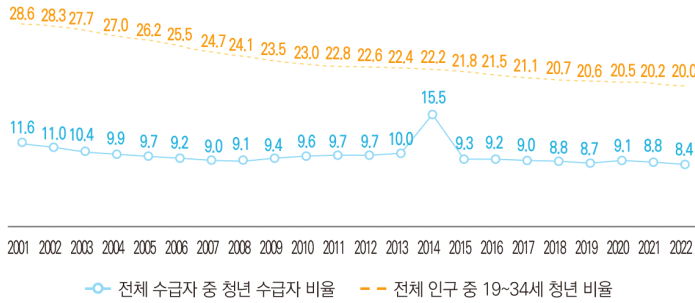
[그림 II-3]은 수급자 중 19~34세 청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청년의 비율은 2001년 11.6%에서 2014년 특이점을 제외하면 2010년대 초반까지 10% 이하의 수준을, 2010년대 후반부터는 9%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19~34세 청년 인구의 비율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수급자 중 청년의 비율이 지난 20여 년 동안 9~10% 내외를 유지하는 실태는 청년의 수급률이 감소하기보다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림 II-2]와 [그림 II-3]을 종합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을 만한 빈곤 청년의 규모가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그 규모가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함께 현세대 청년이 겪고 있는 경제활동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수급률 (%)



수급자 중 19~34세 청년 비율 (%)



* 주: 각 시점 연앙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 수급자의 비율임. 연앙인구는 각 년도 1월 1일과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값임.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한 값임. 수급률은 전체 수급자의 수를 전체 주민등록 연앙인구 수로 나눈 백분율의 값이고, 청년 수급률은 19~34세 수급자의 수를 전체 19~34세 인구수로 나눈 백분율의 값임.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국민기초일반수급자 수·시도별, 성별, 연령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3에서 2024년 5월 7일 검색)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3에서 2024년 5월 7일 검색)

그림 II-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비율(2001~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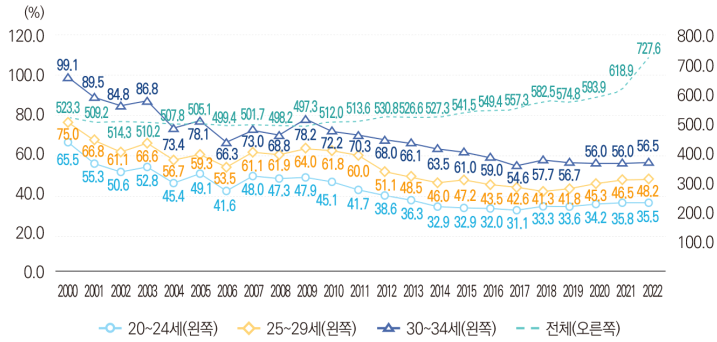
앞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혹은 취약성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경제적 관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적 삶을 점점하고자 한다. [그림 II-4]는 최근 20여 년 동안 청년의

자살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살률의 단위는 십만 명당 고의적 자해, 즉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자 수이다. 전체 자살률은 2000년 십만 명당 523.3명이었고, 이후 5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부터 약간씩 증가해 2021년에는 십만 명당 618.9명, 2022년에는 더 증가해 727.6명 수준이다. 분석 단위로 인한 것이지만, 전체 인구 집단의 하위 집단일 수 있는 20~24세 초기 청년, 25~29세 중기 청년, 30~34세 후기 청년 자살률의 절대적인 수준은 전체 자살률보다 낮다. 2000년 초기 청년의 자살률이 십만 명당 65.5명, 중기 청년은 75.0명, 후기 청년은 99.1명이다. 2010년대에는 증감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초기 청년의 자살률은 35.5명, 중기 청년은 48.2명, 후기 청년은 56.5명으로 줄었다. 청년 집단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의 비율이 높아지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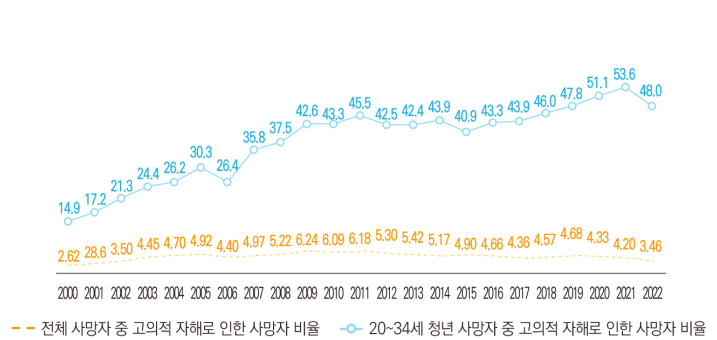
[그림 II-4]의 두 번째 그림에서는 청년 자살률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전체 사망자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확인하였다. 전체 사망자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2000년 2.62%인데, 점차 증가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는 6.24%에 이르렀다. 이후 점차 감소해 2022년에는 3.46% 수준이긴 하지만, 2000년 보다는 높은 편이다. 반면, 청년 사망자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의 추세는 상이하다. 2000년 14.9%로 전체 사망자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 2.6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청년 사망자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하게 증가해 2021년에는 53.6%까지 증가했다. 2022년에 48.0%로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 사망자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그림 II-4]의 세 번째 그림은 20~34세 청년 사망자, 그리고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20~34세 청년 사망자 수는 2000년 10.4천 명에서 2022년 4.6천 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인 청년 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그림에도 청년 사망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20~34세 청년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5천 명에서 오히려 증가해 2009년 3천 명으로 증가하고, 이후 다소 감소하는 듯 보였다 할지라도 2022년 2.2천 명으로 2000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 사망자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한 것은 실제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청년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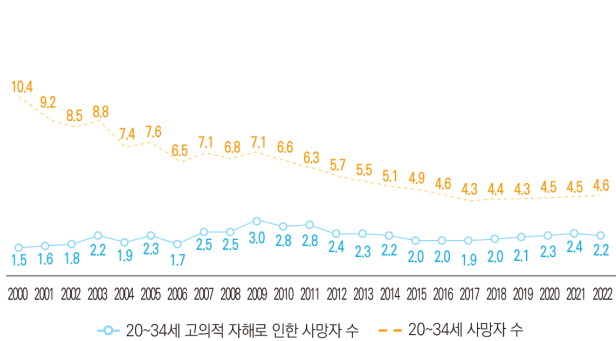
십만 명당 사망률 (명/십만 명)



사망자 중 비율 (%)



사망자 수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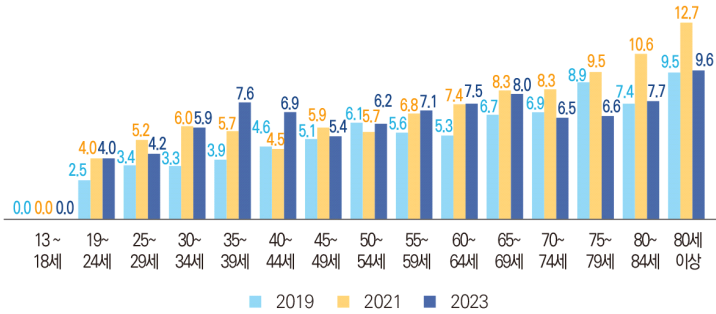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104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에서 2024년 5월 7일 검색)

그림 II-4. 청년 자살률(2000~2022년)

청년의 사회적 고립 추세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사회적 고립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하는 사람 이외의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가 없고, 아플 때나 돈이 필요할 때, 우울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로 조작적 정의하였다(김성아, 2023, 김성아, 김지연 외, 2023, 김성아, 노현주, 2024). [그림 II-5]는 팬데믹 전후의 연령집단별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3~18세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2021년에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전 세계를 위협한 팬데믹이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 것은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팬데믹이 완화된 2023년에 사회적 고립 비율이 팬데믹 기간 동안인 2021년에 비해 완화된다는 70세 이후 집단에서는 2023년 사회적 고립 비율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35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 집단에서는 팬데믹 이후인 2023년의 사회적 고립 비율이 팬데믹 시기의 비율보다 높아졌다. 19~34세 청년 집단에서 사회적 고립 비율은 팬데믹 이후인 2023년에 팬데믹 시기보다 다소 완화된다는 70세 이후 집단에서는 2023년 사회적 고립 비율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70세 이후 집단에서는 2023년 사회적 고립 비율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35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 집단에서는 팬데믹 이후인 2023년의 사회적 고립 비율이 팬데믹 시기의 비율보다 높아졌다. 19~34세 청년 집단에서 사회적 고립 비율은 팬데믹 이후인 2023년에 팬데믹 시기보다 다소 완화된다는 70세 이후 집단에서는 2023년 사회적 고립 비율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또한 청년에 비해 중장년이, 그리고 중장년에 비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는 경향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고립의 관점에서 연령대가 높은 집단이 더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된 성인의 삶을 시작하는 청년기부터 누적된 사회적 고립의 경험이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상흔효과를 고려하면 고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청년기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단위: %)



* 주: 사회적 고립은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가 없고, 아플 때, 돈이 필요할 때, 우울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도 없는 경우로 조작적 정의함.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그림 11-5. 연령집단별 사회적 고립 추이(2019~2023년)

최근 20여 년 동안 지표로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업률이 증가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완만히 증가했다. 고의적 자해로 인한 자살자 수가 증가했고,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청년들이 등장했다.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기준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새로운 취약성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의 취약성에 대응하는 공적 지원이 청년을 체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기존 취약계층 지원체계에 청년의 접근이 충분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취약계층으로서 청년, 특히 청년 취약성이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아우르는 다차원성과 다중성에 대한 사회정책적 이해와 민감성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공적 지원체계에 청년이 접근하기에 제약이 존재했을 수 있다. 청년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청년 당사자로 하여금 공적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문턱을 넘는 데에 심리적 거부감을 가지고 돌아서게 했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필요한 지원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김성아 외, 2021).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을 확인하고,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복지체계의 구조와 현안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행기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장애청년, 자립준비청년, 시설퇴소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청년, 은둔청년, 이주배경 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등 다양한 이름의 취약청년들이 회자되고 있다. 이들은 공급자 관점에서는 특정한 원인으로 유발된 취약성으로 인해 고유한 욕구를 가지는 개별적인 집단으로 다뤄질 수 있다. 실제로 자립준비청년은 미성년기에 원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18세부터 어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느라 경력을 쌓거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등 자신의 삶을 살아갈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은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실패의 경험을 누적하다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 없이 단절된 채 살아가지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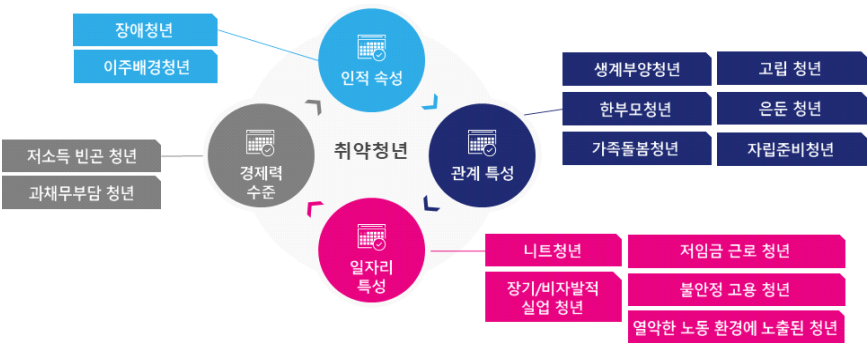
취약하다, 혹은 취약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년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관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성인으로의 삶으로 이행하는 청년기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취약성의 개념을 다시금 되짚는다. ‘취약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무르고 약하다’이고, ‘취약성’의 사전적 의미는 ‘무르고 약한 성질이나 특성’이다.⁵⁾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에 약한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환경과학에서 취약성은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손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정의하기도 한다(Adger, 2006). 환경과학의 관점은 항상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의 관점에서 취약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험하며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탐색하는 이행기에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상쇄할 수 있는 자본의 보유량에 대한 논의로 재해석할 수 있다.

경제철학자 센(Sen, A.)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는 다차원적 자본의 필요를 제기하며 미국의 철학자 누스바움(Nussbaum, M.)과 실현능력접근을 발전시켰다(Sen, 1999; Nussbaum & Sen, 1993).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소득의 일차원적인 경제적 자본을 넘어 사회적 자본, 환경적 자본이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하고, 이는 다차원적인 자본의 재분배를 필요로 한다. Cohen(1993)이 책의 챕터 제목으로 던진 “무엇의 평등인가?”이라는 질문과 그 책의 제목을 “삶의 질”이라고 지은 누스바움과 센(Nussbaum & Sen, 1993)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에서 2024년 7월 25일 검색)

의 답이 다차원적인 삶의 질이 평등할 규범적 바람직성을 드러낸다.

한편, 다차원 빈곤, 혹은 취약성의 다차원성은 센의 철학에 기반을 두어 경제력, 특히 소득 중심의 빈곤 관점이 가지는 일차원성을 극복하고 삶의 다양한 장면으로 확장하였다 (Nussbaum & Sen, 1993, Sen, 1999:13-34, Stiglitz, Sen, & Fitoussi, 2009, 변금선, 김기현, 2019). 취약성의 다차원적 관점은 청년이 경험하는 취약성을 구도조화하기도 한다. 김성아 외(2021)는 취약청년을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성에 따라 유형화하였고, 이는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으로 귀결된다(김성아, 김지연 외, 2023). [그림 II-6]은 다양한 이름의 취약계층 유형이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체계를 이루는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을 도식화하고 있다.



* 출처: 김성아, 김지연 외(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16

그림 II-6.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은 실제 현세대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구조화하지만,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차원적 취약성이 중첩되는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 <표 II-1>은 2022년 국무조정실에서 「청년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통계진흥원이 수행한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취약청년의 개별 유형들이 출현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에서는 이용가능성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조합해 조작적 정의할 수 있는 15개 취약청년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적 속성에 의한 취약청년은 등록된 장애청년, 활동제한청년, 이주배경청년, 다문화가족자녀청년을 포함하고 있다.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청년은 관계 부담이 가중된 한부모가족의 부모인 청년, 가족돌봄청년과 관계 자본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며,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청년은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청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구직단념청년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에 의한 취약청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고 있는 빈곤 청년, 채무부담이 과중한 과채무부담청년, 그리고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신용불량청년을 포함한다.

표 II-1. 청년 삶 실태조사의 취약청년 유형별 출현율

구분		출현율(%)	조작적 정의
인적 속성	장애청년	0.8	등록 장애인 혹은 비등록 장애인(보호처 등록 장애인) 청년
	활동제약청년	3.2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이 있는 청년
	이주배경청년	0.0	북한이나 그 외 외국에서 태어나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청년
	다문화가족자녀청년	0.2	부모 중 1명 이상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귀화자 포함)인 청년
관계 특성	한부모가족청년	0.3	한부모가구의 가구주인 청년
	가족돌봄청년	0.6	만성화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청년
	은둔청년	2.4	외출하지 않는 청년 중 그 이유가 장애 혹은 임신 및 출산이 아닌 청년
	자립준비청년	0.2	보호조치를 종료하였거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일자리 특성	불안정고용청년	15.9	임시·일용직 근로자이거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청년
	열악한 노동 환경 청년	9.6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거나 36시간 미만인면서 일을 더 하고 싶은 청년
	비자발적 실업청년	9.6	1년 이내 일 경험이 있지만 원치 않는 이유로 쉰 경험이 있는 청년
	구직단념청년(NEET)	13.1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중 학력상태가 재학이나 휴학이 아니면서 현재 교육기관 통학 중이 아닌 청년
경제력 수준	기초생활수급청년	0.9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중인 청년
	과채무부담청년	4.8	개인 총 부채액이 개인 3년간 총소득을 초과하는 청년
	신용불량청년	0.2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 청년

* 주: 김성아 외(2021)에 의한 취약청년 유형을 바탕으로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유형에 한함. 가중치를 적용함.
 * 출처: 김성아, 김지연 외(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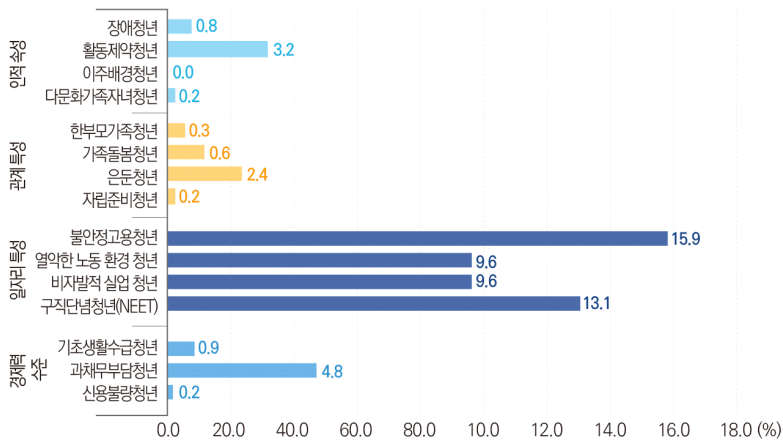


그림 II-7. 청년 삶 실태조사의 취약청년 유형별 출현율

다음 <표 II-2>는 <표 II-1>에서 확인한 15개 유형의 취약성이 청년 개개인에 어느 정도 중첩되어 드러나는지, 청년 취약성의 다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15개 취약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전체 응답자의 54.4%이다. 청년 2명 중 1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개의 취약성을 가진 청년은 전체의 31.1%이다. 출현율이 높게 나타난 불안정고용청년이나 구직단념청년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다. 취약성이 2개 이상 중첩된 경우는 전체의 15.6%이다. 3개 이상 다중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은 4.2%에 달한다. 가장 많은 유형의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은 전체 14,966명의 응답자 중 1명에 불과하지만, 그는 8개의 취약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결국 현대 청년에게 다차원적인 취약성은 중첩되어 등장하며 이는 청년의 다중취약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II-2. 청년 삶 실태조사의 청년 취업유형 중복률

취업유형 개수	표본 (명)	비율 (%)	누적비율(%)
0	7,990	53.4	
1	4,652	31.1	46.7
2	1,707	11.4	15.6
3	457	3.1	4.2
4	122	0.8	1.1
5	28	0.2	0.3
6	10	0.1	0.1
7	0	0.0	0.0
8	1	0.0	0.0
전체	14,966	100.0	100.0

* 주: 가중치를 적용함.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수리적 합계가 100.0%이 아닐 수 있음.

* 출처: 김성아, 김지연 외(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업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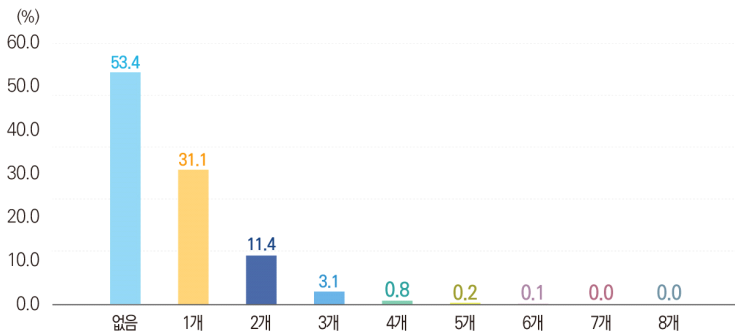


그림 II-8. 청년 삶 실태조사의 청년 취업유형 중복률

다음 <표 II-3>은 <표 II-2>에서 확인한 취업청년이 경험하는 취업성 유형의 개수별로 어떠한 취업성이 등장하는지 분석한 것이다. 1개의 취업성을 경험하는 청년은 15개 취업성 유형을 골고루 경험하고 있다. 취업유형 개수가 늘어날수록 장애, 활동제약, 가족돌봄, 은둔, 일자리의 열악함, 구직단념, 빈곤이나 과중채무, 신용불량의 취업성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8개의 취업성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는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어 활동제약을 경험하면서 가족돌봄 부담을 지고 있다. 동시에 외출하지 않고 은둔하고

있고, 구직단념청년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고 있다.

청년의 다차원적 취약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실태는 취약청년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원인뿐만 아니라 욕구가 복합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유형의 취약성이 다른 유형의 취약성을 양산하는, 그래서 취약성의 유형 간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무부담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소액 채무가 누적되면 본인의 상황 역량을 초과하여 과중채무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을 돌보느라 종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해서 구직을 단념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은둔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경제적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해 경력이 단절되고 빈곤해질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현세대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실업률,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살률, 과고립 등의 사회적 어려움은 취약청년이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기에 방해 요소로 작동할 수 있고, 결국 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표 II-3. 청년 삶 실태조사의 청년 취약유형 개수에 따른 취약유형 출현율

(단위: %)

구분		취약유형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8개
인적 속성	장애청년	0.5	2.3	5.1	14.2	13.4	69.2	100.0
	활동제한청년	3.4	9.3	20.5	34.1	75.5	93.6	100.0
	이주배경청년	0.0						
	다문화가족자녀청년	0.4	0.2	1.3				
관계 특성	한부모가족청년	0.4	0.5	2.1	1.2	14.1		
	가족돌봄청년	0.5	2.3	2.2	9.0	21.9	6.1	100.0
	은둔청년	2.1	7.9	17.8	30.7	32.8	30.8	100.0
	자립준비청년	0.3	0.7	1.3	1.6			
일자리 특성	불안정고용청년	27.5	45.1	54.0	52.4	27.7	83.9	
	열악한 노동 환경 청년	11.9	35.0	46.9	50.8	31.0	87.5	
	비자발적 실업청년	11.2	34.8	52.2	51.8	52.9	93.9	
	구직단념청년(NEET)	26.6	30.3	31.1	37.1	52.1	6.4	100.0
경제력 수준	기초생활수급청년	0.7	3.2	4.1	13.9	23.6	22.3	100.0
	과채무부담청년	8.3	11.3	20.1	27.6	50.0	15.6	
	신용불량청년	0.1	0.4	1.5	2.8	3.8	6.4	

* 주: 공란은 유효표본이 없는 경우임. 가중치를 적용함.
 * 출처: 김성아, 김지연 외(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39

2. 취약계층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⁶⁾

1) 취약계층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 청년의 취약성은 다차원적이며 중첩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청년의 취약성은 어느 정도의 다차원성과 다중성을 보이며 일반청년과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절에서는 공공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 지원체계로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소외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백혜정 외, 2023)이 지닌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정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일반청년이 가진 다차원적 취약성과 비교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성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 <표 II-4>는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한 일반청년의 개별 취약유형별 출현 비율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⁷⁾(김승경 외, 2024, 발간 예정)를 활용해 산출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유형별 출현율이 제시되어 있다. 취약유형의 구분 및 조작적 정의는 김성아 외(2021, 2023)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을 준용하여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 행복·희망 수준으로 유형화하였다. 다만 자료가 지닌 이용가능성의 제약으로 인해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취약유형에 한하여 개별 유형별 출현 비율을 산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유형 출현율이 일반청년의 출현율보다 높게 나타나 시설퇴소청년이 일반청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 취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일자리 특성과 경제력 수준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취약유형에서의 출현율이 일반청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일자리 특성 중 불안정고용, 구직단념, 장기·비자발적 실업의 취약유형 출현율이 일반청년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경제력 수준에 따른 취약유형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취약유형의 출현율은 4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결국 시설퇴소청년이 일반청년에 비해 다차원적으

6) 본 절은 전현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7)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김승경 외, 2024)는 본 연구의 주관기관에서 3개년에 걸쳐 시행한 조사임. 조사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19~34세 청년이며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경제, 주거, 건강 및 심리정서, 여가, 문화, 가치관 및 미래인식, 자립역량 등을 조사하였음.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과 '시설퇴소청년'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로 높은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일자리와 경제력 수준에서 높은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II-4. 시설토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유형별 출현율(일반청년 비교)

(단위: %)

구분	유형	하위유형 및 정의		출현율	
				일반청년	시설토소 자립준비 청년
인적 속성	장애 및 활동제약	장애청년	등록 장애인 혹은 비등록 장애인(보훈처 등록 장애인) 청년	0.8	7.4
		활동제약청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	3.2	12.6
	이주배경	이주배경청년	북한이나 그 외 외국에서 태어나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청년	0.0	2.3
		다문화가족 자녀청년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 한 청년	0.2	
관계 특성	관계부담 가중	한부모가족 청년	한부모가정의 부모인 청년	0.2	0.2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청년	0.6	2.3
	관계 부재	고립·은둔 청년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장애, 출산, 육 아 등) 없이 외출하지 않은 청년	1.6	1.8
일자리 특성	취업 청년	불안정고용 청년	임시·일용직 근로자	15.5	26.4
		열악한 근로 환경 청년	주 50시간 초과 근로청년	3.7	6.0
	미취업 청년	구직단념청년 (NEET)	고용되어 있지 않고,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도 않은 청년	8.1	18.5
		장기, 비자발적 실업청년	1년 이내 일 경험이 없지만 원치 않는 이유로 쉰 경험이 있는 청년	8.2	15.9
경제력 수준	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청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중인 청년	1.0	48.3
	자산	신용불량 청년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 청년	0.1	5.5
행복· 희망	만족도	행복빈곤	삶에 대한 만족 점수가 0점인 청년	0.7	5.7
	미래 계획	희망빈곤	비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 답한 청년	4.7	14.1

* 주: 1) 취약유형의 구분 및 조작적 정의는 '김성아 외(2021, 2023)'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의 조작적 정의를 준용하였으나 일부 유형의 경우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조사 자료에 맞춰 수정함.
 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출현율은 김승경 외(2024, 발간 예정)의 조사 자료 중 취약청년의 유형 및 정의에 부합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전체 자료 중 19~29세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함. 제시된 출현율은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취약유형 출현율을 의미함.
 2) '일반청년'의 출현율은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자료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청년 살 실태조사'의 전체 자료 중 19~29세 자료만을 활용하여 취약유형별 출현율을 산출하였으며, 분석 시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2024년 6월 기준 자료이고 '일반청년'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자료로 조사 시점이 상이하나, 일반청년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간 취약유형별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출현율을 단순 비교하였음.
 4)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김승경 외, 2024, 발간 예정)와 청년 살 실태조사(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의 조사 문항 중 각 취약청년 유형에 부합하는 세부 문항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일부 조사 문항 간 조사 기준 등의 차이가 존재함. 본 연구에서는 일반청년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간 취약유형별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형별 출현율을 단순 비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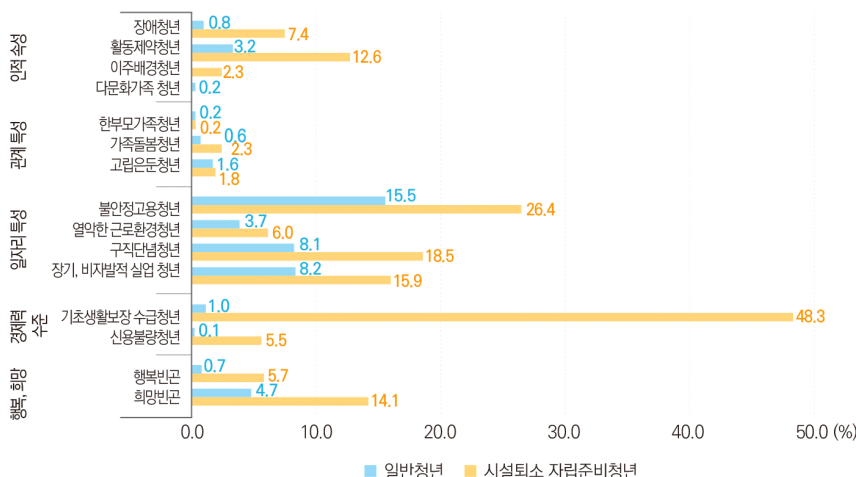


그림 II-9.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유형별 출현율(일반청년 비교)

한편, 시설퇴소청년 취약성의 다중성을 확인하고자 상술한 취약유형이 얼마나 중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일반청년과의 비교를 통해 시설퇴소청년의 상대적인 취약 다중성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II-10]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어느 하나의 취약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은 일반청년은 전체 응답자의 63.9%인데 반해, 시설퇴소청년은 전체의 18.8%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1개의 취약성을 가진 청년은 시설퇴소청년의 경우 전체의 31.2%, 일반청년은 전체의 28.1%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거나 시설퇴소청년의 중복률이 다소 높음을 보였다. 취약성이 2개 이상 중첩된 경우 시설퇴소청년과 일반청년 간의 확연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일반청년은 취약성이 2~5개 중첩되는 경우가 전체의

8%이지만, 시설퇴소청년은 전체의 48.9%에 달한다. 더욱이 7개 유형의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는 시설퇴소청년은 6명(전체의 0.2%), 가장 많은 8개 유형의 취약성이 중첩된 시설퇴소청년은 1명(전체의 0.04%)이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의 비율로는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성이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임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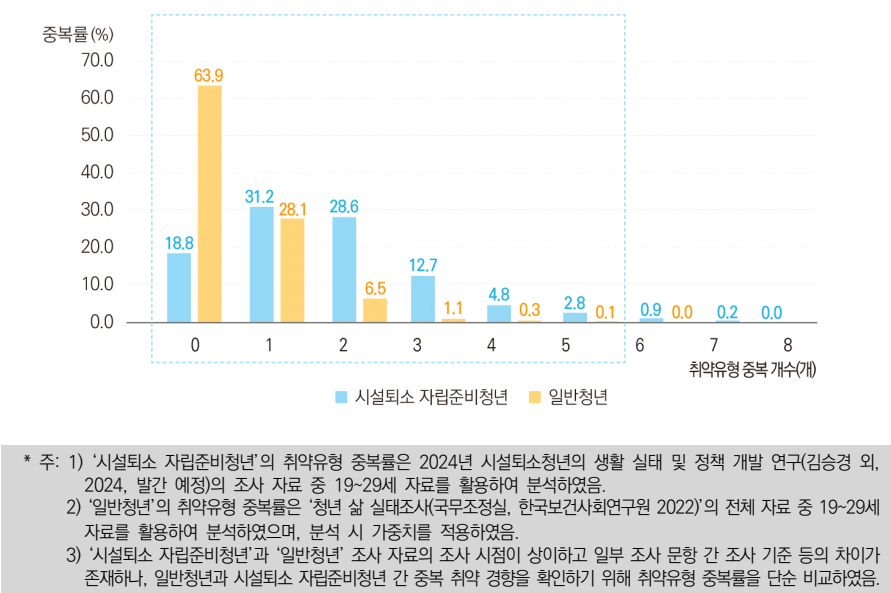


그림 II-10.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유형 중복률(일반청년 비교)

다음 <표 II-5>는 [그림 II-10]에서 확인한 시설퇴소청년의 중복 취약유형 개수에 따른 개별 취약유형의 출현율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성이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취약유형이 다중성을 보일 확률이 높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중복 취약유형 개수가 늘어날수록 장애, 활동제약, 고립·은둔, 불안정고용, 구직단념, 장기·비자발적 실업, 신용불량, 행복빈곤, 희망빈곤의 취약성이 중첩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첩되는 취약유형 개수가 적거나 늘어나도 다양한 취약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남을 보였다. 예를 들면 중복 취약 개수가 2개인 시설퇴소청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고 있으면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청년이 있고, 활동제약 청년이면서 고용되어 있지도, 서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도 않은 구직단념청년이 있다. 또한 6개의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는 시설퇴소청년은 장애를 갖고 있고 활동에도 제약을 받으며 고립되고 외출도 하지 않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 환경도 불안정하고 경제력 수준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며 신용불량 상태이다. 즉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성은 다차원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성이 가중되는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5.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중복 취약 개수에 따른 취약유형 출현율

(단위: %)

구분	유형	하위유형	중복 취약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인적 속성	장애 및 활동제약	장애청년	2.6	8.4	12.6	21.5	33.8	51.7
		활동제약청년	3.1	8.4	29.6	53.7	73.2	72.4
	이주배경	이주배경청년	1.0	2.4	6.9	2.5	5.6	10.3
관계특성	관계부담 가중	한부모가족청년	0.0	0.0	0.0	1.7	1.4	6.9
		가족돌봄청년	1.5	2.1	5.0	8.3	2.8	13.8
	관계 부재	고립·은둔청년	0.1	1.4	4.1	6.6	9.9	20.7
일자리 특성	취업 청년	불안정고용청년	15.1	40.0	47.2	50.4	46.5	51.7
		열악한 근로환경청년	5.7	6.6	10.4	9.9	12.7	17.2
	미취업 청년	구직단념청년(NEET)	11.2	25.8	31.8	40.5	38.0	51.7
		장기, 비자발적 실업청년	5.1	15.8	36.8	51.2	62.0	79.3
경제력 수준	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청년	46.3	67.6	65.4	68.6	73.2	72.4
	자산	신용불량청년	1.8	5.6	13.2	14.9	21.1	34.5
행복· 희망	만족도	행복빈곤	0.8	2.6	8.8	25.6	56.3	62.1
	미래 계획	희망빈곤	5.7	13.4	28.3	44.6	63.4	82.8

* 주: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유형 중복률은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김승경 외, 2024, 발간 예정)의 조사 자료 중 19~29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2) 중복 취약 개수가 6개 이상인 경우, 사례 수가 너무 작아 6개 이상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3) 표에 제시된 출현율은 중복 취약 사례 중 해당 취약유형일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중복 취약 개수가 2개인 전체 717명 중 장애 청년이 8.4%임을 의미함.

〈표 II-6〉은 시설퇴소청년의 중복 취약유형 개수에 따른 우울, 고립감, 행복감, 자립 수준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이다. 그 결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취약유형 개수가 늘어날수록 우울과 고립감 정도는 높아지고 행복감과 자립 수준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복 취약 개수 변화에 따른 우울, 고립감, 행복도, 자립 수준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중복 취약 개수가 적은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중복 취약 개수가 적은 집단과 많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고립감, 행복도, 자립 수준 정도에 대해 중복 취약 개수가 0~3개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0~3개인 집단과 4~6개 이상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퇴소청년의 취약 다중성 정도가 높아질수록 시설퇴소청년이 느끼는 우울,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정서는 높아지고 행복도와 자립 수준 정도는 낮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II-6.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중복 취약 개수에 따른 우울, 고립감, 행복도, 자립 수준 정도

중복 취약 개수	우울		고립감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0개	1.48(0.57)	101.911***	1.62(0.79)	84.189***
1개	1.51(0.56)		1.58(0.75)	
2개	1.64(0.68)		1.74(0.85)	
3개	2.03(0.87)		2.23(1.02)	
4개	2.52(0.91)		2.75(1.02)	
5개	2.73(0.95)		2.93(1.02)	
6개 이상	2.81(0.88)		3.16(1.02)	

중복 취약 개수	행복도		자립 수준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0개	5.72(2.24)	49.592***	3.19(0.52)	50.385***
1개	5.93(2.28)		3.00(0.57)	
2개	5.46(2.47)		2.87(0.63)	
3개	4.52(2.52)		2.70(0.61)	
4개	3.50(2.59)		2.43(0.66)	
5개	2.86(2.85)		2.49(0.55)	
6개 이상	2.14(2.66)		2.43(0.78)	

*** $p < .001$

* 주: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유형 중복률은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김승경 외, 2024, 발간 예정)의 조사 자료 중 19~29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2) 중복 취약 개수가 6개 이상인 경우, 사례 수가 너무 작아 6개 이상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3) 사후검증은 Games-Howell 방법을 활용하였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계층 청년과 비취약청년과의 격차 및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은 한 개인의 삶에서 특정 취약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 청년인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성은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이다. 더욱이 일반청년에 비해 다차원적으로 높은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취약성이 가중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심리정서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취약유형별로 지원대책을 마련

하고 단위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유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식별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잔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별해 내고 취약계층 청년 개개인의 다차원적인 결핍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데이터 간 상호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별해 낼 수 있도록 정보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의 다차원적 결핍 및 박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적자원 외에도 전문성이 있는 인적자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지원이 일부 취약계층 청년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 기반의 취약계층 청년 선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의지, 상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관계 기반, 사례관리 기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자원이 배분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수준 변화 및 영향 요인

상술한 바와 같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성은 다차원적이며 다중적이다. 이에 시설퇴소청년의 취약 다중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유형화되며,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시설퇴소청년의 지원 방안에 대한 보다 장기적 관점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3개년 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3차년도(2024년) 모두 조사에 참여한 1,03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유형 및 변화 양상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유형 구분 및 조작적 정의는 김성아 외(2021, 2023)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의 정의를 준용하였다. 다만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1~3차년도

조사 자료에서 공통되게 유형화가 가능하며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취업유형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취업유형의 구분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II-7>과 같이 시설퇴소청년의 취업유형을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 행복·희망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애청년, 고립·은둔청년, 불안정고용청년, 구직단념(NEET)청년, 신용불량청년, 행복·빈곤청년의 총 6개 취업유형으로 설정하였다.

표 II-7.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유형

구분	유형	하위유형 및 정의	
인적 속성	장애	장애청년	등록 장애인 혹은 비등록 장애인(보훈처 등록 장애인) 청년
관계 특성	관계 부재	고립·은둔청년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장애, 출산, 육아 등) 없이 외출하지 않은 청년
일자리 특성	취업청년	불안정고용청년	임시·일용직 근로자
	미취업청년	구직단념청년 (NEET)	고용되어 있지 않고,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도 않은 청년
경제력 수준	자산	신용불량청년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또는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청년
행복·희망	만족도	행복빈곤	삶에 대한 만족 점수가 0점인 청년

* 주: 취업유형의 구분 및 조작적 정의는 ‘김성아 외(2021, 2023)’의 취업계층 청년 유형의 조작적 정의를 준용하였으나 일부 유형의 경우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조사 자료에 맞춰 수정함.

분석 대상인 1~3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시설퇴소청년 1,034명의 3개년 취업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퇴소청년의 취업 출현율은 1.6~33.3% 범위로 나타나며 일자리 특성 유형인 불안정고용청년과 구직단념청년의 출현율이 3개년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구직단념청년의 출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안정고용청년의 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로 취업에 노출되고 있다. 즉 시설퇴소청년은 일자리 수준에서 높은 취업성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립·은둔청년은 1차년도 147명에서 2차년도 75명으로 감소하고 3차년도에는 고립·은둔청년이 출현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표 II-8.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유형 빈도

(단위: 명(%))

구분	취약유형	1차 년도(2022년)	2차 년도(2023년)	3차 년도(2024년)
인적 속성	장애청년	59(5.7)	64(6.2)	72(7.0)
관계 특성	고립·은둔청년	147(14.2)	75(7.3)	-
	불안정고용청년	344(33.3)	270(26.1)	244(23.6)
일자리 특성	구직단념청년 (NEET)	138(13.3)	203(19.6)	265(25.6)
경제력 수준	신용불량청년	17(1.6)	27(2.6)	53(5.1)
행복·희망	행복빈곤	79(7.6)	50(4.8)	63(6.1)

* 주: 1) 공란은 유효 사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2) 취약유형의 중복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각 취약유형의 출현율을 산출한 값임.

시간이 흐를수록 출현율이 감소하는 고립·은둔과 불안정고용 취약유형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취약유형으로 변화하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① 1차 년도에 다른 취약유형에는 속하지 않고 고립·은둔 취약유형에만 속했으나 2차 년도에 고립·은둔청년이 아닌 경우는 33명, 2차 년도에 고립·은둔 취약유형에만 속했으나 3차 년도에 고립·은둔청년이 아닌 경우는 27명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음 해에 다른 취약유형에 속하게 되는데, 불안정고용 혹은 구직단념 취약유형에 속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② 1차 년도에 다른 취약유형에 속하지 않고 불안정고용청년에만 속하였으나, 2차 년도에 불안정고용청년이 아닌 경우는 158명, 2차 년도에 불안정고용청년이었다가 3차 년도에 불안정고용청년이 아닌 경우는 122명이었다. 이러한 불안정고용 취약유형에만 속했던 청년들이 다음 해 불안정고용이 아닌 다른 취약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다양한 취약유형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9〉 참조).

표 II-9. 고립·은둔 및 불안정고용 취약유형 변화 양상

(단위: 명(%))

취약유형	① 고립·은둔청년이었으나, 다음 해 고립·은둔청년이 아닌 경우,		② 불안정고용청년이었으나, 다음 해 불안정고용청년이 아닌 경우,	
	2차 년도 (2023년)	3차 년도 (2024년)	2차 년도 (2023년)	3차 년도 (2024년)
	33명	27명	158명	122명
장애청년	-	-	2(1.3)	1(0.8)
고립·은둔청년			10(6.3)	-
불안정고용청년	4(12.1)	5(18.5)		
구직단념청년 (NEET)	4(12.1)	6(22.2)	20(12.7)	10(8.2)
신용불량청년	-	1(3.7)	6(3.8)	4(3.3)
행복빈곤	1(3.0)	5(18.5)	8(5.1)	4(3.3)

(2)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취약 유형 및 변화 양상

①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취약 유형

앞선 시점에 따른 취약유형별 발생 빈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설퇴소청년의 취약 형태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러 취약유형이 중복으로 나타나는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유형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분석에 앞서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유형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살펴보고자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취약을 유형화하였다.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유형은 2~6개 유형이 중복되며 총 57가지 유형이 발생한다. 본 분석에서 활용한 구체적인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취약 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10.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취약 유형화

중복 개수	유형 개수	유형
2개	15개	장애+고립·은둔, 장애+불안정고용, 장애+NEET, 장애+신용불량, 장애+행복빈곤, 고립·은둔+불안정고용, 고립·은둔+NEET, 고립·은둔+신용불량, 고립·은둔+행복빈곤, 불안정고용+NEET, 불안정고용+신용불량, 불안정고용+행복빈곤, NEET+신용불량, NEET+행복빈곤, 신용불량+행복빈곤
3개	20개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 장애+고립·은둔+NEET, 장애+고립·은둔+신용불량,

중복 개수	유형 개수	유형
		장애+고립·은둔+행복빈곤, 장애+불안정고용+NEET, 장애+불안정고용+신용불량, 장애+불안정고용+행복빈곤, 장애+NEET+신용불량, 장애+NEET+행복빈곤, 장애+신용불량+행복빈곤, 고립·은둔+불안정고용+NEET, 고립·은둔+불안정고용+신용불량, 고립·은둔+불안정고용+행복빈곤, 고립·은둔+NEET+신용불량, 고립·은둔+NEET+행복빈곤, 고립·은둔+신용불량+행복빈곤, 불안정고용+NEET+신용불량, 불안정고용+NEET+행복빈곤, 불안정고용+신용불량+행복빈곤, NEET+신용불량+행복빈곤
4개	15개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NEET,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신용불량,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행복빈곤, 장애+고립·은둔+NEET+신용불량, 장애+고립·은둔+NEET+행복빈곤, 장애+고립·은둔+신용불량+행복빈곤, 장애+불안정고용+NEET+신용불량, 장애+불안정고용+행복빈곤, 장애+불안정고용+신용불량+행복빈곤, 장애+NEET+신용불량+행복빈곤, 고립·은둔+불안정고용+NEET+신용불량, 고립·은둔+불안정고용+NEET+행복빈곤, 고립·은둔+불안정고용+신용불량+행복빈곤, 고립·은둔+NEET+신용불량+행복빈곤, 불안정고용+NEET+신용불량+행복빈곤
5개	6개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NEET+신용불량,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NEET+행복빈곤,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신용불량+행복빈곤, 장애+고립·은둔+NEET+신용불량+행복빈곤, 장애+불안정고용+NEET+신용불량+행복빈곤, 고립·은둔+불안정고용+NEET+신용불량+행복빈곤
6개	1개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NEET+신용불량+행복빈곤
	총 57개	

시설퇴소청년 취약성의 다중성을 확인하고자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까지 취약유형 중복 개수에 따른 세부 유형별 사례 수(비율)를 살펴보았다(표 II-11) 참조). 중복 개수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복 개수가 1개인 단일 취약청년의 경우 불안정고용청년과 구직단념청년의 비율이 다른 취약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단념청년은 1차 년도 68명이었지만 3차 년도 조사에서는 178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불안정고용청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2개의 취약유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 불안정고용과 구직단념 취약유형이 다른 유형들과 중첩되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안정고용, 구직단념 취약유형은 다른 취약유형인 장애, 고립·은둔, 신용불량, 행복빈곤 취약유형 모두와 중복으로 출현하였다. 더욱이 불안정고용과 구직단념 중복 취약유형은 1차 년도에는 출현하지 않다가 2차 년도 25명, 3차 년도 35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한편 취약 중복 개수가 3개인 경우는 1차에서 3차 조사 모두에서 출현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고립·은둔+불안정고용+행복빈곤 유형과 불안정고용+구직단념+신용불량, 불안정고용+구직단념+행복빈곤, 불안정고용+구직단념+장애 유형은 2개년에 걸쳐 출현하였으며 적은 수지만 사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립·은둔, 구직단념, 행복빈곤 취약유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청년이 1차 년도 11명, 2차 년도 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끝으로 4가지 취약유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속해서 출현하지는 않았으며 중복 취약유형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성이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변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II-11.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취약 유형 빈도

(단위: 명(%))			
다중취약 유형	1차 년도 (2022년)	2차 년도 (2023년)	3차 년도 (2024년)
중복 개수: 1개			
장애	26(2.5)	38(3.7)	36(3.5)
고립·은둔	40(3.9)	27(2.6)	-
불안정고용	267(25.8)	201(19.4)	161(15.6)
NEET	68(6.6)	127(12.3)	178(17.2)
신용불량	7(0.7)	9(0.9)	23(2.2)
행복빈곤	22(2.1)	14(1.4)	25(2.4)
중복 개수: 2개			
장애+고립·은둔	3(0.3)	1(0.1)	-
장애+불안정고용	17(1.6)	6(0.6)	9(0.9)
장애+NEET	2(0.2)	10(1.0)	15(1.5)
장애+신용불량	-	2(0.2)	-
고립·은둔+불안정고용	27(2.6)	8(0.8)	-
고립·은둔+NEET	43(4.2)	16(1.5)	-
고립·은둔+신용불량	2(0.2)	-	-
고립·은둔+행복빈곤	8(0.8)	5(0.5)	-
불안정고용+NEET	-	25(2.4)	35(3.4)
불안정고용+신용불량	2(0.2)	7(0.7)	12(1.2)
불안정고용+행복빈곤	22(2.1)	9(0.9)	12(1.2)
NEET+신용불량	1(0.1)	4(0.4)	6(0.6)

다중취약 유형	1차 년도 (2022년)	2차 년도 (2023년)	3차 년도 (2024년)
NEET+행복빈곤	8(0.8)	4(0.4)	16(1.5)
신용불량+행복빈곤	1(0.1)	1(0.1)	3(0.3)
중복 개수: 3개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	5(0.5)	1(0.1)	-
장애+고립·은둔+NEET	1(0.1)	1(0.1)	-
장애+불안정고용+NEET	-	1(0.1)	4(0.4)
장애+불안정고용+신용불량	-	-	1(0.1)
장애+불안정고용+행복빈곤	-	2(0.2)	2(0.2)
장애+NEET+신용불량	-	-	3(0.3)
장애+NEET+행복빈곤	1(0.1)	-	1(0.1)
장애+신용불량+행복빈곤	1(0.1)	-	-
고립·은둔+불안정고용+NEET	-	2(0.2)	-
고립·은둔+불안정고용+신용불량	2(0.2)	-	-
고립·은둔+불안정고용+행복빈곤	1(0.1)	3(0.3)	-
고립·은둔+NEET+행복빈곤	11(1.1)	8(0.8)	-
고립·은둔+신용불량+행복빈곤	-	1(0.1)	-
불안정고용+NEET+신용불량	-	2(0.2)	4(0.4)
불안정고용+NEET+행복빈곤	-	1(0.1)	2(0.2)
불안정고용+신용불량+행복빈곤	-	-	1(0.1)
NEET+신용불량+행복빈곤	-	1(0.1)	-
중복 개수: 4개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NEET	-	1(0.1)	-
장애+고립·은둔+불안정고용+행복빈곤	-	1(0.1)	-
장애+고립·은둔+NEET+행복빈곤	3(0.3)	-	-
장애+불안정고용+NEET+행복빈곤	-	-	1(0.1)
고립·은둔+불안정고용+신용불량+행복빈곤	1(0.1)	-	-

* 주: 1) <표Ⅱ-10>에 제시된 시설외소청년의 다중취약 유형화 중 1~3차 중 유효 사례가 있는 경우만 유형 표기함.
2) 공란은 유효 사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3) 중복 개수 5개, 6개인 다중취약 유형은 1~3차에서 모두 출현하지 않음.

② 취약유형의 변화 양상

다음으로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취약 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음의 <표 II-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취약 중복 개수가 1개인 단일 중복 취약 집단은 3개년에 걸쳐 약 40%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취약유형에도 중복되어 속하지 않는 비 중복 취약 집단은 1차 년도(42.7%)에 비해 2, 3차 년도(47.9%, 46.8%) 조사에서 다소 높게 출현했으나 그 비율 변화가 높지는 않았다.

비 중복 취약 집단의 출현 비율 증가와 상응하여 다중 중복 취약 집단의 출현 비율은 1차 년도(15.7%)에 비해 2, 3차 년도(11.9%, 12.3%)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중 중복 취약 집단 중 중복 취약 개수가 2개인 집단의 출현 비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취약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3, 4개 중복 취약 집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출현 사례 수가 적어 변화 흐름을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취약유형이 중복으로 나타나는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이 매년 일정 비율로 출현한다는 점은 시설퇴소청년의 취약성이 중복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II-12. 취약유형의 변화 양상

(단위: 명(%))							
구분	중복 개수	1차 년도(2022년)		2차 년도(2023년)		3차 년도(2024년)	
단일 중복 취약	1개	430(41.6)		416(40.2)		423(40.9)	
다중 중복 취약	2개	136(13.2)	162 (15.7)	98(9.5)	123 (11.9)	108(10.4)	127 (12.3)
	3개	22(2.1)		23(2.2)		18(1.7)	
	4개	4(0.4)		2(0.2)		1(0.1)	
비 중복 취약	0개	442(42.7)		495(47.9)		484(46.8)	

그렇다면 각 연도별 시설퇴소청년의 취약 중복 정도에 따른 유형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다만 퇴소시설 유형에 따라 사례 수 차이가 크고 퇴소시설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각 조사 시점별 비 중복 취약 집단, 단일 중복 취약 집단, 다중 중복 취약 집단의 특징을 퇴소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1차 년도(2022년) 분석 결과, 아동시설 퇴소 청년들 중 비 중복 취약 집단과 단일 중복 취약 집단과 비교하여 다중 중복 취약

집단에 속한 청년들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다중 중복 취업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의 비율(34.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 혹은 읍면 지역에 속할 비율(68.6%+5.7%)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낮은 경제 수준을 보이는 비율(73.3%)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3〉 참조).

2차 년도(2023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시설 퇴소 청년들 중 비 중복 취업 집단에 속한 청년들의 7.5%가 경제 수준이 상이며 40.2%가 중의 경제 수준, 52.3%가 하의 경제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개 이상의 취업유형이 중복되어 출현한 다중 중복 취업 집단은 71.2%의 대다수 청년들의 경제 수준이 ‘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차 년도(2024년) 분석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아동시설 퇴소 청년들 중 다중 중복 취업 집단에 속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경제 수준이 ‘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4〉, 〈표 II-15〉 참조). 이상의 결과는 아동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은 낮은 경제 수준을 갖고 있을수록 여러 취업유형이 중복되어 출현할 확률이 크며, 시간이 흐름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임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표 II-13. 1차 년도(‘22년) 퇴소시설별 취업유형에 따른 특징

(단위: 명(%))

구분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보호시설			
		비 취업	단일 취업	다중 취업	χ^2	비 취업	단일 취업	다중 취업	χ^2	비 취업	단일 취업	다중 취업	χ^2
전체		363 (100.0)	331 (100.0)	105 (100.0)	-	69 (100.0)	91 (100.0)	52 (100.0)	-	10 (100.0)	8 (100.0)	5 (100.0)	-
성별	남자	153 (42.1)	149 (45.0)	58 (55.2)	5.637	26 (37.7)	42 (46.2)	21 (40.4)	1.229	9 (90.0)	6 (75.0)	5 (100.0)	1.840
	여자	210 (57.9)	182 (55.0)	47 (44.8)		43 (62.3)	49 (53.8)	31 (59.6)		1 (10.0)	2 (25.0)	0 (0.0)	
학력	고졸 이하	96 (26.4)	73 (22.1)	36 (34.3)	6.469	46 (66.7)	44 (48.4)	35 (67.3)	7.424	7 (70.0)	5 (62.5)	5 (100.0)	2.385
	대재 이상	267 (73.6)	258 (77.9)	69 (65.7)		23 (33.3)	47 (51.6)	17 (32.7)		3 (30.0)	3 (37.5)	0 (0.0)	
거주 지역	수도권	115 (31.7)	97 (29.3)	34 (32.4)	0.602	45 (65.2)	58 (63.7)	34 (65.4)	.055	6 (60.0)	6 (75.0)	2 (40.0)	1.588
	비 수도권	248 (68.3)	234 (70.7)	71 (67.6)		24 (34.8)	33 (36.3)	18 (34.6)		4 (40.0)	2 (25.0)	3 (60.0)	

구분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보호시설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지역 규모	대도시	162 (44.6)	146 (44.1)	27 (25.7)	13.703 **	38 (55.1)	50 (54.9)	21 (40.4)	4.303	4 (40.0)	1 (12.5)	2 (40.0)	1.864
	중소 도시	188 (51.8)	169 (51.1)	72 (68.6)		31 (44.9)	40 (44.0)	30 (57.7)		6 (60.0)	7 (87.5)	3 (60.0)	
	읍면 지역	13 (3.6)	16 (4.8)	6 (5.7)		0 (0.0)	1 (1.1)	1 (1.9)		-	-	-	
경제 수준	상	42 (11.6)	18 (5.4)	3 (2.9)	32.012 ***	5 (7.2)	8 (8.8)	2 (3.8)	3.724	1 (10.0)	2 (25.0)	1 (20.0)	6.015
	중	155 (42.7)	126 (38.1)	25 (23.8)		24 (34.8)	28 (30.8)	12 (23.1)		8 (80.0)	4 (50.0)	1 (20.0)	
	하	166 (45.7)	187 (56.5)	77 (73.3)		40 (58.0)	55 (60.4)	38 (73.1)		1 (10.0)	2 (25.0)	3 (60.0)	

* 주: 1) 구분의 '비'는 '비 중복 집단', '단일'은 '단일 중복 집단', '다중'은 '다중 중복 집단'을 의미.
2) * $p<.05$, ** $p<.01$, *** $p<.001$

표 II-14. 2차 년도('23년) 퇴소시설별 취약유형에 따른 특징

(단위: 명(%))

구분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보호시설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전체		398 (100.0)	328 (100.0)	73 (100.0)	-	84 (100.0)	84 (100.0)	44 (100.0)	-	13 (100.0)	4 (100.0)	6 (100.0)	-
성별	남자	171 (43.0)	153 (46.6)	37 (50.7)	1.966	40 (47.6)	33 (39.3)	16 (36.4)	1.917	11 (84.6)	3 (75.0)	6 (100.0)	1.467
	여자	227 (57.0)	175 (53.4)	36 (49.3)		44 (52.4)	51 (60.7)	28 (63.6)		2 (15.4)	1 (25.0)	0 (0.0)	
학력	고졸 이하	95 (23.9)	70 (21.3)	18 (24.7)	0.791	44 (52.4)	39 (46.4)	26 (59.1)	1.905	8 (61.5)	3 (75.0)	4 (66.7)	0.252
	대재 이상	303 (76.1)	258 (78.7)	55 (75.3)		40 (47.6)	45 (53.6)	18 (40.9)		5 (38.5)	1 (25.0)	2 (33.3)	
거주 지역	수도권	130 (32.7)	105 (32.0)	22 (30.1)	0.186	50 (59.5)	54 (64.3)	31 (70.5)	1.514	8 (61.5)	2 (50.0)	2 (33.3)	1.318
	비 수도권	268 (67.3)	223 (68.0)	51 (69.9)		34 (40.5)	30 (35.7)	13 (29.5)		5 (38.5)	2 (50.0)	4 (66.7)	
지역 규모	대도시	178 (44.7)	137 (41.8)	30 (41.1)	.996	45 (53.6)	44 (52.4)	22 (50.0)	1.448	4 (30.8)	2 (50.0)	3 (50.0)	0.878
	중소 도시	208 (52.3)	181 (55.2)	40 (54.8)		38 (45.2)	38 (45.2)	22 (50.0)		9 (69.2)	2 (50.0)	3 (50.0)	

구분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보호시설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읍면 지역	12 (3.0)	10 (3.0)	3 (4.1)		1 (1.2)	2 (2.4)	0 (0.0)		-	-	-	
경제 수준	상	30 (7.5)	11 (3.4)	2 (2.7)		2 (2.4)	4 (4.8)	0 (0.0)		1 (7.7)	0 (0.0)	0 (0.0)	
	중	160 (40.2)	93 (28.4)	19 (26.0)	24.956 ***	35 (41.7)	20 (23.8)	8 (18.2)	12.596 *	7 (53.8)	2 (50.0)	3 (50.0)	0.958
	하	208 (52.3)	224 (68.3)	52 (71.2)		47 (56.0)	60 (71.4)	36 (81.8)		5 (38.5)	2 (50.0)	3 (50.0)	

* 주: 1) 구분의 '비'는 '비 중복 집단', '단일'은 '단일 중복 집단', '다중'은 '다중 중복 집단'을 의미.
2) * α .05, ** α .01, *** α .001

표 II-15. 3차년도('24년) 퇴소시설별 취약유형에 따른 특징

구분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보호시설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비 취약	단일 취약	다중 취약	χ^2
전체		397 (100.0)	329 (100.0)	73 (100.0)	-	77 (100.0)	89 (100.0)	46 (100.0)	-	10 (100.0)	5 (100.0)	8 (100.0)	-
성별	남자	163 (41.1)	160 (48.6)	38 (52.1)	5.700	34 (44.2)	39 (43.8)	17 (37.0)	0.728	8 (80.0)	4 (80.0)	8 (100.0)	1.840
	여자	234 (58.9)	169 (51.4)	35 (47.9)		43 (55.8)	50 (56.2)	29 (63.0)		2 (20.0)	1 (20.0)	0 (0.0)	
학력	고졸 이하	77 (19.4)	74 (22.5)	21 (28.8)	3.515	33 (42.9)	39 (43.8)	24 (52.2)	1.141	2 (20.0)	4 (80.0)	7 (87.5)	9.673 **
	대졸 이상	320 (80.6)	255 (77.5)	52 (71.2)		44 (57.1)	50 (56.2)	22 (47.8)		8 (80.0)	1 (20.0)	1 (12.5)	
거주 지역	수도권	142 (35.8)	98 (29.8)	27 (37.0)	3.353	54 (70.1)	58 (65.2)	25 (54.3)	3.157	4 (40.0)	5 (100.0)	4 (50.0)	5.095
	비 수도권	255 (64.2)	231 (70.2)	46 (63.0)		23 (29.9)	31 (34.8)	21 (45.7)		6 (60.0)	0 (0.0)	4 (50.0)	
지역 규모	대도시	176 (44.3)	153 (46.5)	30 (41.1)	2.087	36 (46.8)	48 (53.9)	25 (54.3)	2.136	4 (40.0)	1 (20.0)	2 (25.0)	0.801
	중소 도시	207 (52.1)	169 (51.4)	40 (54.8)		38 (49.4)	40 (44.9)	20 (43.5)		6 (60.0)	4 (80.0)	6 (75.0)	
	읍면 지역	14 (3.5)	7 (2.1)	3 (4.1)		3 (3.9)	1 (1.1)	1 (2.2)		-	-	-	
경제 수준	상	30 (7.6)	11 (3.3)	1 (1.4)	30.609 ***	3 (3.9)	3 (3.4)	1 (2.2)	16.770 **	3 (30.0)	0 (0.0)	0 (0.0)	12.789 *
	중	170 (42.8)	105 (31.9)	16 (21.9)		32 (41.6)	17 (19.1)	6 (13.0)		5 (50.0)	2 (40.0)	0 (0.0)	
	하	197 (49.6)	213 (64.7)	56 (76.7)		42 (54.5)	69 (77.5)	39 (84.8)		2 (20.0)	3 (60.0)	8 (100.0)	

* 주: 1) 구분의 '비'는 '비 중복 집단', '단일'은 '단일 중복 집단', '다중'은 '다중 중복 집단'을 의미.
2) * α .05, ** α .01, *** α .001

(3) 시설퇴소청년의 취약 중복 정도에 따른 자립 수준 변화 양상

상술한 시설퇴소청년의 다중취약 유형 중 1차 년도 취약유형을 기준으로 1~3차 년도의 자립 수준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수준은 경제적 자립을 확인할 수 있는 월평균 소득, 신체적 자립 측면의 자신의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정서적 자립을 추정할 수 있는 우울 정도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립 수준의 변화를 소득, 신체건강 인식, 우울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신체적, 정서적 건강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여 다중취약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신체적, 정서적 자립의 변화 양상을 단편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자립 수준에 대한 취약유형 중복 정도에 따른 세 유형의 집단별 선형 변화 모형을 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소득, 신체건강 인식, 우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미 있게 변화한다면 변화하는 양상에 자립지원 및 자립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자립수당 수급 기간, 자립프로그램 도움 정도, 본인이 인지하는 자립 수준, 자립지원 수혜 기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표 II-16〉 참조).

표 II-16. 분석 변인

구분	변인명	변숫값	조사 시점	비고
변화 양상 확인 변수				
경제적 자립	소득	한 달 평균 소득(만원)	1~3차	· 문항 차이(1차/2,3차) 1차: 본인의 월평균 소득/2, 3차: 개인(가구) 월평균 소득 · log 변환
신체적 자립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매우 나쁘다 2=나쁘다 3=보통이다 4=좋다 5=매우 좋다	1~3차	-
정서적 자립	우울	1=전혀 없다 2=며칠 동안 3=일주일 동안 4=거의 매일	1~3차	· 9개 문항 평균값 · 문항 범주 차이(1차/2, 3차) 1차 응답 범주 리코딩
변화 영향 요인				
자립 수당금	자립수당 수급 기간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 수급 기간(연도)	1차	· 응답 시점(2022년) 기준 수급 기간

구분	변인명	변숫값	조사 시점	비고
자립 역량	자립프로그램 도움 정도	1=전혀 도움 안 되었다 2=도움 안 되었다 3=보통 4=도움 되었다 5=매우 도움 되었다	1차	· 8개 문항 평균값
	본인이 인지하는 자립 수준	1=전혀 성취하지 못했다 2=성취하지 못했다 3=성취했다 4=완전히 성취했다	1차	· 5개 문항 평균값
자립 지원	자립지원 수혜 기간	기원에서 자립자원을 받은 총 기간(개월)	1차	· 개월 환산값

본격적인 자립 수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Byrne, 1998; Steiger & Lind, 1980)],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Bentler, 1995)]을 사용하였다. χ^2 는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다양한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하며,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SRMR은 <.08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소득,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우울에 대한 집단별 모형 적합도 값을 살펴보면, 일부 모형의 RMSEA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다. 다만, CFI와 SRMR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 가지 자립 수준에 대한 취약유형 중복 정도에 따른 집단별 분석 모형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II-17. 분석 모형 적합도

구분	집단	χ^2	df	CFI	RMSEA	SRMR
소득	다중 중복 취약	3.884*	1	0.829	0.135	0.062
	단일 중복 취약	14.179***	1	0.814	0.175	0.061
	비 중복 취약	1.394	1	0.997	0.030	0.023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다중 중복 취약	0.495	1	1.000	0.000	0.011
	단일 중복 취약	0.668	1	1.000	0.000	0.008
	비 중복 취약	5.543*	1	0.987	0.101	0.025
우울	다중 중복 취약	2.335	1	0.994	0.091	0.021
	단일 중복 취약	0.788	1	1.000	0.000	0.009
	비 중복 취약	1.530	1	0.999	0.035	0.012

* $p < 0.05$, ** $p < 0.01$, *** $p < 0.001$

①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수준 변화 양상

취약유형 중복 정도에 따라 유형화되는 다중 중복 취약, 단일 중복 취약, 비 중복 취약청년 집단의 자립 수준 변화 양상을 각각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소득,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우울로 구분하여 제사하였다.

가. 소득

취약유형 중복 정도에 따른 집단별 시설퇴소청년의 소득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18>과 같다. 다중 중복 취약, 단일 중복 취약, 비 중복 취약청년의 소득에 대한 초깃값과 변화율의 평균값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 시점 사이에서 세 집단의 소득이 선형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세 집단의 초깃값 분산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2022년 1차 조사 시기에 시설퇴소청년의 소득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중취약 집단의 변화율 분산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중취약청년들의 소득이 변화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8. 소득의 발달 궤적 추정치

구분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공분산(표준오차)
다중 중복 취약청년	초기값	4.356***(.108)	0.746**(.249)	-0.325*(.139)
	변화율	0.287***(.067)	0.198*(.100)	
단일 중복 취약청년	초기값	4.596***(.050)	0.227*(.095)	-0.025(.055)
	변화율	0.276***(.030)	0.035(.046)	
비 중복 취약청년	초기값	5.093***(.035)	0.234***(.052)	-0.032(.028)
	변화율	0.092***(.020)	0.028(.023)	

* $p < .05$, ** $p < .01$, *** $p < .001$

나.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집단별 발달 양상을 살펴본 결과, 소득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세 집단의 초기값 평균과 분산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조사 시점에 시설외소청년의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편 단일 중복 취약 집단의 변화율 분산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일 중복 취약청년의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변화 정도에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9.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발달 궤적 추정치

구분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공분산(표준오차)
다중 중복 취약청년	초기값	2.706***(.075)	0.647***(.117)	-0.088(.060)
	변화율	0.046(.036)	0.046(.048)	
단일 중복 취약청년	초기값	3.069***(.041)	0.521***(.062)	-0.101**(.031)
	변화율	0.016(.021)	0.083**(.025)	
비 중복 취약청년	초기값	3.198***(.040)	0.340***(.058)	0.011(.032)
	변화율	0.002(.020)	-0.001(.028)	

* $p < .05$, ** $p < .01$, *** $p < .001$

다. 우울

우울의 분석 결과도 앞선 소득과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세 집단의 초깃값 평균과 분산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1차 조사 시기에 시설된 소청년들 간 우울 정도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중취약청년의 우울 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세 시점 사이에서 다중취약청년의 우울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0. 우울의 발달 궤적 추정치

구분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공분산(표준오차)
다중 중복 취약청년	초깃값	2.284***(.070)	0.575***(.103)	-0.049(.050)
	변화율	-0.062*(.031)	0.040(.041)	
단일 중복 취약청년	초깃값	1.652***(.031)	0.314***(.036)	-0.046(.018)
	변화율	0.004(.016)	0.058***(.015)	
비 중복 취약청년	초깃값	1.538***(.025)	0.175***(.025)	0.015(.013)
	변화율	-0.009(.012)	0.000(.012)	

* $p < .05$, ** $p < .01$, *** $p < .001$

시설된소청년의 자립 수준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중취약청년의 소득은 세 시점 사이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우울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취약청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자립 정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이 다중취약 시설된소청년의 소득과 우울 변화 양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4) 다중취약 시설된소청년의 자립 수준 변화의 영향 요인⁸⁾

다중취약 시설된소청년의 소득과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 설정한 소득과 우울에 대한 선형 조건 모형을 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고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FI, RMSEA, SRMR 적합도가 모두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여 분석 모형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8) 세 가지 자립 수준인 소득,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우울 중 발달 궤적 추정치 결과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득, 우울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만 실시함.

표 II-21. 분석 모형 적합도

구분	χ^2	df	CFI	RMSEA	SRMR
소득	3.461	5	1.000	0.000	0.072
우울	6.249	5	0.973	0.084	0.072

* $p<.05$, ** $p<.01$, *** $p<.001$

앞선 분석 결과를 통해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소득과 우울 정도가 세 시점 사이에서 유의하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소득과 우울의 변화에 자립지원 및 자립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① 소득

〈표 II-22〉를 보면, 자립지원 수혜 기간은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소득에 대한 초깃값($\beta=-.515$, $p<.05$)과 변화율($\beta=.634$, $p<.01$)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즉 자립지원 수혜 기간이 길수록 소득의 초깃값이 낮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립지원 수혜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표 II-22. 소득의 초깃값, 변화율의 영향 요인

구분			B	β	S.E	C.R
자립수당 수급 기간	→	초깃값	.076	.108	.140	0.541
	→	변화율	-.040	-.129	.058	-0.699
자립프로그램 도움 정도	→	초깃값	-.042	-.032	.252	-0.168
	→	변화율	.015	.027	.103	0.148
본인이 인지하는 자립 수준	→	초깃값	.302	.241	.255	1.187
	→	변화율	-.029	-.052	.106	-0.275
자립지원 수혜 기간	→	초깃값	-.023*	-.515	.009	-2.507
	→	변화율	.013**	.634	.004	3.307

* $p<.05$, ** $p<.01$, *** $p<.001$

② 우울

다중취약청년의 우울 초깃값과 변화율에 자립지원 및 자립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23>과 같다. 분석 결과, 자립프로그램 도움 정도와 자립지원 수혜 기간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립프로그램 도움 정도는 다중취약청년의 우울에 대한 초깃값에 부적 영향($\beta=-.800$, $p<.001$), 변화율에 정적 영향($\beta=.660$, $p<.05$)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립프로그램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초깃값이 낮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만 자립지원 수혜 기간은 우울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beta=-.788$, $p<.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지원 수혜 기간이 길수록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우울 감소가 느리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3. 우울의 초깃값, 변화율의 영향 요인

구분			B	β	S.E	C.R
자립수당 수급 기간	→	초깃값	-.162	-.306	.105	-1.550
	→	변화율	.034	.153	.062	0.558
자립프로그램 도움 정도	→	초깃값	-.722***	-.800	.185	-4.251
	→	변화율	.275*	.660	.109	2.521
본인이 인지하는 자립 수준	→	초깃값	.182	.192	.181	1.009
	→	변화율	-.194	-.483	.106	-1.822
자립지원 수혜 기간	→	초깃값	.012	.343	.007	1.659
	→	변화율	-.011**	-.788	.004	-2.743

* $p<.05$, ** $p<.01$, *** $p<.001$

3. 소결 : 취약청년의 다중적·가변적 취약성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마련⁹⁾

1) 취약계층 청년의 다중적·가변적 취약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 혹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려운 사회적 삶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청년의 낮은 수준의 소득과 자산 분포, 높은 청년 실업률, 빈곤 청년 규모의 증가, 높은 자살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적·사회적 차원을 아우르는 청년의 취약성은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이다. 이러한 청년의 다차원적 취약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실태는 취약계층 청년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취약계층 청년은 일반청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 취약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변적 취약유형에서 높은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취약성이 가중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우울,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정서 정도는 높아지고 행복도와 자립 수준 정도는 낮아져, 취약계층 청년의 다중취약성은 청년의 심리·정서 및 자립 수준 정도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첩되어 나타나는 취약청년의 취약유형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현시점에 특정 취약성을 보이더라도 다음 해에는 해당 유형의 취약성이 아닌 다른 다양한 유형의 취약성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즉 취약청년 개인의 취약성은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변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약청년의 다중적이고 가변적인 취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4년 발표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며, 시설퇴소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의 다양한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3.29.a).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취약유형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취약계층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취약청년의 취약성이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이며 가변적이라는 사회·정책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취약유형이 아닌 취약청년 개인의 복합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개인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 본 절은 전현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다중취약청년 대상 전문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설퇴소청년의 취약 중복 정도에 따른 자립 수준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취약 중복 정도에 따른 집단별 소득,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우울의 3개년 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퇴소청년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자립의 변화 양상을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개 이상의 취약유형이 중첩되어 나타난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소득은 1~3차 시점 동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우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취약청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자립 정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어떠한 요인들이 다중취약청년의 소득과 우울 변화 양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중취약청년의 소득에 자립지원 수혜 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립지원 수혜 기간이 길수록 소득의 초깃값이 낮고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프로그램 도움 정도와 자립지원 수혜 기간이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자립프로그램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초깃값이 낮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지원 수혜 기간이 길수록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우울 감소가 느리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립지원 수혜 기간은 다중취약청년의 소득과 우울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립지원 수혜 기간이 길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우울 감소에 느리지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다만 자립지원 수혜 기간이 길수록 우울의 감소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은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에 기관에서 받은 자립지원 수혜의 지속적 효과는 미비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자립프로그램이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에 도움이 많이 될수록 우울의 초깃값도 낮춰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중취약 시설퇴소청년의 정서적 자립에 자립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결국 다중취약청년의 소득과 우울과 같은 경제적, 정서적 자립에 자립지원 수혜와 같은 ‘경제적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다중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당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문적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결합된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다중취약청년 개인의 취약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약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다중취약청년의 사례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다중취약청년의 맞춤형 지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전담인력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인력과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부재하다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다중취약청년의 취약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변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담인력의 양성과 안정적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취약청년의 경우 고립감과 우울 정도가 일반청년에 비해 높아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백혜정 외, 2023). 외로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취약청년에게 사례관리자와의 유대 관계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다중취약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전담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처우 관리, 장기적 차원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 담당 사례관리자와 다중취약청년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가능한 지원 환경 형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제3장 취약청년 지원체계 현안 진단

- 1. 취약청년 지원사업 현황
: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 2.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전달체계 현황
: 복지포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 3. 취약청년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
- 4.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구축 현안

1. 취약청년 지원사업 현황: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을 중심으로¹⁰⁾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았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분야 124개, 주거분야 28개, 교육 분야 117개, 복지·문화 분야 44개, 참여·권리 분야 43개 등 총 다섯 개 분야, 356개의 사업이 3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제 수는 '23년 390개에 비해 '24년 356개로 34개 감소되었으며, 투입된 예산은 '24년 약 27.0조원으로 '23년 약 25.4조원 대비 약 1.6조원이 증가하였다. 전년에 비해 주거(1.9%p)와 참여·권리(0.2%p) 분야의 예산 비중은 증가한 반면, 일자리(-1.3%p), 복지문화(-0.8%p) 분야의 예산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III-1. '23~'24년 청년정책 사업 수 및 예산: 청년정책 분야별

분야	사업 수(개)		청년예산(억원)			
	'23년	'24년	'23년	(비율, %)	'24년	(비율, %)
일자리	146	124	57,731	23.0	58,854	21.7
주거	30	28	104,201	41.0	115,911	42.9
교육	122	117	69,402	27.9	75,378	27.9
복지·문화	47	44	19,531	7.8	19,083	7.0
참여·권리	45	43	888	0.3	1,233	0.5
※ 기타 (非청년정책 등 제외)			2,425			
합계	390	356	254,178		270,459	100.0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3.29.a).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2024.3.29.).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을 기초로 연구진 재구성.

10) 본 절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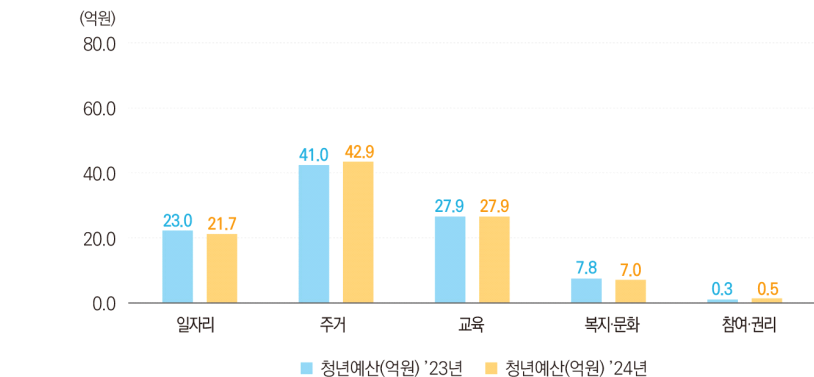


그림 Ⅲ-1. '23~'24년 청년정책 예산 비율: 청년정책 분야별

중앙행정기관별 청년정책 추진사업 수와 예산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Ⅲ-2. '24년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 증감 내역: 중앙행정기관별

기관명	청년과제 수(개)			청년예산(억원)		
	'23년	'24년	증△감	'23년	'24년	증△감
국토교통부	43	40	△3	103,236	115,118	11,882
교육부	44	39	△5	60,589	64,236	3,647
문화체육관광부	48	37	△11	3,025	1,629	△1,3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	34	△5	3,739	3,060	△679
고용노동부	39	32	△7	43,297	43,986	689
중소벤처기업부	29	28	△1	5,969	6,724	755
농림축산식품부	20	20	0	7,786	10,794	3,008
국무조정실	13	13	0	343	740	397
여성가족부	13	9	△4	276	372	96
보건복지부	9	9	0	2,519	3,015	496
금융위원회	7	7	0	7,430	3,832	△3,598
외교부	7	7	0	491	793	302
환경부	5	7	2	510	476	△34
산업통상자원부	6	6	0	1,933	2,241	308
산림청	6	6	0	18	70	52

기관명	청년과제 수(개)			청년예산(억원)		
	'23년	'24년	증△감	'23년	'24년	증△감
식품의약품안전처	6	6	0	75	102	27
해양수산부	6	5	△1	51	52	1
특허청	5	5	0	92	99	7
국방부	5	5	0	7,047	10,465	3,418
인사혁신처	4	5	1	0	2	2
국가보훈부	4	4	0	133	68	△65
농촌진흥청	6	4	△2	88	40	△48
행정안전부	4	4	0	2,078	830	△1,248
병무청	4	4	0	916	1,646	730
기획재정부	4	4	0	15	0	△15
문화재청	3	3	0	54	35	△19
국민권익위원회	2	2	0	2	2	0
통일부	2	2	0	5	7	2
재외동포청	-	2	2	-	7	7
법무부	-	2	2	-	1	1
방송통신위원회	2	1	△1	3	0	△3
방위사업청	1	1	0	27	16	△11
통계청	1	1	0		0	0
공정거래위원회	2	1	△	4	0	△4
조달청	1	1	0	2	0	△2
합계	390	365	△25	251,753	270,459	18,706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3.29.a).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2024.3.29.).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을 기초로 연구진 재구성.

올해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으로 주요 추진 부처의 사업 수는 작년 대비 감소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주요 추진 부처들의 예산은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추진과제가 10개 미만인 부처 중 국방부(3,418억원)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금융위원회(-3,598억원)와 행정안전부(-1,248억원)는 과제 수의 변화는 없는 것에 비해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사업, 청년 일터의 안전망 강화와

노동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 구직단념 사전 예방 및 직장 적응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저소득 무주택 독립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가부 등에서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대폭 인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립준비청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복지문화 분야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외에도 금융채무가 연체된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를 적용하는 등 청년 부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I-3. '24년 취약계층 청년 대상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	세부 분야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I. 일자리	1) 청년 취업역량 강화	②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시 인건비(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3) 9만명 → ('24) 12.5만명 ○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인원) ('23) 8천명 → ('24) 9천명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3) 최대 300만원 → ('24) 최대 350만원(취업인센티브 50만원 신설)	고용부
	4)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및 노동권익 보장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 중소IT벤처기업, 프랜차이즈 등 청년이 주로 취업하는 중소기업(30인 미만)을 대상으로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 활동 *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점검 ○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 청년층 다수 종사 기업(IT·제조업 등)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 공인노무사 무료상담·권리구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청년 보호 ○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사전 예방하고 직장 적응 지원 ▶ 직장 적응 및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4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장 이탈 및 실업 장기화 예방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청년) 대상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의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 연계	고용부

분야	세부 분야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II. 주거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① 청년층 공공분양 주택 공급 ('23년5.3만호)	○ 청년층 뉴:홈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23) 5.3만호 → ('24) 6.1만호 ▶ (나눔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 (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임대거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임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 / 2 ▶ (일반형) 추천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	국토부
		② 우수입지(수도권, 교통 등) 중심으로 공공임대 공급	○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역세권·도심 등 청년 선호 입지에 청년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24) 5.1만호 ▶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과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1.2만호) ▶ (매입임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4만호) ▶ (전세임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 입주자부담 100~200만원(1.05만호) ▶ (공공지원 민간임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 대상, 임대료 주변 시세 약 85% 주택 공급(0.9만호)	국토부
		③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카드·분할 납부 확대	○ 기숙사비 카드 결제 및 현금 분할납부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 신설('25-)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교육부
	2) 전월세 비용 경감	① 부모와 별도 거주 수급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23) 1.3만 가구 → ('24) 7천 가구 * 선정기준 확대(기준중위소득 '22)46 → ('23)47% → ('24)48% 이하) 및 기준임대료 최대 1.1~2.7% 인상 ** 1인 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 30% 이상은 자부담 있음	국토부

분야	세부 분야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②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연장('24~'26)해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 지원 ('23) 13.7만명 → ('24) 13만명 * 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이고,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기수혜자도 가능)	국토부
	3) 주거 취약청년 지원	①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을 지속 확대 (50개 이상 지자체)하고, 이사비 지원(40만원) ○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공급하고, 청년의 거주지역·취업 계획·소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상담 서비스 지원	국토부
		② 취약주거지 근본적 개선	○ 가구분할, 일명 '방쪼개기' 등의 불법 대수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신설,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도록 「건축법」 개정 추진	국토부
		③ 청년임차인 보호 강화	○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등 소규모 주택의 부당한 관리비 표시 및 허위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공인중개사 규정 준수 여부 단속·점검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신청·접수부터 결정·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다가구, 신탁사기, 근생빌라 임차인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제공 등	국토부
III. 교육	2) 고른 교육기회 보장	①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 대학생이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단가 대폭 인상 ▶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 추가 지원 ※ '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약 150만명까지 확대('24.3.5. 청년 민생토론회) ○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해 더 많은 대학생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근로단가 인상 * [지원 인원] 교외 6.5만명(전년대비 5천명 ↑), 교내 7.5만명(1.5만명 ↑) [근로 단가] 교외 12,220원(전년대비 1,070원 ↑), 교내 9,860원(240원 ↑) ※ '25년부터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를 약 20만 명까지 확대('24.3.5. 청년 민생토론회)	교육부

분야	세부 분야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②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	○ '24-1학기 1.7% 금리를 동결하고, 대출 상환 개시 기준소득 인상(154만원↑) 및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350→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청년 학업유지 지원 ○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과 면제 기간 확대 * (기존) 8구간 → (확대) 등록금 대출은 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교육부
		④ 취약청년 지원 강화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23 6만명→'24 8만명)해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교육기관 지속 발굴	교육부
			○ 자립준비청년에게 디지털 창업교육, 미디어 창작교육, 디지털기업 인턴십 등을 통해 디지털 분야 진로설계 신규 지원(75명)	과기부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로탐색, 자립 등 건강한 성장을 지속 지원	여가부
IV. 복지·문화	1)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① 자산형성 지원제도 간 연계 및 지원 확대	○ 청년도약계좌 가입·중도해지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희망적금만기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 월 납입한도: 40~70만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 ▶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로·사업소득 월 23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 가입자 수 : ('22) 4.2만명 → ('23) 9만명 → ('24 목표) 12만명	금융위, 복지부
		② 청년 부채부담 경감	○ 저소득 청년·대학생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최대 1,200만원까지 저금리(3.6~4.5%) 로 대출 공급하는 햇살론유스 지속 지원 * (사업대상) 만 19~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금융위

분야	세부 분야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2)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금융채무를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 신청비용 면제 ○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교육부터 재무상담·관리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소관부처
		①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시 겪는 경제 부담 완화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 인상('23 40만원 → '24 50만원) 및 지급대상 확대*복지부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받은 청년 → 18세 이전 타법상 보호시설 입소 등으로 조기 보호종료된 아동까지 지원('24.2월~) ○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복지부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23) 180명 → ('24) 230명 -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23) 2,000명 → ('24) 2,750명	복지부
		②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체계 구축	○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전담기관 지정, 인력채용 및 자기돌봄비(연 200만원) 지급 등 발굴·지원체계 구축 추진 * 돌봄이 필요한 가족(중대수술, 노령, 장애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으로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의 일상회복·사회 재진입 지원 시범사업('24~'25 시범, 이후 본 사업 추진 검토)을 실시하고,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 온라인 등 원스톱 접수창구 개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등	복지부
		③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 연장(3년 → 5년),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여가부

분야	세부 분야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 경제·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및 지원 기준을 상향(기준중위소득 '23 60% → '24 63%)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 * 만 25~34세 이하, 월 5~10만원 지급, ** '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청년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온가족보듬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확대* * 전국 가족센터(244개소) 중 일부 센터에서 추진('23 36개소)해 왔으나, 180개소로 확대('24)	
		④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장애대학(원)생 대상의 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물적자원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활동 지원 활성화	교육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교육으로 예술활동 참여 및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예술인(단체)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문체부
	3) 청년 건강 증진	②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가족돌봄, 자립준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을 확대('25~)하기 위한 방안 검토 ※ '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4.3.29.)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중 일부를 연구진이 발췌, 정리함.

이 외에도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지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는 등 그간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취약청년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청년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상향하였으며, 청년 1인가구의 고립방지를 위한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교육부는 청년 장애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적지원 및 보조기기 물적지원 등을 통해 고등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등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정책 추진사업(총 356개) 중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4개 분야 30개 사업(8.4%)이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 청년 대상 사업이며, 일부 사업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북한이탈청년 및 이주배경청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취약청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년, 고립·은둔청년, 청년한부모 등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취약계층 청년 대상 사업에는 총 110,964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41.0%에 해당한다.

일자리 분야의 취약계층 청년 대상 사업은 탈북청년과 저소득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총 3개 사업에 5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서로 다른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들 사업은 전체 일자리 사업 분야 과제 124개 중 2.4%에 해당하며, 예산은 전체 일자리 분야 예산의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분야의 사업은 모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 분야 전체 사업 수 중 35.7%에 해당하는 10개 사업에 총 106,148억원(주거 분야 예산의 91.6%)이 투입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과제에서 저소득 청년들 혹은 취약계층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과제의 경우 일반 무주택 청년들

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예산이 모두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지원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제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표 III-4. '24년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 수 및 예산

(단위: 개, 억원, %)

분야	과제 수(개)			예산(억원)		
	청년정책 과제 수 전체	취약계층 청년 과제 수	비율(%)	청년정책 과제 예산	취약계층 청년 과제 예산	비율(%)
일자리	124	3	2.4	58,854	507	0.9
주거	28	10	35.7	115,911	106,148	91.6
교육	117	4	3.4	75,378	602	0.8
복지·문화	44	13	29.5	19,083	3,707	19.4
참여·권리	43	0	0.0	1,233	0	0.0
합계	356	30	8.4	270,459	110,964	41.0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4.3.29.).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을 기초로 연구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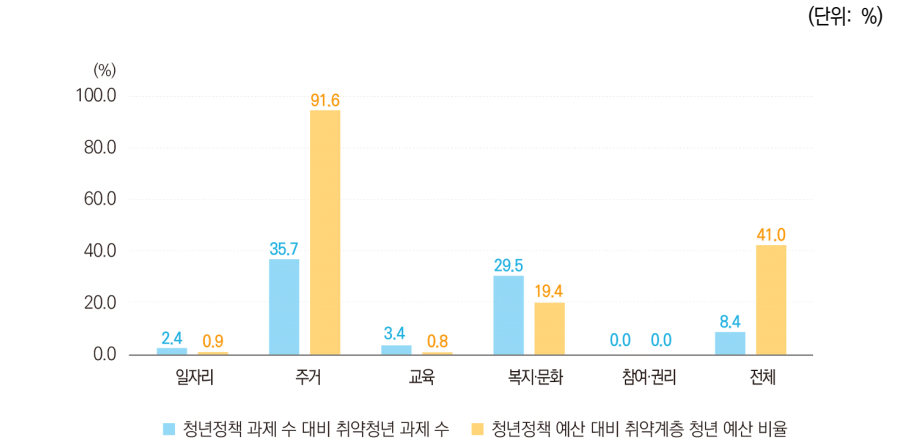


그림 III-2. '24년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 수 및 예산 비율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602억원(교육 분야 예산의 0.8%)을 투입하여 4개 사업(교육 분야 과제 수 대비 3.4%)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고생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의 진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교육에 대한 지원 중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저소득층 및 등록장애인 전반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꿈사다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일부 학생에게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자립준비청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일부 취약계층 유형 청년에게 디지털 진로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교육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4,178억원(복지·문화 분야 예산의 21.9%)의 예산을 투입한 총 13개 과제(복지문화 분야 과제 수 대비 29.5%)가 추진되고 있다. 복지·문화 분야의 사업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및 ‘청년·대학생 햇살론’, ‘빈곤청년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 확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청년한부모, 장애청년, 이주배경청년 등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위기청년 자립지원’, ‘청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관 부처가 지자체로 국고를 지원하거나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상이한 정책 전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이주배경청년 지원사업’ 등은 각 유형별 취약청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 취약계층 유형별 소관부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전담지원센터)도 상이하여 취약유형이 중복되는 청년들의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전담지원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및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은 대학(원)생으로 대상이 국한되어 있거나, 교육인력 및 보조기기 지원, 문화예술학교 운영 등 그 내용이 일부 생활영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사업은 장애인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에 따라 사업이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으로 전달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로 전달되는 등 전달체계가 분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참여·권리 분야 사업 예산은 청년정책 예산의 0.5%에 불과한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청년의 참여·권리 분야 사업 내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분리하지 않고 포괄하여 전체 청년 내에서의 참여·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취약계층 청년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취약계층 청년들이 사회참여 및 권리 옹호 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비율을 할당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II-5.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

분야	과제명	소관부처	대상	전달체계	예산(백만원)	내용
일자리	탈북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무관, 탈북청년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사업 수행)	35,738	탈북 청년 취·창업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설·운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기부	저소득(연봉 3,600만원 이하), 취업청년	중기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3,958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3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18백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일방적 채용 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고용부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청년	고용부→청년상담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1,050	법률 상담,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
	소계			3개 과제	50,746	
주거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통합공공임대)	국토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공급), 중위소득 100%이하(특별공급)	국토부→공공주택사업자	2,617,429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소득에 연계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청년특화주택 공급	국토부	중위소득 150% (1인 기준 170%, 2인 기준 160%) 이하	국토부→공공주택사업자	별도 예산 없음 (통합공공 임대주택 예산에 포함)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공간·공용시설·서비스 등을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추진
	청년 대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국토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19~39세)	국토부→민간사업자 (주택 공급·운영)	1,777,009	18~'25년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27.8만호(부지확보기준, 연평균 4만호) 중, 청년층(19~39세) 대상 총 10만호 공급
	청년 대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 (매입임대) (일부)	국토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청년	국토부→NH	2,162,000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임대

분야	과제명	소관부처	대상	전달체계	예산(백만원)	내용
	청년 대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 (일부)	국토부	저소득 청년(수급, 차상위, 한부모, 자립 준비청년, 청소년복지 시설 퇴소),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토부→LH	1,155,106	저렴하고 빠르게 도심에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부	임차급여 또는 수선 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	국토부→지자체 (읍·면·동에서 신청→ 시·군·구에서 자격 검증)	2,726,586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7% 이하)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분리하여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국토부→지자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지원금 지급 등)	170,677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토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기준), 연령 무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본인신청 또는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LH) 등이 발굴한 자원대상자 추천 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예산	고시원·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 이하 주택 임대주택 공급
	고시원 등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국토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기준), 연령무관	국토부→시·도 →시·군·구	6,000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 이주 시 이사·생필품(40만원 실비) 지원

분야	과제명	소관부처	대상	전달체계	예산(백만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국토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	국토부→공공주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예산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2,000호 우선 공급('24년),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 20세 이하 → 22세 이하 확대
	소계		10개 과제		10,614,807	
교육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교육부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및 등록장애인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지방자치단체	26,219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연간 35만원, 우수이용자의 경우 최대 70만원)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한국 장학재단	저소득층 중·고생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국장학재단	32,413	저소득층 중·고생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 교육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지원 강화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9~24세)	여가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600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기반 발굴 중심 스마트 꿈드림센터 운영 및 서비스 중심 플랫폼 구축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과기정통부	자립준비청년 (19~34세) 및 보호대상아동 (13~18세)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출연)→창·보육 전문기관 및 협·단체 등 (수행기관, 공모)	1,040	디지털 분야 창업 교육, 미디어 창작 교육, 디지털 기업 인턴십 등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디지털 분야 진로 지원
	소계		4개 과제		60,272	

분야	과제명	소관부처	대상	전달체계	예산(백만원)	내용
복지·문화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복지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부→지방자치단체	229,517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지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금융위	저소득 청년(연소득 35백만원 이하)	금융위(보증재원 출연)→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 지원)→시중은행(신용보증 담보로 대출공급)	15,000	저소득 대학생·미취업청년 등 청년층의 자금으로 완화를 위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햇살론유스 출시('20.1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소득 무관	복지부→지자체	60,228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소득 무관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시·도(사업운영관리, 사업수행기관 선정 지원 등)→사업수행기관(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제공 등)	22,701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및 생활, 주거, 취업, 교육, 건강 등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체계 마련	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소득 무관	복지부→지자체(전담지원센터 운영·관리)	3,222	전담기관·인력 구축, 원스톱 서비스 제공('24년 4개 시·도 공모·선정)
	고립·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고립·은둔청년 지원)	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소득 무관	복지부→지자체	1,784	각계 의견수렴,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24년 4개 시·도공모·선정)
	위기청년 자립지원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여가부	쉼터퇴소 청년, 소득 무관	자치단체보조	1,280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 대해 최장 5년간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여가부	자립 및 취업을	여가부→시·도 지자체	2,774	자립 및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의

분야	과제명	소관부처	대상	전달체계	예산(백만원)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	→시·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진로를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및 직장체험,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훈련과정과 일경험 기회 제공
	청년한부모 자립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여가부	저소득, 청년한부모 (25~34세)	여가부→시·도 → 시·군·구	25,728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월 5~10만원)
	이주배경청년 지원	여가부	이주배경청년 (9~24세), 소득 무관	여가부→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재워탁기관	4,308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한국어교육 등 초기적응 지원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인식개선사업, 지역자원연계사업 등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교육부	장애학생, 소득 무관	교육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각 대학	3,417	장애대학(원)생 대상, 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 지원 등을 통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문체부	발달장애인, 소득 무관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시·군·구 협회	726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학교 운영 (악기, 미술, 연극, 공예 등)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수급자	복지부→지자체	비예산	기초생활보장 수급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근로, 사업소득 공제, 등록금 공제, 가족돌봄청년 공제) 제공
			소계	13개 과제	370,685	
			합계	총 30개 과제	11,096,510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3.29.)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중 일부를 연구진이 발췌, 정리함.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을 취약계층 청년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사업은 총 30개 사업 중 16개로 전체 취약계층 청년 사업의 5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시설퇴소청년(아동양육시설 및 청소년쉼터 퇴소), 이주배경청년(탈북청년), 장애청년 사업이 각각 2개(6.7%)였고, 학교 밖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청년한부모 대상 사업은 각각 1개(3.3%)로 나타났다.

표 III-6.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 수: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단위: 개, %)

유형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합계 (비율)
저소득청년	2	9	2	3	0	16 (53.3)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및 시설퇴소청년(청소년쉼터)		1	1	3	0	5 (16.7)
학교 밖 청년			1	1	0	2 (6.7)
가족돌봄청년				1	0	1 (3.3)
고립·은둔청년				1	0	1 (3.3)
청년한부모				1	0	1 (3.3)
이주배경청년(다문화, 탈북 등)	1			1	0	2 (6.7)
장애청년(발달장애 포함)				2	0	2 (6.7)
합계	3	10	4	13	0	28 (100)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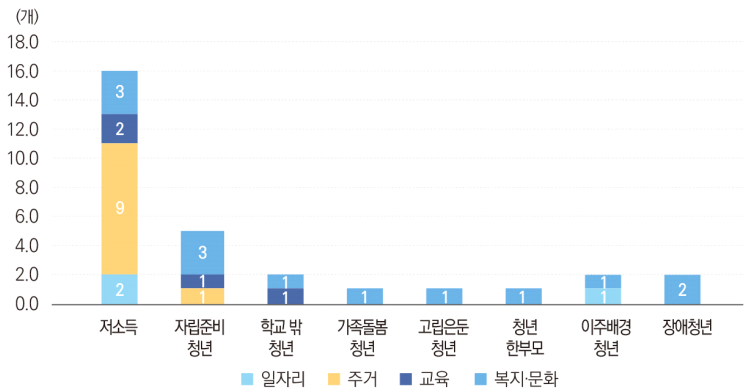


그림 III-3. 청년정책 분야별 취약계층 청년 사업 수: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로 구분된 사업 중 일자리 분야의 사업은 탈북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이 유일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주거, 교육, 복지·문화 분야에 다양하게 걸쳐 있으나, 교육 지원은 디지털 진로지원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복지·문화 분야의 지원은 자립지원수당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가 제공되고 있으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학교 밖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온라인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자립·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및 일경험 제공 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청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추가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대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일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대상으로는 전담인력 구축 및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애청년의 경우는 대학(원)생 대상 교육지원인력 및 보조기기 지원, 문화예술학교 운영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에 일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주로 교육 사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청년기본법」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취약계층으로 규정되어 오던 저소득층 및 장애청년 외에도 최근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유형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고 취약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더 많은 취약계층 청년을 포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비수급 빈곤청년, 자립준비가 필요한 다양한 시설 퇴소 청년, 미취업 비구직청년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정책 대상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취약청년들이 발견됨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들이 지니는 정책적 요구는 보다 다분화될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 부처별·기관별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내에서는 취약계층 유형이 다분화될수록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년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더 분절적으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분절적인 지원체계에 따라 제공되는 분절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 청년들은 서로 다른 전달체계에 속한 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중복 수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아가 새로운 취약계층 유형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들이 지니는 다중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약유형에 따른 정책지원은 각 취약계층유형 청년들의 욕구를 포괄하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하고 중복적인 취약청년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약청년 유형별 지원보다 취약청년의 다양한 욕구별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지원하는 단일 창구가 되는 통합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접근이 용이한 통합적인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 당사자가 정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각 전달체계를 통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지원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대상의 다양한 욕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전달체계 현황: 복지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¹¹⁾

현행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청년 지원사업은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또한 늘어났다. 여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청년 복지사업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운영하며 복지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정부 지원사업을 검색하였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포털(2030.go.kr)”이 있지만, 청년정책 일반을 포괄하고 있어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취약청년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체계를 확인해 보았다. 2024년 5월 기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청년 지원사업은 23개이다. 이 23개의 중앙행정기관 소관 청년 복지사업을 주요 부처별로 사업명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과 소관부처 및 담당과, 그리고 전달체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1) 본 절은 김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우선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 복지사업은 5개로 확인된다. 우선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소관하는 사업은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서비스가 있다. 각각은 지원 대상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등록된 심리상담전문기관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일상돌봄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활정책과에서는 청년 본인과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저축액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권리과에서 주관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과 지역복지과에서 위기가구를 통합 지원하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각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2024년 7월부터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의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4.4.16.).

표 Ⅲ-7. 보건복지부의 청년 복지사업

(2024.5. 기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담당과	전달체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19~34세 청년	전문심리상담 등 10회 (전자바우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등록된 심리상담전문기관
일상돌봄서비스	가족을 돌보는 13~39세 청(소)년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내일 저축계좌	19~34세 청년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정책 납입액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 장액 매칭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매월 5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주민센터 신청
희망복지지원단 통 합사례 관리사업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으로서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등은 위기가구로 발굴	맞춤형 서비스(안전, 건강, 일상생활, 돌봄, 기초생활, 취창업 및 고용, 주거환경 개선, 권익 보장 등)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주민센터 신청

*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2024년 5월 2일 검색한 중앙부처복지사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국토교통부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주거복지지원과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인 자녀에 대해 분리 지급하는 주거급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소관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반면, 전세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 개별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주택기금과에서는 부부합산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을 우대하여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소관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공공주택정책과에서는 청년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사업을 소관하고 있다. 각각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집단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주택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광역교통경제과에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소관하고 있는데,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Ⅲ-8. 국토교통부의 청년 복지사업

(2024.5. 기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담당과	전달체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본인 및 원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로, 19~29세 미혼자녀 및 청년 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기준임대료 이하 월 임차료 및 주택수리를 지원하며, 청년을 대상 으로는 자기부담분 적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청년)	미혼 19~39세 청년으로서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이고 복지수급을 받거나 소득 기준을 충족	공공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신청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공공사업자가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부부합산 자산 기준을 충족 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우대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최대 960만원 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또는 취급 은행 방문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담당과	전달체계
행복주택(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소득재 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신청
통합공공임대 (청년)	18~39세 미혼 청년으로서 중위소득 150%인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고에 따라 신청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19세 이상 국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정 비율 환급(19~34 세 청년은 30%)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온라인 홈페이지 (korea-pass.kr) 에서 K-패스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

* 출처: 복지포털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2024년 5월 2일 검색한 중앙부처복지사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교육부에서도 2개의 청년 대상 복지사업을 소관하고 있다. 청년장학지원과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각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표 III-9. 교육부의 청년 복지사업

(2024.5. 기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담당과	전달체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 중 학자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국내 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별 등 록금 차등지원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출처: 복지포털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2024년 5월 2일 검색한 중앙부처복지사업 중 교육부 소관 사업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금융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청년 대상 복지사업은 3개로 확인된다. 청년정책과에서 개인 소득, 금융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소관하고 있다. 청년이 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 모바일 어플로 비대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과에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일반생활자금이나 특정용도자금을 보증해주는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과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소관하고 있다.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어플로 보증신청 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개인채무조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표 Ⅲ-10. 금융위원회의 청년 복지사업

(2024.5. 기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담당과	전달체계
청년도약계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 금융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금의 최대 6% 지원 및 이자 소득에 비과세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모바일 어플로 비대면 가입 신청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 youth 보증사업)	19~34세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일반생활자금(1회 300 만원 연간 600만원) 및 특정용도자금(주거비, 의료비, 학업취업비 1회 및 연간 900만원) 보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 어플로 보증신청 후 은행에 대출 신청
개인채무조정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2024년 5월 2일 검색한 중앙부처복지사업 중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다음 <표 Ⅲ-11>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개의 복지사업이 검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는 청년을 포함해 15세 이상 구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관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그 밖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검색

되지 않지만 청년취업지원과에서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성장프로젝트를 올해 시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37호, 2023.12.2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호, 2024.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는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는 청년을 포함해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 참여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소관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접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혹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 등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소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는 청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지원사업을 소관하고 있다. 이는 통일부 산하기관인 하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 III-11.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복지사업(2024.5. 기준)

(2024.5. 기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담당과	전달체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15세 이상 구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급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기획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만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장학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사회서비스과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공공산림가꾸기(청년)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주요사업 참여 시 인건비 지급	산림청 산림자원과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접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며, 청소년한부모는 자립촉진수당 및 학습지원 추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담당과	전달체계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취업역량 강화, 예비사회적기업,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통일부 정책지원과	하나센터

* 출처: 복지포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2024년 5월 2일 검색한 중앙부처복지사업 중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외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업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 홈페이지 외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플랫폼인 청년포털(2030.go.kr)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취업, 창업, 교육, 주거, 경제 및 금융, 생활, 문화 및 예술, 신체건강, 마음건강, 참여 및 권리 분야에 따라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정책 플랫폼과의 연계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취약청년 지원사업은 청년의 다차원적 취약성을 아우르며 개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다. 또한 개별 부처에서도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련 사업을 소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약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현안에 부합하는 청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하나센터나 농어촌희망재단 등 중앙행정기관과 연계된 공공기관에서도 신청 접수 및 사업 수행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년지원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제3섹터, 그리고 사회공헌 등의 목적으로 기업 등에서도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 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소관부처와 담당과가 지정되어 특화된 사업명을 가진 개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에 따른 오프라인 전달체계가 분절적이고, 지원사업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온라인 경로도 '복지포'와 '청년포털'로 이원화되어 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 지원사업에 접근하기에 경로가 혼잡한 현 실태는 청년이라는 생애주기와 취약성이라는 사회경제적 상태가 교차하는 취약청년 지원정책, 즉 '청년복지'의 정체성을 정립할 이유일 수 있다.

3. 취약청년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¹²⁾

청년의 다차원적인 취약성을 인적 속성과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보았을 때, 청년의 취약성은 중첩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된 상황에서 취약청년 또한 독립된 성인으로의 삶으로 안전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을 재분배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복지 체계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사례의 청년은 청소년기에 입국한 사례로 전통적인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하지만 청년 친화적 공간에 방문하면서 비로소 종합상담을 받고 주거, 직업교육, 금융컨설팅 등 지역 내 소재한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 지원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첫째, 청년 친화적 공간인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둘째,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당사자의 중첩된 취약성을 다룰 수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12. 취약청년의 복합적 욕구 대응 사례

외국에서 자라다 청소년기에 국내에 입국한 20대 A씨(중도입국청년)는 청년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A씨는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 ▲서울청년센터를 알게 되었고, 서울청년센터의 청년지원매니저를 통해 종합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요청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상담,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직업교육 연계, ▲서울시 영테크 서비스를 통한 금융컨설팅 등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아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3.7.6.). 서울시, '청년정책 Connecting the dots'...전문기관 손잡고 전국 최초 「청년 사회안전망」구축.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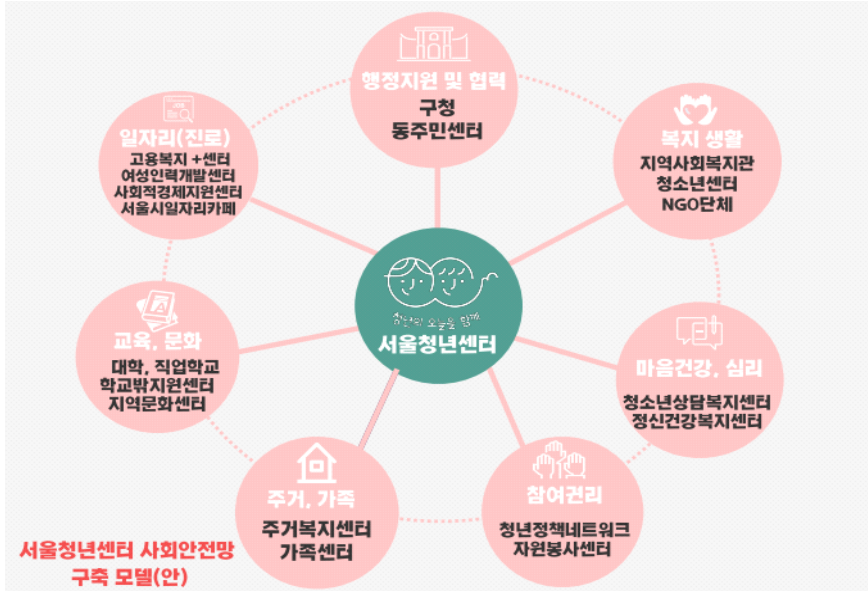
특정 취약성에 대한 지원 영역은 고유한 전문성을 가지고 설계될 수밖에 없다. 지원기관과 실무자의 전문성은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민소영, 2022, 이수진, 허용훈, 2022, 황미경, 2023). 그렇지만 취약성을 가진 청년이 다차원적이고 중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한 기관에서 다차원적인 취약성에 대응해야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이에 지원기관을 총괄하는 총체적 전달체계는 공공과 민간에 의해,

12) 본 절은 김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그리고 세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개별 기관은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신보건전달체계에서도 치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치료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공공 정신의료기관과 단기 입원 및 지역정신보건으로의 전환을 다루는 민간 정신의료기관, 장기거주와 노인요양의 기능이 분화되는 정신요양시설, 독립주거를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 지역 내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전달체계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김문근, 하경희, 2016).

또 다른 사례로, 황미경(2023)은 재난 상황에 처한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간 협력체계 형태의 재난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강조하였다. 민소영(2022)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 사례에 대응하여 전달체계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청년에 주목한 변금선, 이영주, 김기현, 장익현(2022)은 서울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대상자 포괄성, 접근성, 연결성, 책임성의 문제에 직면해 전문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도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로서 서울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다기관을 연결하는 청년 사회안전망을 제안하였다. 이때 다기관에 의한 청년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과 프로그램 참여, 환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III-4]는 서울의 광역 단위 청년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 서울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청년센터가 협력하며 일자리와 진로, 교육과 문화, 주거와 가족, 참여와 권리, 마음건강과 심리, 복지의 개별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함께 행정기관과의 연결을 도식화한 것이다.



*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3.7.6.). 서울시, 「청년정책 Connecting the dots*」…전문기관 손잡고 전국 최초「청년 사회안전망」구축, 서울특별시.

그림 III-4. 서울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모델(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단위 종합 사회안전망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보다 생생하게 실현될 수 있다. [그림 III-5]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서울청년센터 관악에서 취약청년들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청년 지원기관 협의체, 즉 지역사회 청년 사회안전망이다. 당초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복합적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기관의 도움을 구할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년으로서 청년 친화적 공간에 방문한 취약청년들이 발견됨에 따라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최근에는 고립·은둔청년에 특화된 지원기관 간 협의체가 발족되었다. 이 협의체에는 관악구청 청년정책과와 관악경찰서,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 기관, 관악청년청, 관악정다운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약사 비영리 단체가 관악구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청년 친화적 공간인 서울청년센터 관악을 매개로 참여하고 있다(관악뉴스, 2024.7.8.).



* 출처: 정성광 (2023). 지역 청년 전담 지원 기관 서울청년센터 관악 사례 발표, 서울청년사회안전망 사례공유회 발표자료. p.41

그림 Ⅲ-5. 서울 관악구 청년 사회안전망

소결하면, 현세대 청년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이고도 다중적인 취약성의 정책 수요와 개별 정책 분야와 지원기관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하는 정책 공급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결국 취약청년의 복합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이들이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지원체계 구축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돕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에 대응하는 문제해결적 통합지원을 위한 청년 복지 체계 구현이 필요하다.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지원,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사례관리는 이미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일부 작동하고 있다. 2006년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공 영역에서 사례관리가 시작되었고, 2009년에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이전되었다(민소영, 2021:45). 이러한 변화는 ‘복합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여 집중적인 보호 수행 체계를 마련’(이현주, 유진영, 2015; 민소영, 2021:45-46에서 재인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행정적 기반을 두고, 2012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축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에 의한 통합 사례관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대상자 구분 기준의 모호성, 연계 서비스 목록 공유의 제한성, 사례 의뢰 절차 및 정보시스템의 비체계성, 전문인력과 기초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간 역할 분담 등의 과제가 잔존하였다(민소영, 2021:71-76).

그간 확인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에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의해 현재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돌봄 사업을 통합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4.4.16.). 통합 사례관리와 연동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일상생활돌봄과 주거 및 그 밖에 필요한 돌봄을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법 제2조 제2항)”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법 제1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참고해볼 수 있다.

둘째, 청년의 물리적, 심리적, 인지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청년 친화성이 요구된다. 청년복지 체계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공식적 통합 지원체제로 청년의 진입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기존의 지원체계에 청년이 접근하기에 다각적인 한계가 있다. 김성아 외(2021:296-297)는 복지 지원체계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물리적 차원, 심리적 차원, 인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물리적 접근성은 복지 지원체계의 지리적 인접성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기에 자차 이용 가능성이나 교통비 부담 등으로 인해 물리적 이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용이성을 확보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지원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중첩된 개별 취약성에 대응한 지원기관이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것 또한 물리적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다. 심리적 접근성은 청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취약성을 노출하는 심리적 비용에 관한 것인 만큼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접근성은 청년이 자신의 취약한 상태를 인지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 등으로 청년이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전담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적절한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에 대응한 종합적 청년복지 체계에 또래와 섞여 청년으로 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청년 친화성’을 탑재하는 것은 취약성을 노출하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취약성을 공급자의 언어로 진단하지 못하더라도 청년의 정체성만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접근성 제약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청년복지 체계에서 취약청년 당사자의 다중적인 어려움을 정책 언어로 해석하고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결과적으로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중첩된 취약성과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복지 전문성이 필요하다. 청년복지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청년 친화적 지원체계에서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청년의 취약성을 해독하고 가용 자원 범위에서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며, 청년이 취약성을 완화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동행하는 사례관리 역량이다. 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욕구를 발견하고, 해체한 욕구에 대응해 필요한 자원 목록과 연계하는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일련의 지원을 실행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 지원을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능력(권진숙, 2010)이자 욕구를 가진 사람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에서 실천 모델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성이다. 청년 지원체계와 복지 지원체계 간 교차로에서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다양한 이름의 취약청년들이 발견되면서 당사자의 접근성을 유인하는 청년 친화성과 함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복지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구축 현안¹³⁾

복합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취약청년이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현안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관리 및 수행 주체 체계화

중앙행정기관 및 부처 내 부서, 지자체 및 민간 등 취약청년 지원사업 관리 및 수행 주체 다양화로 인한 정책 체계화가 필요하다.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현행 ‘청년’을 대상으

13) 본 절은 김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로 하는 복지사업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는 부처와 관련 과에서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한 다양하다. 전통적인 복지 지원이나 금융 등 전문성을 가진 부처나 관련 과에서 사업을 관리 및 수행하는 방식은 지원 내용의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통합적 지원의 관점에서는 연령이나 취약청년 유형 등 지원 대상으로서 청년의 범위나 신청 장소 및 방법 등이 다양해지는 문제로 인해 취약청년의 인지적, 물리적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취약청년의 문제해결적 통합지원의 관점에서 청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관리 및 수행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요구된다.

2) 다주체 지원사업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 민간기관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연계, 특히 다양한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취약청년 지원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체계를 종합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청년정책의 법적 근간이 되는 「청년기본법」이 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2023년 법률 제3조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신설되었다. 미취업자 청년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외에 2023년 3월과 2024년 5월 각각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법안」이, 2023년 5월에는 「청년자립 지원법안」이 각각 발의되었다.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데에는 개별 법률이 각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다차원적인 취약성이 중첩되는 청년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면 청년을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묶어내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청년자립 지원법안」이 고립청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취약청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종합적인 청년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본회의 심의에 의결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다.¹⁴⁾ 하지만 여전히 청년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청년 친화성과 복지 전문성을 담보하는 청년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은 유효하다.

14)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제21대 국회 입법 현황을 2024년 7월 30일 검색한 결과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scBINm=scBINm_bINm&scBINmSct=%EC%B2%AD%EB%85%84&sugCd=21)

3) 다주체 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도입

생애주기 관점에서 취약청년을 위한 다(多)주체 지원사업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청년기가 아동·청소년기에 이어 중장년기와 노년기를 잇는 생애주기 전반의 흐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복지 체계 또한 생애주기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현행 생애주기별 복지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근거를 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6조에 근거를 둔 미취업자의 통합인력전산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근거를 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그리고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근거를 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근거를 둔 교육정보시스템 등이 있다.¹⁵⁾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개별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미취업자의 통합인력전산망은 고용노동부에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육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하고 있지만 소관부처가 상이한 경우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다양한 부처에 의한 사업을 청년을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정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15)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에 의해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에 특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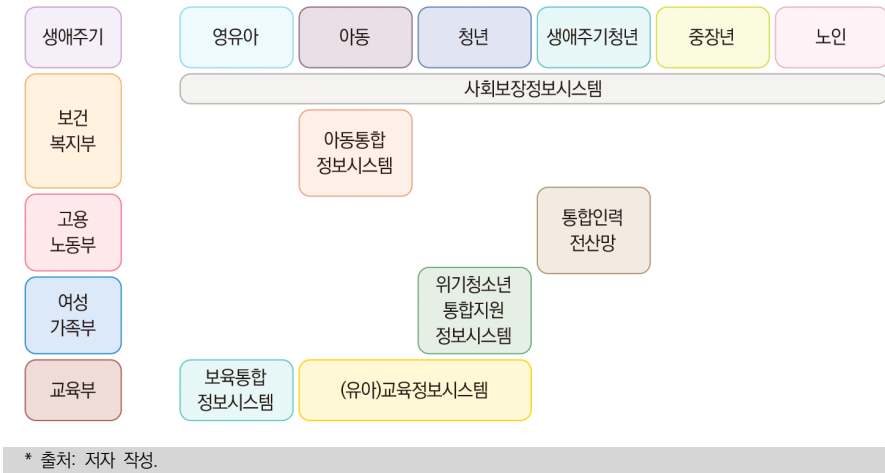


그림 III-6. 생애주기별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4) 청년 친화적 문제해결 통합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전달체계를 신규 설치할 때 기존 복지프로그램 및 지원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새로운 취약 집단으로 가족돌봄청년이나 고립·은둔 청년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지원기관으로서 ‘청년미래센터’가 개소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4.4.16.). ‘청년미래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원스톱 상담을 통해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로 한다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고유한 취약성을 경험하는 청년 유형이 등장하고 기존 전달체계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현하기 어려워 새로운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경우, 기존 복지체계와 융합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청년미래센터라는 독자적인 물리적 공간을 가지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야 할 수 있지만, 청년지원센터나 사회서비스원 등 청년 친화성과 복지 전문성을 동시에 가지는 기존 지원체계에 사업을 위탁하여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에서 복지 기능을 구현하는 기존 지원기관의 네트워크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5) 취약계층 청년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복지 전문성 제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지원인력의 자격 기준, 양성 및 보수교육, 급여수준 등 처우 기준, 경력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청년의 다차원적이고도 다중적인 취약성을 해독하고, 지역에서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 민간 기관의 자원 목록을 활용해 직접 지원뿐 아니라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당면한 취약성을 완화하고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 일련의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복지 전문성과 함께 청년 친화성이 필요함을 청년복지 체계 구축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 친화성과 복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년미래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새로운 취약 집단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 시작하면서,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의학신문, 2024.7.29.). 교육과정에서는 지원 대상이자 자기 삶의 주체인 청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고유한 취약성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전달체계로서 청년미래센터가 기존 복지체계에 융합되어 지역 기반의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청년 친화성과 복지 전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전문인력은 보수교육과 합리적 처우, 그리고 경력 관리 등을 통해 청년복지 분야의 숙련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취약계층 청년 지원 참여기관의 질 관리

정부-기업-지역사회-제3섹터가 융합하는 복지혼합(welfare mix)이 구현되는 정책 생태계를 위한 참여기관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김성아, 김지연 외, 2023). 복지혼합론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는 공공 부문에서 공식적이면서도 비영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사회는 민간 부문에서 비공식적이고 비영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은 민간에서 비공식적이고 영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각각의 기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공식성과 비영리성을 교차하는 국가, 지역사회, 시장을 잇는 제3섹터, 즉 시민사회의 역할이 조명된다. 복지혼합론에서 제3섹터라고 불리는 시민사회는 비영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복지수요를 발견, 옹호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김진욱, 2004),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복지 체계에서도 복지혼합론은 유용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역할이 명시되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책 생태계는 복지 지원체계에 머무르기보다 현재 취약성을 완화하여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기를 지원하는 청년복지의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기관이 중복·누락이 없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취약계층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제4장 취약청년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현안 진단

- 1. 아동·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조와 현안
- 2.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연계 사례
- 3. 취약청년 발굴·지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현안

이 장에서는 취약청년에 대한 다기관·협력적 개입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취약청년의 발굴과 지원은 아동·청소년기와 중장년기를 아우르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대상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은 현행과 같이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약청년 대상 복지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원의 편중과 누락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행 생애주기별 복지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2에 의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아동복지법」 제15조의2를 근거로 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한 미취업자의 통합인력전산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근거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를 근거로 하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개별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아동통합정보시스템 포함)은 보건복지부, 미취업자 통합인력전산망은 고용노동부,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은 여성가족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육부가 각각 관리한다. 이 가운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메뉴를 통칭하며,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의 사례관리를 위해 타 부처 자원과 지원 대상의 정보 연계가 가능한 행정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만 19세 이상 취약청년의 발굴과 지원 전반에서 이들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가능할 경우 생애주기 관점에서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 제24조 제5항을 근거로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16) 본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만 이는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주체에 의한 대상자 사례관리 플랫폼 기능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정보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현행 아동·청소년 정보시스템의 구조를 중심으로 현안을 확인하고, 향후 취약청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쟁점을 진단하였다.

1. 아동·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조와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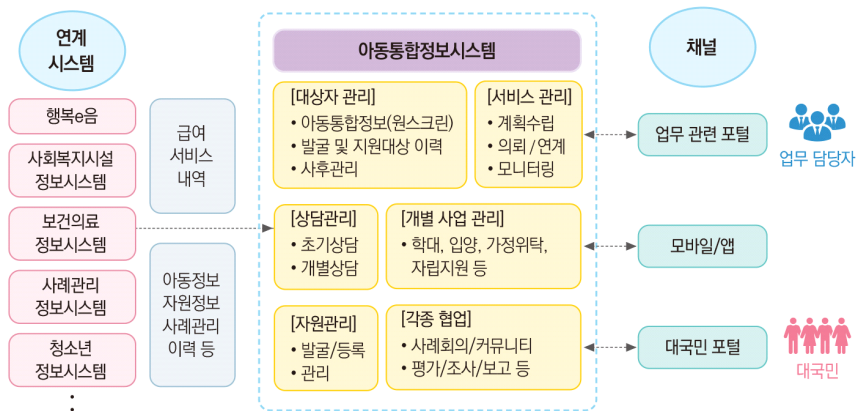
1)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와 현안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지자체), 범부처 시스템, 복지로)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바우처시스템)을 부분 연계하여 보호대상아동(아동학대, 시설보호, 가정위탁, 아동자립 등)에 대한 사례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망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그간의 1, 2차 개통을 통해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복지로(대국민 포털)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개통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를 근거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 관련 정보를 개별 아동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아동정보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2021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지자체가 담당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퇴소조치 및 사후관리 관련 정보,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보,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보, 자립지원 관련 정보,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의 범죄로 인한 시설 입·퇴소 관련 자료 및 정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입양아동 관련 정보,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 아동과 관련한 정보, 주민등록 자료 혹은 정보, 가족관계등록 자료 혹은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그간 개별 부처가 연계 없이 제각각 관리하던 약 20여

종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 이력을 관리하고,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그림 IV-1) 참조). 그러나 2023년 연말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와 시스템 개발 사업자 간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¹⁷⁾ 향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의 현안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2019).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V-1.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목표 개념도

먼저 아동보호 관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간 내부 칸막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자립, 아동학대, 실종아동,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 등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내 사업별 대상자 정보와 이력 간 연계 및 시스템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⁸⁾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 법정 사후관리를 시작할 때 전담기관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17)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 및 언론 기사를 참고할 수 있음.

18) 여기에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지원관리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드림스타트, 실종아동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포함함.

정보망을 통해 해당 아동의 시설보호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법정 사후관리 대상 가운데 위기 수준이 높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설보호 기간이나 보호 기간 중에 누적된 객관적인 정보보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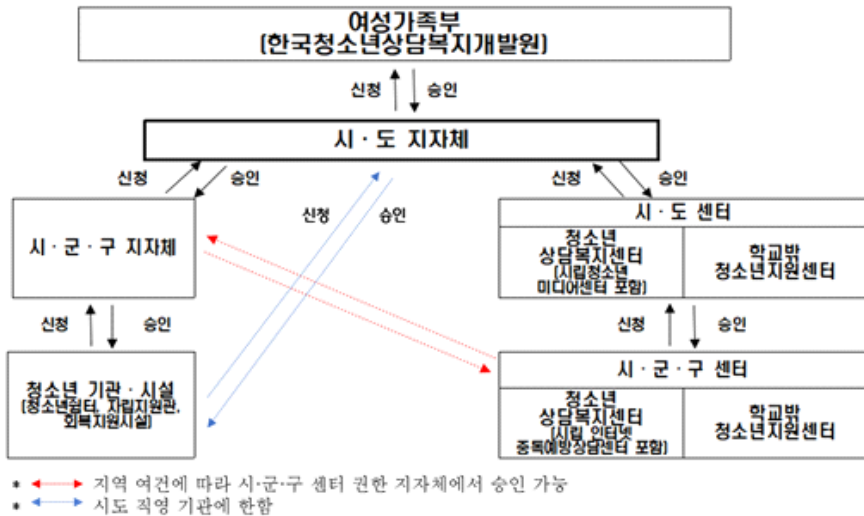
둘째, 대상자 중심의 사례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아동 관련 기관이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대상자에게 개별 기관이 제공한 지원 이력을 원스크린으로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과 편중, 누락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기관에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욕구, 위기도 조사에 반복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불편과 문제도 존재한다.

셋째, 아동복지정책의 조정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자료의 연계, 활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통계청이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있지만 보호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 취약계층아동, 원가정복귀아동 등 서비스별, 지역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의 구조와 현안

청소년안전망시스템¹⁹⁾은 다양한 경로로 발굴된 위기청소년의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망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제12조 제2항(위기 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근거로 한다. 시스템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주요 사용자는 지자체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내일이룸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10종의 청소년복지시설과 기관 종사자이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17개 광역시·도 내 총괄관리자가 하위기관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스템과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며, 상위기관은 하위기관에서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그림 IV-2] 참조).

19) 청소년안전망시스템 <https://gov.youthsafety.go.kr/>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4), 청소년안전망시스템 활용 교육자료(2024.1), p.5.

그림 IV-2.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접근 권한 신청·승인 구조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은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발굴,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사례관리 계획 수립, 사례관리 실행, 사례관리 종결 등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이에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담당자는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위기청소년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고, 청소년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의뢰된 사례뿐 아니라 복지부·병무청·경찰청(경찰서) 등 타 부처에서 의뢰된 사례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사례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는 발굴관리 및 사례관리 하위 메뉴 단위에서 필수 활용 항목과 선택 활용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그림 IV-3) 참조).

필수 활용 항목 가운데 ‘연계 의뢰’는 해당 서비스를 등록한 기관이나 해당 청소년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대상자를 바로 연계하는 기능이다. 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복지시설과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간에 직접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민간복지시설인 경우 해당 자원을 등록한 지자체로 대상자가 연계된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은 행정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의뢰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청소년안전망시스템으로 대상자의 의뢰가 가능한 구조이나, 소관부처가 상이한 별개의 정보망이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는 두 개의 시스템에 각각 등록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발굴	⇒	사례관리 단계				
		1	2	3	4	5
		등록	계획	실행	종결	사후관리

발굴관리 하위 메뉴	주요 내용	지자체 공무원 활용 여부
발굴목록	발굴된 청소년 목록 조회 및 발굴 대상자 등록	필수
발굴상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사례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	선택
긴급구조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사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선택
연계접수 목록	여성가족부 소관 기관에서 의뢰된 사례 접수	필수
타 기관 연계 접수	타 부처(복지부, 병무청)에서 의뢰된 사례 접수 * 지자체의 경우 교육부 사례는 접수 불가	필수

사례관리 하위 메뉴	주요 내용	지자체 공무원 활용 여부
사례등록관리	사례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등록-계획-실행-종결-사후관리' 단계별 지원서비스 입력	선택
사례계획 일괄등록	여러 대상자에게 사례등록관리 중 '계획' 단계 일괄 등록	선택
집단사례회의 등록	여러 대상자에게 사례등록관리 중 '사례회의' 결과 일괄 등록	선택
집단서비스 등록	여러 대상자에게 사례등록관리 중 '실행' 단계 일괄 등록	선택
연계의뢰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사용기관으로 대상자 의뢰	필수
연계의뢰(복지부)	복지부로 대상자 의뢰	필수
사례담당자 일괄 변경	사례등록관리에 등록된 사례에 대한 담당자의 일괄 추가, 삭제 기능	선택

* 출처: 여성가족부 (2024).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II), pp.121~122의 내용을 보완함.

그림 IV-3.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발굴 및 사례관리 기능과 메뉴

둘째,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은 위기청소년의 사례관리를 위한 행정망이며 시스템 관리 주체가 '지자체'이다. 그러나 지자체 내 어떤 부서의 누가 책임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즉, 광역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시스템 사용자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나, 모든 시·군·구 본청 단위에 (가칭)청소년안전망팀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 등록된 위기청소년에게 주 사례관리자를 배정하거나 관내 자원의 등록 및 취소 등 업무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여부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셋째,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률상 24세를 초과한 대상자(청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내 사례관리 대상 청소년이 25세에 달하거나, 아웃리치 과정에서 긴급지원을 요하는 25세 이상 취약청년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통해 지원할 수 없고 다른 지원 체계로 연계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종료된다. 문제는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취약청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 사례를 이관받을 수 있는 기관과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시·군·구 단위의 통합사례관리 업무 절차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로 청소년안전망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25세에 달한 청년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일괄 연계하고, 위기 여부와 수준에 대한 재사정을 통해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안전망시스템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두 개 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서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민간 복지시설 및 기관으로 연계할 경우 해당 자원을 등록한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로 연계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민간 시설 및 기관으로 다시 연계하는 절차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 시간 지체나 연계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선도 대상 청소년), 병무청(사회복무요원)과 같은 타 부처도 담당 공무원이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위기청소년을 등록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대상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을 제외하면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위기학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관련 업무 정의와 기능이 모호하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 법무부 산하기관 시설과 기관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에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등 협력 부처를 확대하고, 취약청년의 발굴과 연속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연계 사례

여기에서는 신규 제도의 추진을 위해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보시스템 구축 없이 정보의 연계만으로 공적 보호체계를 강화한 사례의 일환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취약청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연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정보 연계를 통한 행정지원 사례 : 출산통보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상황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유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아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 바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의미한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의 기본체계는 아래 그림을 참고할 수 있다(그림 IV-4) 참조).

여기에서 출산통보제의 경우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정보 연계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지원을 강화한 사례에 해당한다. 즉, 의료기관에서 출생아의 정보를 생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통보해야 하는데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개별 병원에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되도록 보건복지부와 법원 간의 정보를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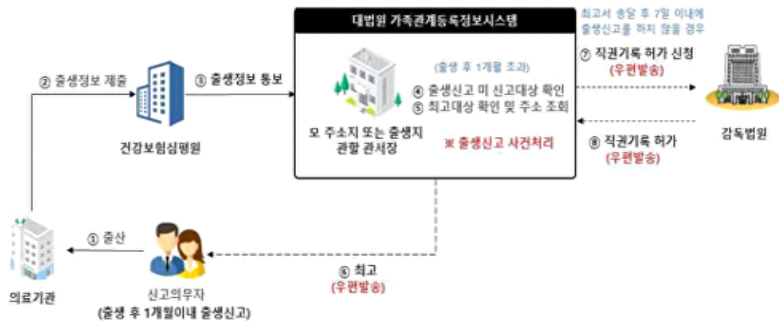
아래의 출생통보제도 관련 정보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전자의무기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대법원)의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이다(그림 IV-5)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 정보가 모(母)의 주소지 또는 출생지 관할 시·읍·면으로 바로 통보되고,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그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7.18.). 이에 출생통보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만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각

지대의 아동을 보호하는 새로운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이다.



* 출처: 여성가족부 (2024).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Ⅱ), pp.121~122의 내용을 보완함.

그림 IV-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기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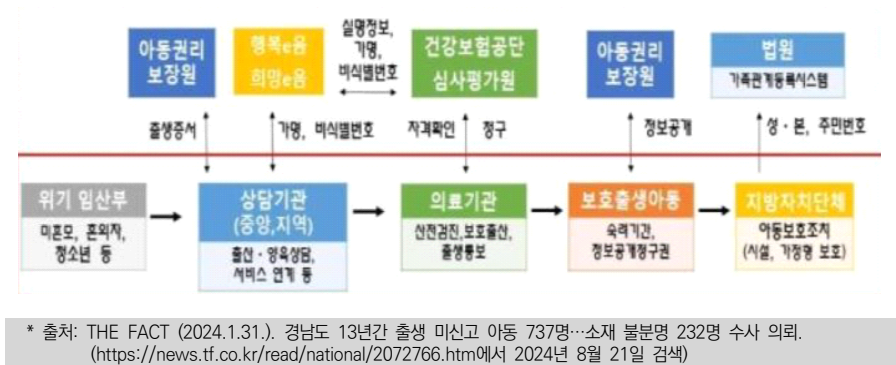


* 출처: 비전21뉴스 (2024.7.15.)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http://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376465>에서 2024년 8월 21일 검색)

그림 IV-5. 출생통보제 정보흐름도

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비(요양급여, 의료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임산부확인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확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신생아 사망 또는 미숙아 출생 사실을 통보할 때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제공 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3.11.).

위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기관간의 보유 정보만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의 연쇄적인 정비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취약청년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의 정보를 연계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 및 하위법률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포함하여 신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계 법령을 모두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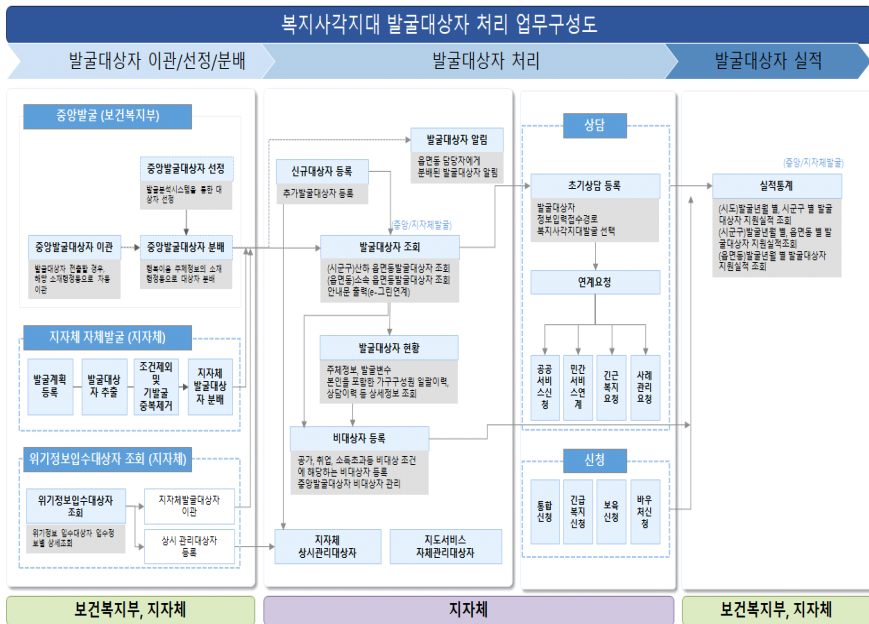


* 출처: THE FACT (2024.1.31.). 경남도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소재 불분명 232명 수사 의뢰.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72766.htm>에서 2024년 8월 21일 검색)

그림 IV-7. 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정보흐름도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공동사례관리 : 정보시스템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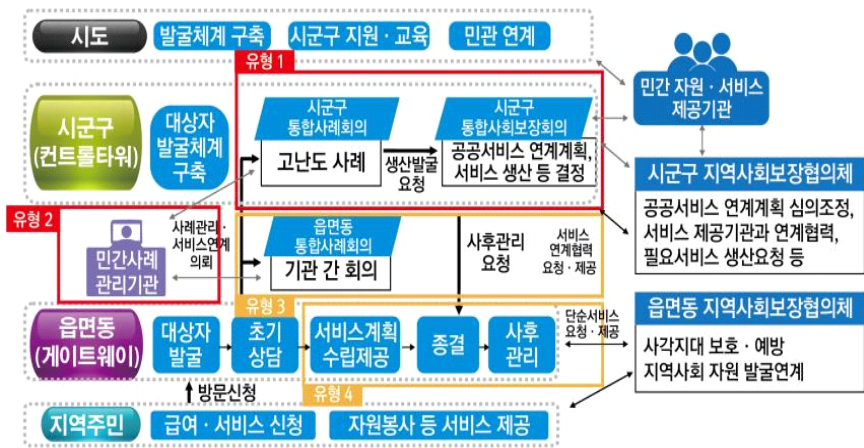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는 위기 상황에 있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통신비 연체, 금융연체 등 약 30여 종의 공공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방식과 지자체 단위에서 유관기관 간의 관계망을 활용하는 방식(지자체)이 모두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활용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메뉴에서 중앙이 지자체로 분배한 발굴대상자 현황 조회, 발굴대상자의 담당자 지정, 처리(단순 상담, 사회보장급여 변경 신청, 민간자원 연계)가 가능하고,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대상자의 등록이나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위기 대상자 추출, 타 기관 이관 등도 가능하다(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4: 7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처리 업무의 전반적인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IV-8] 참조).



* 출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p.65.

그림 IV-8.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구성도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사업'과 같이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한 명의 대상자(혹은 가구)를 공동으로 사례관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민간 시설이나 기관도 포함된다. 사례관리 과정에서 시·도는 서비스 기획총괄, 시·군·구는 서비스 컨트롤타워, 읍·면·동은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4: 114). 특히 대상자의 누락과 중복, 분절적인 사례관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DB)와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다기관 연계·협력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그림 IV-9) 참조).



* 출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p.160.

그림 IV-9. 통합사례관리 연계·협력 흐름도

이러한 공공-민간 협력 공동사례관리는 크게 읍·면·동 내에서 관리하는 경우(유형 3, 유형 4)와 고난도 사례, 위기사례 등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경우(유형 1),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 관계망 형성 등 자립지원을 위해 장기간 개입이 필요하여 민간 사례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경우(유형 2)로 구분된다. 네 개 유형 모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희망e음)을 기반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서비스 신청단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전산시스템의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시스템 내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건강상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전제로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자체(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복지자원 메뉴)에 경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거, 돌봄, 일자리, 보육 및 교육, 안전, 법률 및 권익 보장, 문화 및 여가 분야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DB를 등록하고 시스템 이용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다. 등록한 자원을 삭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 자원관리 책임자(시·군·구 및 읍·면·동 자원관리 실무자)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각 유형별 대상 사례, 목표, 방법, 대상,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IV-1〉 참조).

표 IV-1. 통합사례관리 유형 구분

구분	시·군·구 및 민간기관 관리		읍면동 관리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의뢰군	민간사례관리기관 의뢰군	읍면동 통합사례관리군	읍면동 서비스 연계군
사례	- 고난도사례 - 위기사례	집중사례	일반(단순) 사례	서비스 연계 사례
목표	대상자의 문제해결	대상자의 자립	대상자의 문제해결	대상자의 문제해결
방법	- 치료적 개입을 위한 지원 - 전문기관과 협력	- 당사자의 조직화 - 지속적 정서지원 - 관계망 강화	- 위기사례 게이트웨이 -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연계 및 모니터링
대상	- 집중 복합 사례 -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	서비스 연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례	서비스 연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례
특징	개별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 가구에 공식적 기관 및 제도 연계를 통한 지원	정서적 관여 관계망 강화, 지역사회 안착 등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지원	- 범정부 사회복지사업, 공공서비스 기반으로 즉각적인 자원 연계 중심의 사례관리 수행 - 위기사례에 대한 게이 트웨이 및 보건복지 연계 수행	범정부 사회복지 사업, 공공서비스 기반으로 즉각적인 자원 연계 중심의 사례관리 수행

* 출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4). p.160의 표를 수정함.

3. 취약청년 발굴·지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현안

1)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취약청년의 선제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정망), 청소년안전망시스템(행정망)을 통해 공적지원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가운데 19세에 달하여 고용,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예측된다면 이들은 청년복지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연계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별로 정보시스템이 제각각 구축·운영되고 있고, 지원 대상 가운데 취약청년에 해당할 경우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연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등 취약청년의 발굴 과정에서 기존 정보망을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표 IV-2〉 참조).

표 IV-2. 취약청년 관련 정보시스템 및 연계 필요 정보 예시

취약청(소)년	법적 근거	주요 지원체계	정보시스템 ¹⁾	연계 필요 정보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지자체(시군구)	행복이음, 희망이음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위기정보, 지원요구 등
위기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위기정보, 지원요구 등
시설퇴소청년 (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정보시스템	수급자 자격, 자립지원 이력, 위기 정보, 지원요구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위기정보, 지원 이력, 지원요구 등
	「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법무부 정보시스템	위기정보, 지원 이력, 지원요구 등
고립·은둔 청년	-	청년미래센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통합사례관리 이력, 지원요구 등
가족돌봄청년	-	청년미래센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통합사례관리 이력, 지원요구 등
발달장애청년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지원 이력,

취약청(소)년	법적 근거	주요 자원체계	정보시스템 ¹⁾	연계 필요 정보
	「발달장애인법」	센터	통합정보시스템	위기정보 등
경제선지능 청년	-	-	-	지원 이력, 위기 정보 등
청소년부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가족센터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지원 이력, 위기정보 등
금융취약청년	-	금융복지상담센터	-	지원 이력, 위기정보 등
취약계층 청년	「청년기본법」	정신보건복지센터 공공·민간기관	행복이음, 희망이음,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사업별 지원 대상 여부, 지원 이력, 위기정보 등

* 주: 취약청년 자원체계별 해당 정보시스템의 활용 정도는 지역별,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저자 작성.

이에 기존 정보시스템 내 정보와 대상자를 연계하여 취약청년의 발굴이나 통합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과 하위법령 또는 별도의 법령에서 정보 연계의 목적과 활용 주체 등 ‘(가칭)청년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의 활용 주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현행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취약청년에 해당할 경우 (가칭)청년통합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며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의 범위에 (가칭)청년통합지원시스템을 포함하도록 개별 법률의 개정도 잇따라야 할 것이다.

《(가칭)청년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안)》

-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에 따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취약계층 청년 사례관리 정보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취약계층 청년 사례관리 정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약계층 청년 사례관리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취약계층 청년 사례관리 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취약계층 청년 관련 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의 학교생활기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 연계
- 이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주: 연계 정보(안)은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함.

* 출처: 저자 작성.

2) 다중취약청년의 사례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분절적으로 구축·운영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호환 또는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이력과 주 사례관리자까지 원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플랫폼으로서 (가칭)청년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상자 관리와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개별 사업 및 협력 사업과 자원 관리가 가능하고, 맞춤형 급여를 포함한 지원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중취약청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새로운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의 개념과 기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정보 연계를 위한 사업 기획과 정보 연계 이후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기 대안으로 현행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서 19세 이상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대상을 추출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청년미래센터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청년미래센터(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와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이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시·도의 담당자가 청년미래센터를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내 자원으로 등록하고 동시에 청년미래센터 담당자가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이용자로 가입하여 시·도 담당자를 통해 대상자를 연계하여야 한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25세를 초과한 대상자는 타 기관 연계 후 지원을 종료해야 하며, 지원정보는 10년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24세에 발굴, 등록된 대상자라면 34세까지 지원 이력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내에서 사례관리를 받던 대상자가 25세에 달하거나, 만 19세 이상 취약청년이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면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통해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에 대상자를 의뢰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을 포함하여 시·군·구 담당자는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은 사례관리를 담당하므로 의뢰된 대상자의 사례관리 필요 여부를 포함하여 문제 및 욕구 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기에도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내 허브(hub)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취약청년을 담당하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청년미래센터 등 취약청년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내 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책임 규정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위기정보를 조회하여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기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회가 가능한 항목은 단수, 단전, 건보료 체납, 금융 연체, 국민연금 체납, 의료비과다지출, 기초긴급신청탈락,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월세취약가구, 위기학생 등이며, 위기정보의 수와 위기정보의 변동 여부, 1인 가구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IV-10 참조). 여기에 ‘위기학생’ 항목 내 상세 항목을 추가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시설퇴소 여부, 경제선지능 여부, 가족돌봄 여부, 고립·은둔 여부, 자살·자해 위기 여부 등을 추가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청년의 발굴과 지원, 사례관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정보	① 단전	여부 ☐ 상세 ☒	① 단수	여부 ☐ 상세 ☐	① 단가스	여부 ☐ 상세 ☐	① 전기료제납	여부 ☐ 상세 ☐
	① 건보료제납	여부 ☐ 상세 ☒	① 국민연금제납	여부 ☐ 상세 ☐	① 관리비제납	여부 ☐ 상세 ☐	① 임차료제납	여부 ☐ 상세 ☐
	① 금융연체	여부 ☐ 상세 ☒	① 통신비제납	여부 ☐ 상세 ☐				
	① 노인장기요양	여부 ☐ 상세 ☒	① 의료비고지출	여부 ☐ 상세 ☐	① 전세취약가구	여부 ☐ 상세 ☐	① 월세취약가구	여부 ☐ 상세 ☐
	① 시설회소자	여부 ☐ 상세 ☐	① 기초연금신청탈락	여부 ☐ 상세 ☐	① 휴폐업	여부 ☐ 상세 ☐		
	① 실업급여수급	여부 ☐ 상세 ☐	① 실업급여미수급	여부 ☐ 상세 ☐	① 산재요양후미취업	여부 ☐ 상세 ☐	① 미취업알뜰근로자	여부 ☐ 상세 ☐
	① 개별연장급여대상	여부 ☐ 상세 ☐	① 화재피해	여부 ☐ 상세 ☐	① 재난피해	여부 ☐ 상세 ☐	① 위기확성	여부 ☐ 상세 ☐
	① 영장물리스미지원	여부 ☐ 상세 ☐	① 방문건강관리군	여부 ☐ 상세 ☐	① 기저귀분유지원	여부 ☐ 상세 ☐	① 신생아난정확진	여부 ☐ 상세 ☐
	① 세대주사망	여부 ☐ 상세 ☐	① 기타	여부 ☐ 상세 ☐				
	① 중증질환산정특례	여부 ☐ 상세 ☐	① 의료기관장기미이용	여부 ☐ 상세 ☐	① 장기요양등급자	여부 ☐ 상세 ☐	① 장기요양등급외자	여부 ☐ 상세 ☐
① 위기정보 수	--선택-- v		① 위기정보 변동	☒ 전체 ☐ 증가 ☐ 변동 ☐ 동일		① 세대정보	☐ 1인세대(주민등록전상정보 상 세대원수)	
① 수급자격	맞춤형지조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긴급복지 ☐ 자상위 ☐ 한부모 ☐ 타법의료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② (참고)정보로 취약세대 경감정보	65세이상노인이있는세대 ☐ 동쪽장애인(장애인세대) ☐ 한부모(부)가족 (모자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							
	70세이상노인만있는세대 ☐ 국가유공자중상이자 (장애인세대) ☐ 한부모(부)가족 (모자세대) ☐ 노인요양(장애인경감) ☐ 조손가정(모자세대) ☐							
① 건보가입유형	☐ 지역 ☐ 직장	① 월건보료(보수)	원 ~	원				
① 인적정보	나이 : 만		성별 : ☒ 전체 ☐ 남 ☐ 여	내외국인 구분 : ☒ 전체 ☐ 내국인 ☐ 외국인				
발달영역 상세표시 v								
단전	단전시작일자	YYYYMM-DD ~ YYYYMM-DD	재납개월수	개월 ~	개월	재납전제금액	원 ~ 원	
건보료제납	재납개월수	개월 ~	개월	개월	재납보험료	원 ~ 원	월보형료 원 ~ 원	
노인장기요양	월보형료	원 ~	원					
금융연체	연체등록합계금액	백만원 ~	백만원		연체등록건수	건 ~	건	

* 출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p.83.

그림 IV-10. 행복e음 위기정보 조회조건 항목

3) 「취약청년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및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현재 통계청은 2021년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이어 이듬해에 청년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교육, 복지, 일자리 등 주요 특성을 망라하여 수록한 ‘취약청년가구 통계등록부’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계등록부는 단일 통계조사와 달리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결합하고 표준화하는 등의 통계 처리를 거친 개인 또는 기업 단위의 모집단 자료이다. 최근 취약계층 청년의 실태와 관련된 조사 자료와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각각의 자료로 정책 현안을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심층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 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행정자료의 내용을 점검하거

나 정제하는 과정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고, 개별 기관이 생산한 자료의 개념과 범위, 기준이 제각각이라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연계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8. 2. 통계청 보도자료, 2022. 12. 21). 이에 본 연구에서도 공공데이터와 시설퇴소청년 대상 조사 자료를 결합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이라는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일환으로 통계청이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제, 표준화하고 데이터 연계와 제공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한다면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와 가구원 정보를 연계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구조와 양육 부모의 고용 상황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 제공한다. 청년가구 통계등록부는 15~34세 인구의 지역, 성별, 연령 등 기본 항목과 취업 청년의 임금 소득, 창·폐업 등 일자리 항목, 1인 가구 및 부모 동거 여부, 거처 형태, 배우자 유무 등의 항목을 제공한다.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조사가 없더라도 청년통계등록부와 공적연금 자료를 연계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가입률은 63.0%, 30~34세의 경우 10명 8명(78.0%)이 가입한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2.12.21.).

표 IV-3. 청년통계등록부와 공적연금 자료 연계 사례

(단위: %)

년도	19~34세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2020	61.4	37.1	73.8	76.5
2021	63.0	37.7	75.2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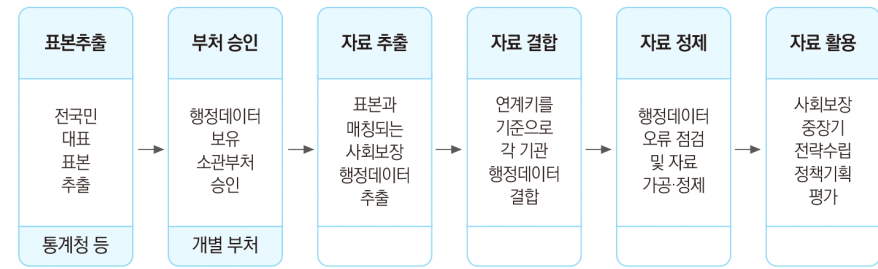
* 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 우체국 연금)을 대상으로 집계
 * 출처: 통계청 (2022.12.21.) 보도자료, p.4

그러나 본 연구의 1, 2, 3차 년도 연구 대상인 시설퇴소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발달장애 청년, 청소년부모, 금융취약청년 등 취약청년의 경우 동년배 청년 집단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와 관련된 실증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해 시설퇴소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여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입력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보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는 가명정보 결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시설퇴소청년과 동년배 일반청년 집단 간에는 고용, 교육, 복지 등 자립을 위한 주요 영역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김지연 외, 2022, 백혜정 외, 2023), 청년통계등록부 내 새로운 영역이나 취약청년가구 통계등록부를 별도로 구축한다면 관련 제도 및 사업 개발뿐 아니라 청년정보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도 기능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정과제인 ‘근거 기반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 강화(42-2-2)’와 관련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결합을 통해 취약청년의 사회보장 관련 현안이나 지원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간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의 신청, 탈락, 수급 등에 관한 정보는 각각의 제도나 사업별로 분산 관리되어 수급자의 복합적인 지원 요구나 지원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각 부처별, 제도별로 흩어져 칸막이가 존재하던 행정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하는 ‘사회보장 종합데이터 구축’ 사업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0.12.).

사회보장 종합데이터는 분석의 활용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약 1천 만 명의 표본을 추출하고, 33개 기관에서 각각 관리하는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한 후 연계키를 기준으로 개인 단위로 결합하는 방식이다([그림 IV-11] 참조).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거나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정보의 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어 기존의 일회성 빅데이터 활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추진체계 구축 과정에서 취약청년을 포함한 대상별 지표 구성과 세부 통계지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10.12.) p.4.

그림 IV-1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과정

○———— 제5장 취약청년 지원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 1. 제안 배경
- 2. 정책개발 및 세부추진과제

1. 제언 배경

1) 1차 년도 연구 성과: 정책비전 및 전략 수립

본 연구는 '2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된 협동연구로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취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과 일반청년 간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추진과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가 시작된 1차 년도에는 「청년기본법」 상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기존 정책에서 취약청년으로 식별되지 않는 청년, 동일 문제와 욕구가 있어도 해당 제도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에 포섭되지 않는 청년, 일반적인 이행기 발달 과업의 표준에서 이탈하여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문제를 ‘정책소외’로 규정”(김지연 외, 2022:283)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①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 이행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② 공공정책(지원제도)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③ 당사자를 포함하여 미시환경 영역에서 자원, 정보, 기회가 제한(결핍)되어 있거나 거시환경 영역에서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④ 비자발적 사유로 배제되거나 제도의 지원 대상에 효과적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청년 또는 집단”(김지연 외, 2022:283)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유형별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할 때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할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김지연 외, 2022:283)하고자 하였다.

이에 1차 년도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시설퇴소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동연구기관에서는 북한배경청년, 청소년부모,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정책소외 실태를 파악하고 일

20)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반청년 대비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으로의 제도적 편입 방안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 1차 년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퇴소청년의 교육, 일 경험, 채무, 사회적 관계, 부정적 생애사건, 자살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성과 일반청년과의 격차를 확인하고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간의 정책 연계 추진을 제안하였다. 둘째, 북한 출생 및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국적법」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법(약칭)」 상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 청년기 연령을 세분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소년부모와 일반청년부모와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부모’라는 용어를 개선하고, ‘자녀양육청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경제선지능청년의 주요 삶 영역별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 대상으로서의 경제선지능청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및 고용·주거·권리구제·평생교육·정신건강·사회관계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애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약성이 확인된 정책소외계층을 취약계층청년의 범주로 편입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앞서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2) 2차 년도 연구 성과: 취약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공통 추진과제 발굴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주관연구기관에서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협동연구기관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소외계층인 금융취약청년과 발달장애 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일반청년과의 격차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이들이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 2차 년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취약청년을 각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원체계 간의 분절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대책이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의 청년정책전달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청년기본법」 상에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은

영하기 위한 근거의 상세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형별 취약청년 지원체계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설퇴소청년집단 내 격차와 일반청년 대비 격차를 진로·고용, 경제·주거, 심라정서 및 건강, 참여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퇴소청년들이 갖는 공통적인 취약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취약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금융취약청년에 대한 연구에서는 금융취약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공적 지원체계가 취약함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저소득, 취업중단, 고립, 정신건강 저해 등과 같은 다중적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취약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금융취약성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금융취약성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청년지원체계 내에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불법적 수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장애 수준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책개발자관련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일반청년과 분리된 발달장애청년 대상 서비스 등으로 인해 발달장애 청년들의 소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에서 발달장애청년의 청년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대상으로서의 발달장애청년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하지 않는 장애청년 친화적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에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 도출한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 대상특화, 제도조정을 위한 12개의 추진과제를 추가로 개발하였다(백혜정 외, 2023).

- 사회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취약청년의 참여권 보장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취약성 대응 기반 구축,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 대상특화 추진과제: 청년전담인력의 교육·양성을 통한 인식 제고,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평생교육 관점의 교육·훈련 지원 확대, 광역단위 취약청년 전담기관 협력망 구축

- 제도 조정을 위한 추진과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청년정책과 대상별 복지사업 연계 강화, 지역기반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취약청년 지원기능 신설

3) 3차 년도 연구 결과: 다중취약청년 실태 및 지원 방안 마련

3차 년도 연구에서는 1, 2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취약계층 청년들의 유형별 취약 실태 및 지원 강화방안을 토대로 다중취약청년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청년 지원체계 및 취약청년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안을 진단함으로써 다중적·가변적 특성을 가진 취약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구결과	시사점
청년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년의 낮은 수준의 소득과 자산 분포, 높은 청년 실업률, 빈곤 청년 규모의 증가, 높은 자살률 등을 통해 확인하고 경제적·사회적 차원을 아우르는 청년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특성 확인 · 자립준비청년의 다중취약성 확인 결과 자립지원 수혜기간 및 자립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 확인 · 다중취약청년의 취약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변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취약청년의 다중적이고 가변적인 취약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 ·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취약유형이 아닌 취약청년 개인의 복합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개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다중취약청년 지원을 위해 경제적 수당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다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문적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결합된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 · 다중취약청년의 맞춤형 지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필요. 이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양성이 병행되어 전담인력의 양성과 안정적 인력 배치 선행 필요

구분	연구결과	시사점
취약청년 지원체계 현안 진단	· 현행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부처나 과에서 사업을 관리, 수행하는 방식은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통합적 지원의 관점에서는 취약청년의 인자적, 물리적 접근성이 제한되는 단점 · 취약청년 지원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체계를 종합하는 법적 근거 필요 · 생애주기 관점을 견지한 복지체계 구축 및 다부처 간 사업 통합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 필요 · 새로운 취약청년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경우 기존 전달체계와의 관계 정립 필요 · 취약청년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취약청년의 문제해결적 통합지원의 관점에서 청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관리 및 수행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 필요 · 청년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청년 친화성과 복지 전문성을 담보하는 청년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생애주기 관점에서 취약청년을 위한 다(多) 주체 지원사업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고도화 · 독자적인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으나, 청년 친화성과 복지 전문성을 동시에 가지는 기존 체계에 사업을 위탁하고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차유, 경력관리 등을 통한 청년복지 분야의 숙련 축적 필요
취약청년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현안 진단	· 취약청년의 선제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 · 다중취약청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새로운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의 개념과 기능 개발 · 청년 세대 내 각자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계 구축 필요 - 취약청년의 경우 동년배 청년 집단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와 관련된 실증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 기존 정보시스템 내 정보와 대상자를 연계하여 취약청년의 발굴이나 통합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과 하위법령 또는 별도의 법령에서 정보 연계의 목적과 활용 주체 등을 규정 ·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이력과 주 사례관리자 까지 원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플랫폼으로서 (가칭)청년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검토(단기 대안으로 현행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취약계층 청년의 교육, 복지, 일자리 등 주요 특성을 망라하여 수록한 '취약청년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적극 검토 - 청년통계등록부 내 새로운 영역이나 취약청년가구 통계등록부 별도 구축을 통해 관련 제도 및 사업 개발뿐 아니라 청년 정보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기능 개발의 근거로 활용

2. 정책개발 및 세부추진과제

3차 년도 연구에서는 다중취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차 년도 연구에서 도출한 ‘모든 청년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아동·청소년·청년기에 누적된 삶 영역의 불평등 완화 및 소외 예방’을 목표로 다중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① 취약청년의 발굴 및 통합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② 청년복지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③ 다주체 지원사업 체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④ 취약청년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성 제고, ⑤ 정책 수립 과정에 취약청년 당사자의 참여 확대 등 다섯 개의 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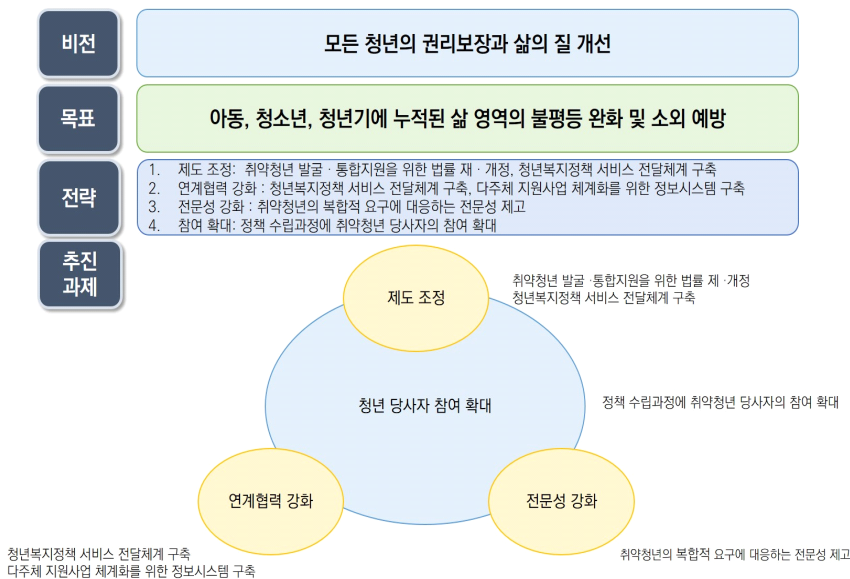


그림 V-1. 다중취약청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

1) 취약청년의 발굴 및 통합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1) 「청년기본법」 개정

2023년 3월 「청년기본법」에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체임을 규정하는 등을 골자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 전반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존재를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본 연구의 1, 2차년도 연구 대상인 시설퇴소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발달장애청년, 청소년부모, 금융취약청년의 경우 일자리지원, 창업지원, 능력개발지원, 주거지원, 복지지원, 금융생활지원, 문화활동지원 등 전반에서 동년배 일반청년에 비해 제도에 대한 인지와 활용 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지연 외, 2022; 백혜정 외, 2023). 특히 3차년도 조사 표본에서는 시설퇴소청년이 일반청년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중취약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다중취약성에 노출될수록 우울, 고립감은 높고 행복감, 자립 수준 정도는 낮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청년의 유형별 지원 방식은 다중취약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청년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전반에서 취약계층청년의 발굴,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사후관리(follow-up)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현행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에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때에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되,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에는 예산 소요가 필수적이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시책도 수립·시행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복지에 대한 보편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취약계층 청년의 성인지 이행에 필수 과업을 맞춤형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에 해당 내용을 위임하는 방안(김지연 외, 2022:297)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표 V-1〉 참조).

표 V-1. 「청년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때에는 제3조 제5항의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청년 복지증진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출처: 저자 작성

(2) 「(가칭)청년복지법」 제정

현재 생애주기 관점에서 대상별 복지 지원을 규정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으로, 청년기와 중장년기는 복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부재하다(〈표 V-2〉 참조). 청년기는 건강한 중장년과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행기의 취약성에 대응하는 한시적인 공적 지원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 다중취약청년의 발굴과 다주체 지원사업의 정비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을 모법(母法)으로 하는 「(가칭)청년복지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22대 국회에서도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취약청년 또는 취약청년의 유형별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등의 자립지원과 지원기관의 설치, 실태조사, 통합지원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조항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²¹⁾

21)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44, 2024년 8월 19일 발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03, 2024년 8월 7일 발의)»,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자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36, 2024년 8월 5일 발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하는 위기청년의 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064, 2024년 8월 22일 발의) 등이 대표적임.

표 V-2. 생애주기 복지 지원을 위한 법률 체계

구분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노인복지법」
연령 범위	0~18세 미만	9세 이상 24세 이하	65세 이상
목적 (요약)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보장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심신의 건강 유지, 노후 생활안정과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정의	아동, 아동복지, 보호자,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가정위탁, 아동학대	청소년, 청소년복지, 보호자, 위기청소년, 가정밖청소년, 청소년부모	부양의무자, 보호자, 치매, 노인학대 관련 범죄
주체/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등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 등	실태조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 스템 등	실태조사, 노인복지상담원
지원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	위기청소년 지원, 가정밖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청소년부모 지원,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등	노인 사회참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경로우대, 노인재활요양사업, 요양의무사, 노인학대 신고 및 절차 등
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노인전용주거시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출처: 김성아 외 (2023), p.19를 보완함.

이에 생애주기 대상별 복지 지원 및 청년의 이행기 지원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청년복지 정책 주무부처 소관의 「(가칭)청년복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청년의 복지증진 시책의 내실화와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부처 사업의 통합지원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발굴을 포함하여 사례관리, 사후관리를 포함한 통합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청년 대상 지원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처리 등을 포함한 정보망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제정 법안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요 요소(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V-3〉 참조).

표 V-3. 「(가칭)청년복지법」 제정안 주요 요소(안)

구분	주요 내용
연령 범위 ¹⁾	19세 이상 34세 이하
목적(요약)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과 중장년 이후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
정의	취약계층 청년 ²⁾ , 청년복지,
주체/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 청년
정책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청년기본법 제8조 제3항 관련), 청년 실태조사 내 취약계층 청년 실태(동법 제11조 관련), 취약계층 청년 연구사업(동법 제12조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취약계층 청년 참여 확대(동법 제15조 관련) ³⁾ , 취약계층 청년 통합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개인정보의 처리 및 활용 등) 등
지원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동법 4장)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취약계층 청년 창업지원, 취약계층 청년 능력개발 지원, 취약계층 청년 주거지원, 취약계층 청년 복지증진(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원 등), 취약계층 청년 금융생활 지원, 취약계층 청년 문화활동 지원, 취약계층 청년 국제협력 지원, 취약계층 청년 통합지원서비스 내용 등
지원기관	시·(가칭)청년복지센터 등
소관부처	청년복지정책 주무부처

* 주: 1)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을 준용함. 단, 김지연 외(2022, p.297)는 현행 아동, 청소년, 청년의 법적 연령 범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하한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향후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 범위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가칭)청년복지법」상 청년의 연령은 조정이 필요함.
2) 고용, 교육, 복지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유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되,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시설퇴소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금융취약청년, 청(소)년(한)부모 등 유형별 정의를 상세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3) 취약계층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위해 대표단체 참여 할당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출처: 저자 작성.

2) 청년복지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 청년복지정책 주무부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청년의 발굴 이후 다면적인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의 소관 부처로 청년정책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나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정책 조정 업무가 핵심 기능이다 보니 개별 부처별로 청년 사업 부서를 신설하는 상황이며 이는 청년복지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이에 청년복지정책 추진의 근거법으로서 「(가칭)청년복지법」을 제정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청년복지정책 주무부처의 청년복지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특히 각 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단위에서 다종다양한 취약계층 청년 대상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지원 대상과 내용에 있어 중복과 편중, 누락과 사각지대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별로 지역사회 내 지원기관이 산발적으로 확충될 경우 청년복지서비스의 파편화와 분절성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치와 역할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취약청년의 유형 가운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53억 8,900만, 연평균 약 210억 7,800만원으로 추계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4: 9).²²⁾ 여기에는 17개 시·도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약 1,048억 4,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표 V-4〉 참조).

위의 추계 비용은 실태조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같이 추계가 가능한 극히 일부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소요액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추계에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예산을 유사사례로 적용하였는

22)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36, 제안일자 : 24.7.31)」에 대한 비용추계서 참조.

데, 시·도 단위에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기관이 조율 없이 확충되지 않도록 청년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과 정책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표 V-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2026~2030년)¹⁾

(단위: 년/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30	-	-	-	-	30	6
실태조사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5	3.5	3.5	3.5	3.5	17.5	3.5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A+B) ²⁾	20,143	20,549	20,962	21,384	21,803	104,841	20,968
인건비(A)	8,750	8,916	9,086	9,258	9,434	45,445	9,089
운영비(B)	11,393	11,632	11,877	12,126	12,369	59,397	11,879
추가재정소요 합계	20,277	20,653	21,066	21,488	21,907	105,389	21,078

* 주: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임.
 2) 2024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임.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4). p.1 [표1], p.9 [표7]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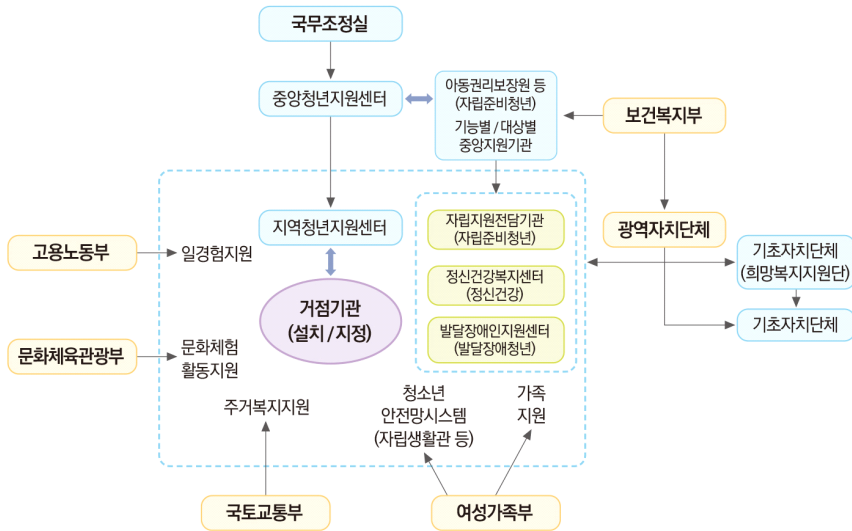
(2)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부서 정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청년 대상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이들 복지사업이 취약계층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지원에 따른 효과(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정법을 근거로 청년복지정책 주무부처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청년 대상 복지사업을 국가수준의 사회보장제도,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총괄·조정·시행하고, 지역 단위에서 청년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행정부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앙 및 지자체의 행정 부서 정비 노력은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한 모든 청년에 대한 복지 체감도, 즉 행복감, 삶의 만족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등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정책 성과 도출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취약)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청년복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이고, 대상자 및 업무의 연계 정도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다중취약청년에 대한 단절 없는 복지 지원을 통해 자립과 중장년기 이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 전(前)반기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발굴과 지원을 염두에 두고 읍·면·동,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포함) 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청년복지 대상자 연계 및 부서 통합 등 업무 추진 여건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 시·도 단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같은 소관의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별 지원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발달장애청년 등 특정 유형의 대상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대상특화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청년의 다면적인 위기에 제각각 윈스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 기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임에도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주무부서가 제각각이라 부서 간의 대상자 및 업무 협조를 위한 기준 마련도 요구된다.

한편, 위와 같은 전담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발굴이 원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지원 대상이 아닌 취약청년이 발굴(발견)된 경우 적절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발굴과 의뢰를 위한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 전담기관에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력 충원을 기반으로 게이트웨이 기능을 동시에 탑재하거나, 지역 내 취약청년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두고 지역청년지원센터와의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광역 단위 지역청년지원센터나 일부 시·도에 설치 중인 청년미래센터(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지원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 등과 같은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중 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이 실익이 클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년복지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안)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 [그림 V-2]이다.



* 출처: 김성아 외 (2022)의 [그림 5-5]를 수정, 보완함.

그림 V-2. 청년복지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안)

3) 다주체 지원사업 체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데이터 연계 강화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이 필요시 19세 이후 청년복지정책을 통해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탈빈곤, 탈위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가 필요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 및 데이터 간의 연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여성가족부)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 아동·청소년이 19세에 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지자체 (가칭)청년복지팀으로 정보가 연계되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각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청년특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DB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의 DB와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들 DB도 해당 청년의 거주지 또는 서비스 제공 지역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필요시 시·군·구 단위에서 사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취약아동·청(소)년의 정보흐름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V-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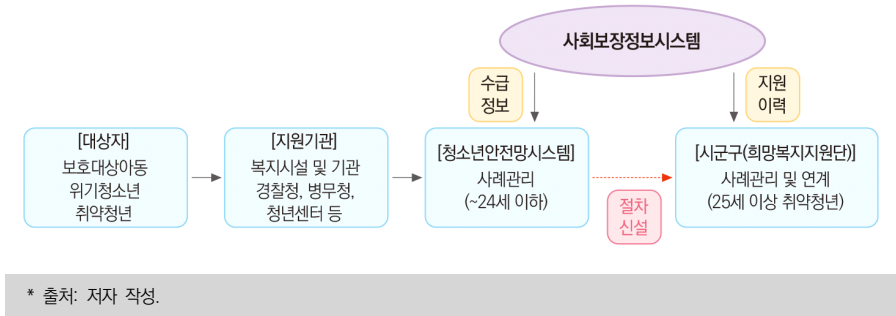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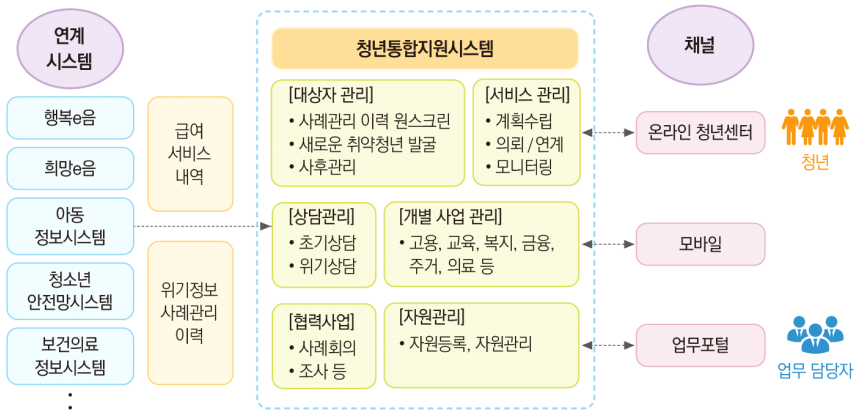


그림 V-3. 취약아동·청(소)년 정보흐름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재구축 및 활용 강화

다중취약청년의 사례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 플랫폼으로서 (가칭)청년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재 개발이 중단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의 재개가 요구된다. (가칭)청년통합지원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행복e음, 희망e음, 아동정보시스템(요보호아동 관련 DB),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안전망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토대로 하는 행정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보망을 구축할 경우 다주체 기반의 취약청년 대상 사례관리의 이력을 윈스크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고용, 교육, 복지, 금융, 주거, 의료 등 개별 사업의 관리와 자원 등록이 가능하여 공공과 민간의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정망)과 온라인 청년센터와의 연결을 강화한다면 모바일 등으로 상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여 취약청년의 발굴과 지원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보화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를 통해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일련의 절차와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가칭)청년통합지원시스템의 목표 개념도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 아래 [그림 III-4]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2019)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V-4. (가칭)청년통합지원시스템 목표 개념도

4) 취약청년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성 제고

(1) 취약계층 청년의 다중적·가변적 취약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지원 강화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각 부처별로 다양한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유형의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특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취약유형별로 특화된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청년들은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취약성이 출현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등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취약유형별로 동일한 특성보다 개인의 삶의 궤적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대상특화된 정책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다중적이고 가변적인 욕구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직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취약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대상특화된 지원방식을 유지할 경우 분절적인 지원체계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청년들은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아직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정책 소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재 취약계층으로 명명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유형화되지 않은 대다수의 취약청년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인이 가진 특수한 상황 및 욕구에 다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지원 정보 및 지원의 습득이 가능한 지원체계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226개의 청년센터에 취약계층 청년 발굴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관련 인프라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약청년이 가진 문제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청년센터가 지닌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취약청년을 포함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청년기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 기능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센터 내 취약청년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취약청년들이 가지는 개인별 욕구와 수준에 따라 영역별 공공 및 민간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망을 기반으로 지원 이력을 관리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담인력의 배치,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체계와의 사례 및 정보 연계 절차, 정보망을 기반으로 한 협업 플랫폼 연계,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민간기관 간 필수 연계망 구축 등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을 통해 거주지역별, 분야별, 취업상태별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요구를 가진 취약청년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자신의 취업상태, 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분석하여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현행과 같이 해당 정보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시 지원 신청을 하거나 지역청년센터로 연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취약청년들이 가지는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취약청년의 사례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취약청년이 가지는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을 파악하고 다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 내 다양한 자원 목록을 활용해 취약청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가진 취약성을 완화하고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취약청년이 지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더 복잡하고 심각한 취약계층 청년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원인력 개인의 전문적 역량과 사명감 등에 따라 대상자 관리에 차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²³⁾

그러므로 취약청년에게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취약청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인력과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부재하다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지원정책 및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청년지원기관인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는 청년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지원매니저의 전문성 및 경력개발을 위한 자격체계를 구축하고 역량강화교육(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청년센터 종사자를 위한 경력관리시스템을 오픈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청년센터 종사자 대상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은 청년센터의 행정 관리를 위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표 V-5) 참조).

취약청년을 포함한 청년들의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청년센터 중심의 공공-민간기관 연계를 통한 개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상이 가진 다양한 욕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종사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직무내용을 확인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경력에 따른 교육과정(양성교육, 기초입문교육, 보수교육 등) 구성 및 교육내용(필수, 선택

23)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2024.10.10.~11) 결과

등)과 적정 교육시수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상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교육과정을 법률에서 규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인력의 자격기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통해 지원인력이 숙련도를 축적해감에 따라 급여수준과 같은 처우개선 및 경력관리 체계와 연동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5. '24년 청년센터 종사자를 위한 양성교육, 보수교육, 협업기관 연계특강

구분	세부 구분	내용
양성교육	청년센터 종사자 이해	- 청년센터 종사자로서의 청년센터 이해 - 청년지원매니저의 자격 및 경력개발 - 청년지원매니저의 윤리적 소명
	종사자 직무 강화	- 공공행정 문서의 이해와 적용 - 챗GPT와 함께하는 사업계획서 작성가이드 - 청년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홍보, 마케팅 - 효과적인 성과관리
	법적 권리 직무소진 예방	- 감정노동 특성 및 법적 권리 - 스스로를 돌보는 스트레스 관리 마인드맵 테라피
보수교육		4대 법정 의무교육과 자기개발 및 비즈니스 매너 등 - 종사자 대상 선호도 수요조사 기반 업무능력 향상 콘텐츠
협업기관 연계 특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 조직관리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서비스인력 업무역량 강화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양성평등 문화, 조직문화

* 출처: 서울신문 (2024.7.16.) 중앙청년지원센터, 전국 청년센터 종사자 위한 온라인 학습 서비스 개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7/16/20240716500145>에서 2024년 10월 22일 검색)

(3) 취약계층 청년 지원 참여기관의 질 관리

앞서 청년복지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부분에서는 각각의 대상특화된 취약계층 유형별 전담지원기관이 각 취약유형별 청년이 가지는 다중적이고 가변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이 주무부처가 분절되어 있고, 각 사업별 주무부서도 분절되어 있어 각각의 대상특화된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취약유형이 발굴될 때마다 전담기관을 늘려가기보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공공 및 민간 체계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일 수 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기존 청년지원센터 및 개별 전담기관에 인력충원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발굴과 의뢰를 위한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탑재하고 지역 내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리 하에 기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수요자인 취약청년이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각 참여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적 지원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역 내 참여기관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취약계층 지원 참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직접 참여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참여기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 질 감독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정책 수립과정에 취약청년 당사자의 참여 확대

취약청년의 현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취약청년 정책이 수립·집행되기 위해서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취약청년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 「청년기본법」 제13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직 외 위촉직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0조(청년위촉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규정하고 있고 청년정책 내에서도 취약청년에 대한 사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취약청년의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한 취약청년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취약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취약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당사자의 개선의지가 부족하거나 부재하더라도 전문가의 판단으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구성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전제될 때 당사자가 지닌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취약청년으로서의 낙인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에 청년의 비율이나

성별 고려 사항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취약계층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위촉 과정에서 취약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3년 「청년기본법」 상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됨에 따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6~)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 과정에 취약청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 구성 시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대표단체를 선정, 집단을 대표하는 취약청년의 참여 비율을 할당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향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심의내용에 대한 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 친화적이고 청년 주도적인 청년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6. 취약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법령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③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좌동) 1.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단, 청년위원 중 취약계층 청년의 비율은 10분의 3 이상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의결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3.12.).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 (2023.3.29.a).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 관계부처 합동 (2023.3.29.b).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관계부처 합동 (2024.3.29.).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 관악뉴스 (2024.7.8.). 서울청년센터 관악 신림동쓰리룸, 관악 지역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관 협의체 발족. 관악뉴스.
-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국회예산정책처 (2024).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비용추계서].
- 권진숙 (2010). 한국 사례관리실천의 혼돈과 대안. 사례관리연구, 1(1), 1-22.
- 김문근, 하경희 (2016).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3),
31-57.
- 김성아 (2023. 5.).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세종: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김지연, 김문길, 조성은, 정세정, 노혜진, 이정민, 강예은, 장성현 (2023). 청년정
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성아, 노현주 (2024). 팬데믹 전후 사회적 고립의 생애주기별 현황과 정책적 함의. 보건
복지포럼, No.329, 68-81.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박윤경, 임덕영, 신영규, 함선유,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세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노현주, 박형준, 신영규 (2023).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2024, 발간 예정).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김성아, 정소연, 이우태, 이상정, 박광옥 (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욱 (2004).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11권. pp.1-31.
- 민소영 (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고려한 통합사례관리기반 공공전달체계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 (71), 43-82.
- 민소영 (2022). 공공전달체계 개편 실험과 대안 모색: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정책**, 29(2), 43-77.
- 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김이배, 노혜진, 김성아, 박광옥 (2023). **청년종합연구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금선, 김기현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85.
- 변금선, 이영주, 김기현, 장익현 (202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0.12.). **법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 통계 칸막이 해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3.11.).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7.18.).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신부와 아동 보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4.4.16.).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

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3.7.6.). 서울시, '청년정책 Connecting the dots*...전문기관 손잡고 전국 최초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2024).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II).

이수진, 허용훈 (2022). 우리나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26(1), 195-224.

이현주, 유진영 (2015).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성광 (2023). **지역 청년 전담 지원 기관 서울청년센터 관악 사례 발표**. 서울청년사회안전망 사례공유회 발표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 8. 2.). **아동을 중심으로 19종 행정자료 연계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통계청.

통계청 보도자료 (2022.12.21.).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통계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4). **청소년안전망시스템 활용 교육자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세종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황미경 (2023).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14(1), 3-29.

■ 인터넷 자료

THE FACT (2024.1.31.). **경남도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소재 불분명 232명 수사 의뢰**.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72766.htm>에서 2024년 8월 21일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제2023-637호 (2023.12.29.).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https://www.moel.go.kr/local/jung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100015에서 2024년 5월 20일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제2024-1호 (2024.1.2.). **2024년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구 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재공모 공고**. https://www.moel.go.kr/local/jung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100091에서 2024년 5월 20일 검색.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취약하다**. stdict.korean.go.kr에서 2024년 7월 25일 검색.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청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scBlNm=scBlNm_blNm&scBlNmSct=%EC%B2%AD%E B%85%84&sugCd=21에서 2024년 7월 30일 검색.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시도별, 성별, 연령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3에서 2024년 5월 7일 검색.

북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2024년 5월 2일 검색.

비전21뉴스 (2024.7.15.).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http://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376465>에서 2024년 10월 4일 검색.

서울신문 (2024.7.16.). **중앙청년지원센터, 전국 청년센터 종사자 위한 온라인 학습 서비스 개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7/16/20240716500145>에서 2024년 10월 22일 검색.

의학신문 (2024.7.29.). **보건복지인재원, 新 취약청년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작**.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875>에서 2024년 7월 30일 검색.

청년포털. 2030.go.kr에서 2024년 5월 20일 검색.

청소년안전망시스템. <https://gov.youthsafety.go.kr>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77013에서 2024년 5월 20일 검색.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2022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2006030#E_1.2에서 2024년 5월 20일 검색.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o?orgId=101&tblId=DT_1DA7102S&conn_path=I3에서 2024년 5월 7일 검색.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104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에서 2024년 5월 7일 검색.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3에서 2024년 5월 7일 검색.

■ 국외문헌

- Adger, W. N. (2006). Vulnerability.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6(3), 268-281. doi:<https://doi.org/10.1016/j.gloenvcha.2006.02.006>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ntler, P. M. (1995). *EQS 5 [Computer Program]*. Encino, CA: Multivariate Software Inc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hen, (1993). Equality of What?, In Nussbaum, M. & Sen, A. (Eds.), *The quality of life*. Clarendon Press.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Nussbaum, M., & Sen, A. (1993). *The Quality of Life*. Clarendon Press.
- Sen, A. (1999). *Freedom as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eiger, J. H., & Lind, J. C. (1980). *Statistically-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Stiglitz, J. E., Sen, A., & Fitoussi, J.-P.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118025/118123/Fitoussi+Commission+report>.

■ 법령 ·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20417호, 2024. 3. 26., 타법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61호, 2024. 10. 4.,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0324호, 2024. 2. 20.,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2024. 7. 18., 타법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법률 제20095호, 2024. 1. 23.,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법률 제20185호, 2024. 2. 6.,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97호, 2024.1.23., 일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1238호, 2021.6.8.,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소년법」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20101호, 2024.1.23., 일부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65호, 2024. 10. 18.,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0103호, 2024.1.23., 일부개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제정]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9.27., 일부개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법률 제20415호,
2024.6.26., 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 9. 12.,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 2024. 9. 26., 타법개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지역보건법」 [법률 제19903호, 2024. 1. 2.,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제19940호, 2023.12.31.,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0호, 2023. 9. 12.,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법률 제19253호, 2023.3.21.,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9761호, 2023.10.24.,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40호, 2023.10.24., 일부개정]

■ 의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Y4W0X7V0W4R1Q6Q3P5P5O3O9W1W9에서 2024년 10월 10일 검색.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4O0N7L2M6L1T4R3Q9R5P6X3W4V4에서 2024년 10월 10일 검색.

「청년자립 지원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

tail.do?billId=PRC_K2J4R0R8P0O1K1J4H0G3O1P7O1M9L8에서 2024년 10월 10일 검색.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4A0Y7X2F5D1E6C2B8J4I8H3H3G1에서 2024년 10월 10일 검색.

본 연구는 그간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취약계층 청년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온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의 협동연구로 추진되었다. 1차년도에는 시설 퇴소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부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계선지능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북한이탈청년(통일연구원)을, 2차년도에는 시설 퇴소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달장애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금융취약청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청년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추진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올해 연구에서는 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일반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을 살펴봄으로써 취약청년과 비취약청년 간의 격차 및 취약청년 지원체계에 대한 현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다중적인 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인 맞춤형 지원방안 및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고안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취약청년 지원체계는 1) 현행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부처나 과에서 사업을 관리, 수행하는 방식은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통합적 지원의 관점에서는 취약청년의 인지적, 물리적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대두되었고, 2) 생애주기 관점을 견지한 복지체계 구축 및 다부처 간 사업 통합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3) 취약청년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양성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취약청년 지원정보시스템은 1) 취약청년의 선제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2) 다중취약청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새로운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의 개념과 기능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3) 청년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계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 취약청년의 발굴 및 통합지원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 2) 청년복지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 다주체 지원사업 체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4) 취약청년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성 제고, 5) 정책수립과정에 취약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A b s t r a c t

ABSTRACT

This three-year cooperative study aimed to identify politically marginalized young adults among vulnerable youth who have been excluded from society and develop measures to support them. In the first year, the study focused on young adults leaving welfare facilitie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dolescent par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nd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the second year, it examined the status of young adults leaving welfare facilitie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you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nd financially vulnerable young adul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urther, it identified areas where disparities exist between these groups and general young adults, to improve systems for social integration and develop strategies for policy implementation.

This year's study,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imed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vulnerabilities of vulnerable young adults, comparing them with general young adults, in addition to examining

young adults who have exited welfare facilities. Thus, it sought to identify the pending issues regarding the disparities between vulnerable and non-vulnerable young adults and support systems for vulnerable young adults. The study emphasized the need to design customized, demand-oriented support measures and integrated systems to effectively address the multidimensional vulnerabilities faced by vulnerable young adults.

The findings revealed the following issues with the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young adults. 1) The current system, where departments or divisions with expertise manage and implement projects, may guarantee expertise in specific fields, however, it limits the cognitive and physical accessibility of vulnerable young adult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support. 2)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elfare system that incorporates a life-cycle perspective and an information system to integrate projects between multiple departments or ministries. 3) It is necessary to train dedicated personnel to address the multidimensional vulnerabilities of vulnerable young adults. Furthermore, the following issues were revealed regarding the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vulnerable young adults. 1) It is essential to integrate information resources across related systems for proactive identification and systematic support of vulnerable young adults, however, there are no existing legal frameworks. 2)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cepts and functions such as managing cases of young adults with multiple vulnerabilities and discovering new targets excluded from support. 3) It is necessary to build statistics to actively implement evidence-based policies aimed at alleviating disparities within the young adult gener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tasks: 1) establishing and amending laws for the discovery and integrated

support of vulnerable young adults; 2) establishing a service delivery system for youth welfare policies; 3) advancing information systems to systemize multi-agency support projects; 4) promoting expertise to cater to the complex needs of vulnerable young adults; and 5) expanding actual participation of vulnerable young adul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현·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현·오병돈
-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익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고운·최홍일·이용해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수 탁 과 제

〈일반〉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현·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본호·이자경·서지형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최용환 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옥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동운영기준 / 황세영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나예인·이유진
--------------	--

자 료 집

〈세미나〉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	--------------------------------------

〈워크숍〉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강명령 이해하기 (24.8.29.)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포럼〉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콜로키움〉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24.4.24.)

〈기타자료집〉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NYPI Bluenote 통계〉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협동연구총서 24-44-01

연구보고24-일반02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인 쇄 2024년 12월 24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31-9

ISBN 979-11-5654-430-2 (세트)

협동연구총서 24-44-01

연구보고24-일반02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31-9
ISBN 979-11-5654-430-2 (세트)